



언론중재위원회 2006년도 정기세미나

때 : 2006. 11. 23(목)~25(토)

곳 : 전북 완주 대둔산관광호텔

정기세미나 참석자 명단

- 발표자 (2)
 - 한위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양재규 (변호사)
- 사회자 (1)
 - 김창룡 (경남 중재위원,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 언론사 (24)
 - 박해욱 (서울신문 뉴미디어국 부국장)
 - 김영서 (세계일보 심의위원)
 - 전재우 (국민일보 뉴미디어부 차장)
 - 전승훈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 이두영 (뉴시스 전국부장)
 - 장우성 (기자협회보 기자)
 - 양정웅 (MBC 법무저작권부 언론중재 담당)
 - 구창훈 (KBS 지역/법무팀 변호사)
 - 박성희 (KBS 지역/법무팀 직원)
 - 강무성 (SBS 정책팀 차장)
 - 안재형 (SBS 사내변호사)
 - 이종일 (EBS 인사법무팀 과장)
 - 송춘실 (EBS 정책기획센터 정책팀 규정담당)
 - 고병약 (JTV 전주방송 보도국장)
 - 김규철 (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장용택 (영남일보 1 사회부장 겸 고충처리인)
 - 김종표 (전북일보 사회부 차장)
 - 한성일 (중도일보 정치행정부 차장)
 - 정재근 (전북도민일보 사회부장)
 - 석민 (매일신문 문화부 차장)
 - 황승훈 (전북중앙신문 부국장)
 - 백창민 (전라일보 사회부 기자)
 - 강연덕 (전북매일신문 정치부 기자)
 - 김대용 (전라일보 사진부 기자)
- 중재위원 (18)
 - 조준희 (위원장)
 - 노향기 (부위원장)
 - 이도영 (부위원장)
 - 안병준 (서울 중재위원)
 - 이수언 (서울 중재위원)
 - 이기중 (서울 중재위원)
 - 권정숙 (서울 중재위원)
 - 박영규 (서울 중재위원)
 - 장윤환 (서울 중재위원)
 - 유영식 (강원 중재위원)
 - 김강덕 (대전 중재위원)
 - 송인준 (대전 중재위원)
 - 어수용 (충북 중재부장)
 - 박종호 (충북 중재위원)
 - 유숙명 (부산 중재위원)
 - 유길중 (전북 중재부장)
 - 하명희 (전북 중재위원)
 - 권혁남 (전북 중재위원)
- 포털사이트 (2)
 - 박영태 (다음 미디어콘텐츠 팀장)
 - 윤태석 (네이버 미디어서비스팀 차장)
- 정 부 (1)
 - 심흥식 (국정홍보처 홍보분석관실 분석2팀장)
- 사무처 (12)
 - 김용주 (사무총장)
 - 오광건 (조정심의본부 본부장 겸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본부장)
 - 김일경 (조사연구팀 팀장)
 - 조남태 (전북사무소장)
 - 김문성 (조사연구팀 직원) 외 7명

〈제1주제〉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I. 서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새로운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¹⁾는 1980년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반론권 제도가 도입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으로 1987. 11. 28.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언론중재제도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계승되어 존속되었고, 언론중재제도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과 더불어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여망을 바탕으로 언론중재법이 2005. 1. 27. 제정, 공포되고,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²⁾

이로써 언론중재제도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나, 한편 2006. 6. 29. 언론중재법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³⁾이 내려져 부분적인 개정이나마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법에 의한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의 내용과 그

한 위 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졸,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법과대학원(법학석사, LL.M)
- 제21회 사법시험합격
-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 1)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중재’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은 ‘조정’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II. 5.항을 참조. 이하,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의 ‘중재’는 ‘조정’의 의미로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의 ‘중재’는 ‘고유의미의 중재’와 ‘조정’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 2)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중재제도의 연혁과 언론중재법의 입법경위 등에 대하여는, 양삼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2005년 봄호, 4면 이하; 양경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인가”, 언론중재 2005년 가을호 45면 이하 참조.
- 3)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결정, 헌재공보 117호 950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44면.

에 따른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점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의 내용

1. 개 설

언론중재법은 과거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 규정 한 것으로⁴⁾ 1980년 이래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에 기초하여 언론중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언론으로 인한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된다.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종래 언론중재제도와 달라진 부분이 많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은, (1) 언론중재대상이 되는 언론을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까지 확대한 것, (2)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와는 별개의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한 것, (3)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 (4)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한 것, (5) 종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던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기하고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 이를 차례로 본다.

2. 중재대상 언론의 확대

종래 언론중재의 대상은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또는 '방송'에서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제기하는 반론보도청구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기서 "정기간행물"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하며('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하며('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의미했다(방송법 제2조 제3호).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의 대상으로서의 언론에 종래의 정기간행물, 뉴스통신과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있고(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인터넷 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 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⁵⁾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8호).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

4) 먼저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하에서, 방송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91조에서, 뉴스통신에 대하여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제764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민법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언론중재법으로 흡수되었다.

5)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과거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 규정한것

도 그로 인한 피해구제절차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3.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의 창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관계가 문제되었으나, 종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라고 명시하였음에 반하여 언론중재법에서는 위 문구를 삭제하였고, 특히 제2항에서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은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언론중재법의 위 정정보도청구권은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 즉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청구권과는 별도의 독립된 권리를 창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⁶⁾

이는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즉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설사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도 언론사가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한 허위보도를 시정할 방법이 없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함으로써 비로소 피해회복이 가능하게 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한편, 위법성이나 고의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언론사에게 정정보도를 강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문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위촉되지 않고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닌 본래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실 또한 이에 못지않은 강한 정의(正義)의 요구이므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 한,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진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을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시하면서 그 합헌성을 인정하였다.⁷⁾

다만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는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 당해 언론사에 청구하

6)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헌재공보 117호 976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69면 참조.

7) 위 헌재결정, 헌재공보 117호 976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70면 참조.

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3항).

4. 중재범위를 손해배상청구에까지 확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였다.

이는 종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만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언론중재법으로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에 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경험이나 인적 구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들을 설득시켜 합의를 도출함이 쉽지 아니할 것이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병합청구 된 반론보도청구 등의 해결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5. 고유의미의 중재의 도입

종래 정기간행물법 및 방송법 등에 의한 언론중재는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1호 참조),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인데(중재법 제35조), 종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또한 중재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도록 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중재결정을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구 정기간행물법 제18조 각항 참조).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종래의 ‘중재’를 ‘조정’이란 용어로 바꾸고(언론중재법 제18조 이하 참조), 제24조 제1항에서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동조 제3항에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언론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 졌음은 물론 언론중재제도의 명칭이 실질과도 부합하게 되었다.

6. 필요적 전치주의의 폐지

종래 구 정기간행물법 제19조 제1항은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추후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함으로써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한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⁸⁾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아무

8) 다만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구 정기간행물법 제18조 제1항 참조) 그러한 중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의 제소가 가능했다.

중재대상 언론 확대,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의 창설,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 등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충실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져

런 제한 규정 없이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였다.

이는 반론보도청구 등에 대하여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당초부터 당사자 사이의 견해차이가 커서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조정 단계에서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구제가 지연되는 단점을 해소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⁹⁾

7. 기 타

그밖에도 종래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에서(구 정기간행물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로 연장하였고(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종래 신청인은 중재기일에서의 1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고 피신청인은 2회 불출석의 경우에 합의간주 되는 것을(구 정기간행물법 제18조 제5항), 신청인의 경우에도 2회 불출석의 경우에만 취하간주 되도록 하였고(법 제19조 제3항), 또한 종래 서면으로만 중재신청이 가능하던 것에서(구 정기간행물법 제18조 제1항)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¹⁰⁾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8조 제3항).

이러한 사항은 모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충실과 편의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III.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의 성과

1. 개 설

앞서본 바와 같이 피해구제의 폭을 확대하고 피해구제가 용이하도록 한 새로운 언론중재제도는 2005. 7. 28. 시행 후 1년을 지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종전에 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새로이 창설된 정정보도청구가 주종을 이룰 정도가 되었고,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 및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고유 의미의 중재신청도 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새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허용된 인터넷 신청과 구술신청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하에서 차례로 본다.

2. 조정신청건수의 증가

9) 양삼승, 앞의 글, 10-11면 참조.
10) 언론중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전의 2004년 1년간 총 조정신청건수가 759건에 불과하였으나,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인 2006.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통계¹¹⁾에 의할 경우 벌써 827건에 이르러 연간기준으로 환산할 때 1,102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어 45.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2005년은 언론중재법의 시행이전 기간과 시행이후 기간이 나란히 있으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전의 필요적 전치절차에서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임의적 전치절차가 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의 감소요인이 있었음에도 대폭으로 조정신청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특히 주목할 만하다.¹²⁾

3. 정정보도청구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청구의 정착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새로이 마련된 정정보도청구 제도는 언론중재법 시행 1년 남짓한 2006. 9. 30. 현재 2006.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조정신청 827건 중 418건이 정정보도청구로서 전체의 50%가 넘을 정도로 조정신청사건의 주력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그 피해구제율¹³⁾도 65.7%에 이를 정도로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도 위 기간 중

57건으로서 전체의 6.9%를 차지하여 잡지(19건), 통신(9건)을 앞서고 있다. 이는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자리 잡았으며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인터넷 신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만일 포털사이트의 뉴스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손해배상청구의 활성화

또한 새로이 언론중재의 대상이 된 손해배상청구도 활성화 되었다.

위 통계에 의한다면 2006. 1. 1.부터 2006. 9. 30.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전체 조정신청건수 827건 중 225건이 손해배상조정신청으로서 27.2%를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구제율도 58.8%에 달하고 있다.

원래 손해배상청구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와 비교하여 언론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구제에 불과하고, 손해액산정이 어려우며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인 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처리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에서와 같은 신청건수의 비율이나 피해구제율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른 신청과 병합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청구까지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

11) 언론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 온라인자료실 각종 현황 중 조정신청처리현황에 게시된 2006년 9월 조정신청처리현황(http://www.pac.or.kr/html/data/dt_status_view.asp?seqid=52&num=23&page=1&cur_pack=0&s_field=&s_string=&tname=ptbl_pds11&j=23)의 통계자료(2006년 9월 조정신청처리 현황.hwp)를 참조.

1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임의절차라는 약점이 있지만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가 쌓아온 업무 성과와 신뢰를 생각하면 빠르고 정확한 분쟁해결을 원하는 당사자들은 여전히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지적으로는, 함석천,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5년 봄호, 52면.

13)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합의 + 조정결정중 동의 + 조정결정중 이의 · 조정불성립결정 · 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게재된 건수)/조정건수

피해구제의 폭을 확대하고 피해구제가 용이하도록 한
새 언론중재제도는 시행 1년이 지나면서
큰 성과 거두고 있어

으로써 윈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원래의 입
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

5. 고유 의미의 중재청구의 접수 및 처리

언론중재법에서 새로이 마련된 고유 의미의 중재
에 대한 신청은 극히 희소하여 초기에는 관련 조항
이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였으나(2006. 1.부터 8.까지
접수건수가 2건에 불과하였다), 2006. 9.에만 4건이 접
수되어 처리되었다.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를 할 수 없어
분쟁이 중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어서 분쟁 당사자
쌍방이 중재자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점에서 적은 수효나마 고유의미의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6. 구술 및 인터넷 접수의 활성화

한편,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새로이 마련된 구
술 신청과 인터넷 신청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언
론중재법 시행일부터 2006. 9.말까지의 접수된 총
1,303건 중 구술신청이 44건, 인터넷 신청이 253건으
로 합계 297건 22.8%에 이르고 있다.¹⁵⁾

IV. 앞으로의 과제와 개선점

1. 개 설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에 의한 새 언론중
재제도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
로 피해의 구제에만 의욕이 앞선 나머지 언론자유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그에 따라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
언되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반론보도청구절차와 정정보도청구절차 간의
조정이 과제로 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에 대
한 조정신청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
청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개선
될 필요가 있다.

한편, 포털뉴스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
데 인터넷 포털뉴스가 인터넷 신문의 범주에서 제외
되어 있으므로 포털뉴스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
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유 의미의 중재
를 활성화하는 문제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
은 받지 아니하였지만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시
정권고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정정보도청구에 관련한 여러 문제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4) 다만, 현재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주로 기능을 하고 있고 언론
보도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고유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는, 조수정, “언론보도 분쟁의 재
판 외 해결절차로서의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6년 여름호, 84면.
15) 언론중재위원회 내부 자료에 의한 통계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결정에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제도 그 자체는 정정보도로 인하여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신문의 자유와 진실에 부합한 정정보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피해구제의 이익 간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나,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증거가 아닌 간이한 소명만으로 정정보도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사에게 위축효과를 초래하므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중재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한 위헌 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더 이상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 재판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민사소송법상의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나.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과 입증책임

(1) 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

여, 이는 반론권의 일종으로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작성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¹⁶⁾와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사의 이름으로 허위를 바로잡아 진실에 부합되는 새로운 보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¹⁷⁾로 나뉜다.

이는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사에게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를 언론기관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중재법 제2조 제15호는 "정정보도"를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언론사에게 언론사의 이름으로 새로운 보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도 위 위헌결정에서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에 대하여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고¹⁸⁾, 정정보도는 '보도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그 소송절차에서 확정하고 그에 따라 언론사의 이름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밑줄은 필자 첨가)¹⁹⁾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후자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책임

정정보도청구에 있어 보도가 진실한지에 대한 입

16) 김재협, "새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 언론중재 2005년 봄호, 35면.

17) 김윤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28면.

18)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헌재공보 117호 976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69면.

19) 위 헌재 결정, 헌재공보 977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72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증책임에 있어 일반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의 발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²⁰⁾이나,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언론사가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언론사가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²¹⁾이고,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언론사가 그 보도가 진실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²²⁾도 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돌아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발생사실, 즉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당연하고, 나아가 민법상 명예훼손 책임을 물음에 있어 보도의 허위성을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언론사가 보도의 진실성이나 진실하

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의 성립, 즉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고, 별도로 정정보도까지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보도의 허위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에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위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이 보도가 진실되지 아니함이 입증된 경우에만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견해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 는 하나 이는 종전의 정기간행물법 등에서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것인데 새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청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종전의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으로 수용한 입법상의 미스로 판단된다.²³⁾

또한 정정보도청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은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고 언론사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사로는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지 못하는 한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할 수 없게 하는 위축효과를 초래하여 언론의 자

20) 김윤정, 앞의 글, 29면; 양경승, 앞의 글, 72면; 황용경,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 111면.

2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공2004상, 594) 등.

22) 전태진, "언론오보로 인한 인권침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6. 8. 10. 토론회 발표논문의 견해가 이에 가깝다.

23) 같은 취지: 양경승, "언론중재법의 개정쟁점과 방향", 언론중재위원회 2006. 8. 30. 토론회 자료, 6면 참조.

입법론으로는 종전의 법규정 형식과 마찬가지로 반론보도청구권을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그 중 위 조항과 같이 정정보도청구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만을 준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앞서 본 위헌 결정 중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²⁴⁾ 통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다. 반론보도청구절차 등과의 조정

(1)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단계

언론중재법은 새로운 권리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하고 이를 반론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18조 6호).

이는 피해자의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정정보도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불법행위의 성립여부에 대한 심리나 액수의 산정 등이 필요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가 병합된 경우는 물론 정정보도청구만을 하면서도 신속한 구제를 원하는 경우에 보도의 진실성 여부가 쉽게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정정보도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

하려다가는 오히려 손쉽게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반론보도까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분리하여 반론보도에 대하여만 먼저 결정을 내리거나 정정보도청구를 반론보도청구로 변경하도록 하여 일부만의 구제라도 먼저 부여함이 바람직하다.

(2) 법원에서의 소송단계

소송단계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됨에 따라 기존의 절차 진행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입증도 소명이 아닌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여전히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의 소가 병합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정정보도청구의 소와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간의 변경, 병합을 인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나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 간의 병합, 변경을 위해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도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견해²⁵⁾가 있다.

그러나 민사본안절차와 가처분 절차는 서로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이므로(본안은 엄격한 절차를 거친 증명을 필요로 하고 가처분 절차는 소명으로 충분하며 소명에 있어서는 증거의 즉시성이 요구된다) 변론을 병합할 수 없고,²⁶⁾ 나아가 언론중재법이 정정보도청

24) 위 헌재결정, 헌재공보 117호 977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72면.

25) 김윤정, 앞의 글, 32면. 김재협,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미발표 논문) 참조.

26)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23232 판결(공2003하, 1992)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변론을 병합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소송이나 추후보도청구소송도
정정보도청구소송과 같이 본인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되 증거가 아닌 소명만으로
인용해야 함을 법문에 명시해야

구와 반론보도청구와의 병합을 허용한 것은 정정보도청구의 소도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특별히 병합을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²⁷⁾ 아무리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반론보도청구의 소까지 본안소송절차에 따르도록 함은 재판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요건사실에 대한 소명이 아니라 증명을 요구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반론보도청구의 소의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른바 병행심리에 의하여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굳이 양자에 대한 동시적 해결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제의 신속성이 요청되고 입증도 그다지 어렵지 아니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 대하여 먼저 판결을 선고함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편, 대법원규칙은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어(‘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실제 사건 심리형식에 있어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므로 입법론적으로는 반론보도청구소송이나 추후보도청구소송도 모두 본안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정정보도청구(나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와의 병합이나 변경이 자유롭도록 하되 다만 반론보도청구소송이나 추후보도청구소송은 증거가 아닌 소명만으로 인용하여야 함을 법문에 명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²⁸⁾

라. 민법상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관할의 필요성

언론중재법은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하면서 종래 인정되던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의 관할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제기 기간이 단기간(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 이내,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인 점에서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미처 몰랐거나 법률지식의 결여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위 제기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인바,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언론중재

27) 이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볼 때,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에서는 손해배상청구와의 병합변경도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언론중재법 제18조 제6항), 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본안소송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 등과의 병합과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 참조)에서도 명백하다. 또한 대법원의 구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2005. 7. 13. 규칙 제1951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은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8) 양경승, “언론중재법의 개정쟁점과 방향”, 언론중재위원회 2006. 8. 30. 토론회자료, 4면.
실제로 2000년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피해구제법안에서는 반론보도청구소송도 본안소송절차에 의하되 증거가 아닌 소명만으로 인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양삼승, “‘언론피해구제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 언론중재 2000년 겨울호, 44면, 52면 참조(법안 제34조 제2항 “법원의 심리는 민사소송법의 본안소송절차에 의한다. 다만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소명만으로써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고, 다만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득이 법원에 소로써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로서는 간편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원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희망하는 수가 있을 것이므로,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피해자로서는 소송 외에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을 가질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로서는 언론으로 인한 분쟁의 포괄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단기간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손해배상조정신청도 함께 관할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효율적이다). 나아가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닌 임의적 전치절차로 변경된 이상, 언론중재위가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조정까지 관할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구제가 지연되거나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한다는 우려는 없을 것이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여러 문제

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피해의 범위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새로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손해배상, 즉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의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의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²⁹⁾이 있고,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언론보도의 진실성과는 무관한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러한 신청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밑줄은 필자 첨가)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밑줄은 필자 첨가)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문리해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³⁰⁾

한편, 언론중재법 제31조 제1항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4절 소송"이라는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는 법원에 대한 청구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23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합의가 이루어

29) 후자의 입장으로는,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 37면.

30)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특히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단순히 '피해자'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여 이를 구별하고 있다.

언론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포괄적이고
신속·간편한 구제를 가능케 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폭 넓은 조정관할권 부여해야

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에 법원의 관여 없이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는 만큼 언론중재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는 조정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저작권 등 그 성질상 보도의 진실성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는 물론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의 침해도 그것이 진실한 보도에 의한 것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관할권이 없고 설사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진실한 보도로 인하여 초상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가 조정신청을 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으나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자는 위 합의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위 합의를 초과한 액수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언론사는 위 합의를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 또는 청구권포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언론사가 조정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이나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은 모두 그러한 조정이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할권이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실한 보도에 의한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할권이 없는 것이라면 언론사가 2회 불출석하거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관할권을 새로 부여하면서 오로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은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으로서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포괄적이고도 간편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당초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폭넓은 조정관할을 부여함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인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의 '피해자'를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언론중재법 제31조처럼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³¹⁾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1) 특히 이 경우에는 보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몰래카메라, 비밀녹음 등 취재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나. 조정신청기간의 연장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언론에 의한 피해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당해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권리로서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조정신청기간을 위와 같이 단기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³²⁾

아마도 손해배상청구가 정정보도청구 등과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감안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의 제기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정정보도 등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손해배상만의 조정신청을 굳이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나아가 피해자가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민법 제764조의 정정보도청구와 병합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조정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때에 비로소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정권고제도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8항은,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언론중재법 제32조는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자도 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고(제2항),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나(제4항),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 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시정권고 조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다만 시정권고 내용의 공표에 관한 제32조 제5항은 내용 공표 시 해당 언론사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³³⁾

한편, 행정법상 명단의 공표는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시정권고에 대하여 시정권고내용공표제도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³⁴⁾가 있다.

시정권고 및 그 내용공표제도는 그 취지에 공감할 바가 있다고 하여도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법리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언론중재위원

32) 같은 취지 : 양재규,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문화관광부 주최 2006. 8. 17. 토론회 발표논문, 41면.

33) 위 헌재결정, 헌재공보 117호 965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55면. 다만,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실제 공표가 있는 후에야 기본권 침해 여부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34) 양재규, 앞의 글, 43-45면.

인터넷 포털뉴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으로 수용해
피해구제의 충실을 도모함이 바람직

회에서 이를 행사하는 것은 국가가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³⁵⁾ 다수의 개인이나 단체가 악의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시정권고를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사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³⁶⁾ 이를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순수 민간기구에 맡기거나(일반적으로 상당부분 국가의 규제가 허용되는 방송에 대하여는 그 보도에 관한 시정권고 및 그 내용공표를 방송위원회에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운용에 극히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적어도 시정권고내용공표제도는 폐지할 것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5. 포털뉴스 문제

오늘날 대부분의 시민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뉴스를 접하게 되고,³⁷⁾ 그로 인하여 포털사이트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 그 자체에 의한 것보다 보도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포털뉴스는 스스로 기사를 생산한다기보다 단순히 매개만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인터

넷 신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로써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간편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포털뉴스도 독자적으로 제목을 붙이고 있고 언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게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행사함은 물론 기사를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뉴스전달자의 지위에만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포털뉴스 사업자가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짐이 당연하고,³⁸⁾ 또한 일반적으로 지방언론사가 뉴스통신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사를 단순히 매개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독자적인 책임을 지고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인터넷 포털뉴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의 충실을 도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한다.

- 35)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언론사측에서는, 시정권고제도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32조는 대의적 헌법기관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에 대한 일반적 감시·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위 헌재결정, 헌재 공보 117호 1011면, 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95면.
- 36) 권혁남,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언론중재제도의 변화와 과제”, 언론중재위원회 2006. 7. 5. 토론회 주제논문집, 12면; 황용경,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 112면.
참고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내부통계에 의하면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인 2005. 7. 28.부터 2006. 9. 30.까지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신청건수는 49건에 달하였으며, 처리된 31건 중 단 1건만이 인용되었다고 한다.
- 37) 2005년 인터넷을 통해 매일매일 뉴스를 열람하는 독자는 총인구의 27.9%로 종이신문을 매일 구독하는 23.4%의 신문매체수용자를 추월했다고 한다. 황용석,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포털뉴스의 언론적 특성과 그 영향-”, 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 14면 참조.
- 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판결은 인터넷 포털뉴스사업자에 대하여 포털뉴스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였다(이른바 전여옥 사건).

V. 결 론

2005. 7.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언론중재제도, 나아가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제도 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새로 도입된 고유 의미의 중재도 선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정)가 필요적 전치절차에서 임의적 전치절차로 바뀐 뒤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조정신청이 줄지 않고 오히려 크게 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편리하게 하였고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그 동안의 실적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

절차로 심판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나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관할권의 범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또한 시정권고 및 시정권고내용공포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고 포털뉴스에 대하여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하여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언론중재법의 개정 시 위와 같은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 더욱더 효율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가 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

<제2주제>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I. 들어가며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관련된 쟁점들을 법률적으로 해부, 분석하기에 앞서 포털뉴스와 관련된 각계의 최근 동향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각 포털사별 최근 동향¹⁾

가. 네이버(www.naver.com)

네이버는 NHN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다.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방문자수²⁾ 2,953만 명을 기록하고 있어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는 현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네이버의 최근 동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2006. 8. 16.자 미디어오늘 2면에 실린 「네이버, 편집권 일부 언론사 이양」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7월부터 각 언론사들을 돌며 네이버 운영방침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네이버가 언론사들에게 제안한 내용은 △ 뉴스 검색 시 아웃링크³⁾ △ 뉴스

양 재 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저서 및 논문 :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기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검토』,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외 다수

- 1) 편의상 모든 포털사들을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 2) 이 장에서 인용하는 포털사이트 관련 모든 통계는 매트릭스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국내 13개 포털사이트 방문자수 추이'에 의존했음을 밝힌다.
- 3) '아웃 링크'에 대해서 언론보도는 대개 "마우스로 누르면 해당 사이트의 기사로 이동하는 것"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웹사이트 연결 방식일 텐데 용어가 다소 생소하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존에 '딥 링크(어떤 웹 페이지에서 다른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이거나 그 웹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내부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라고 불

편집의 일부를 언론사에 맡기는 것 등이었다고 한다. 그 후 네이버는 어떤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을까?

일단, 지난 10월 10일부터 기사나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네이버뉴스 24시간 안내센터'를 가동,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⁴⁾ 또, 오는 12월부터는 기존 움부즈만 코너를 확대, 개편하여 미디어 전문가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네이버 뉴스이용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⁵⁾

이들 개편 방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 뉴스 검색 시 아웃링크 △ 뉴스편집의 일부를 언론사에 맡기는 문제 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네이버가 제시한 개편안에 대해서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경제, 경향 등 11개 신문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소속 신문사들이 네이버 개편안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나. 다음(www.daum.net)

다음(Daum)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로서 위와 같은 기간 방문자수 2,874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역시 포털사이트이기 때문에 뉴스서비스에 있어서 다른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를 매개하는 것을 주로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포털사이트와는 달리 '미디어다음'이

라고 하여 자체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상시 고용되어 있는 소속 취재기자 및 편집기자도 있고 '언론사별 뉴스보기' 코너 맨 상단에 '미디어다음'이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

다음 역시 업계 추세에 발맞추어 뉴스서비스로 인한 분쟁예방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 8. 3.자 한겨레 18면 「포털들, 사회적 책임 이끌 위원회 꾸린다」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뉴스 편집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로 '열린사용자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음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언론사별 뉴스'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는데 이 코너는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라고 한다.⁸⁾

다. 네이트(www.nate.com)

네이트는 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로서 역시 같은 기간 방문자수 2,622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네이트 관련 최근 보도를 살펴보면, 최근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우리나라 포털 업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앰파스'를 인수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 포털 업계에서 NHN·다음커뮤니케이션·SK커뮤니케이션즈 '빅3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⁹⁾ 또, 지난 7월 27일부터 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리던 연결 방식과 유사한 것 같다. 현재 구글(www.google.co.kr)의 뉴스검색이 '아웃 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4) 아이뉴스 24(인터넷 신문), 2006. 9. 29. 「네이버, “포털뉴스, 책임지겠습니다!” ... 24시간 안내센터 가동」

5) 상동.

6) KBS '미디어 포커스'. 2006. 9. 22. 「포털 뉴스, 언론기능 외면 언제까지」.

7) 전언(傳言)이기는 하지만 미디어다음의 경우에는 지난 신문법 제정 시에 적극적으로 언론으로 되길 원했다고 한다. 일용 미디어다음의 경우는 다른 포털의 뉴스서비스와는 달리 현행 신문법에서 요구하는 인터넷 신문 요건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판단된다.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으로 기사도 올라오고 있다. 다만, 현행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에 해당하려면 전체 기사의 30% 이상이 자체 생산 기사여야 하는데 전체 기사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 결격으로 인터넷 신문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8) KBS '미디어 포커스'. 2006. 9. 22. 자 「포털 뉴스, 언론기능 외면 언제까지」.

9) 중앙일보, 2006. 10. 19. 자. 「싸이패밀리 “네이버, 한판 붙자”」.

포털, 학계, 정계,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펼쳐지고 있어

‘미디어책무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포털 뉴스 최초로 편집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한다.¹⁰⁾

2.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한 각계의 최근 동향

각 포털사들의 활발한 개편 움직임 외에도 학계나 정치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한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작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포털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 황용석 교수는 포털에 대한 개념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포털이 뉴스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아주 상세하게 제시해주었다. 또한, 제2주제 발표자 양삼승 변호사는 현행 언론중재법의 해석상¹¹⁾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언론사닷컴과 더불어 포털의 뉴스서비스 역시 ‘자기 스스로 취재를 하지 않는 않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배포를 하고 가장 중요한 편집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언론중재법의 조정 및 중재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²⁾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언론계의 관심은 어떠한가? 지난 9월 22일 방영된 KBS ‘미디어 포커스’에서는 「포털 뉴스, 언론기능 외면 언제까지」라는 제목으

로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사실상 언론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EBS가 ‘생방송 토론 카페’라는 코너를 통해 「인터넷 포털 뉴스, 법적규제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특이한 주장이 펼쳐졌다. 현행 신문법으로 무리하게 포털을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포털의 규제와 진흥을 겸하는 ‘포털진흥법’을 새롭게 제정하자는 주장도 펼쳐졌다. 또,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포털의 특성상 뉴스서비스는 신문법으로, 동영상은 인터넷 방송법으로, 댓글은 기존처럼 정보통신망법으로, 전자상거래는 전기통신사업자법으로 규제하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¹³⁾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3~4개 정도의 언론중재법 내지는 신문법 개정안이 제안된 상황이다. 먼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법에 포털에 대한 정의의 규정을 신설하고 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 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승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 개념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포털사이트를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 개념에 포함시켰다. 또,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를 언론

10) 한겨레, 2006. 8. 3. 「포털들, 사회적 책임 이끌 위원회 꾸린다」.

11) 본래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이 논문에서는 약칭으로 부르겠다. 다른 법령의 명칭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12) 양삼승(2005).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도 정기세미나 종합보고서. p. 68.

13) 동아일보, 2006. 9. 30. 자.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신문·논쟁 재점화」.

사가 아닌 '기사 매개자' 로만 보아 "뉴스서비스제공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서는 포털 뉴스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기사게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 발의와 더불어 지난 8월 31일 노웅래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포털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개최된 바 있다.

3. 최근 판결 동향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최근 동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지난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당 포털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¹⁴⁾ 보다 구체적으로 판결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형 인터넷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컷뉴스 소속의 한 기자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관련 기사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김 모 대변인'을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하였다. 이 기사는 몇 시간이 흐른 후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자동 전송된다. 노컷뉴스 운영자와 네이버 운영자 사이에 이미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기사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네이버 뉴스서비스란 중 '분야별 주요뉴스' 코너에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사안에서 네이버 측은 심리과정에서 변소한 바와 같이 해당 기사의 작성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었

다. 그저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을 뿐이다. 물론, 기사 제목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는 네이버 측에서 작성하여 올렸지만 이것 역시 노컷뉴스 측이 전송해 준 기사 내용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오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기사 생산자인 노컷뉴스 측뿐만 아니라 매개자에 불과한 네이버 측에게도 인정하였다. 재판부가 네이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엔에이치엔으로서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 간의 내부 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 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판결은 네이버 측의 항소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판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판결 하나만으로 우리 법원이 포털사에게 매개 기사의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판결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이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입장인 법원의 시각에서도, 이제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는 데에 관여하지는 않고 단지 매개만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피해의 배상으로부터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8300 손해배상(기) 사건.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방안
 마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확산돼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내 포털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II. 이 글의 방향

이상과 같이 각 포털들의 동향에서부터 관련 판결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최근 동향을 간단하게나마 살펴 보았다.

현재까지의 정황들을 종합해볼 때,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방안 마련 문제는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빠짐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의 초점도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와 같은 이론적이거나 원론적인 문제에서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구제방안인가?”와 같은 구체적이면서 실무적인 문제로 옮겨져야 한다.¹⁵⁾

본 논문이 목적하는 것도 이와 같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든가 “무엇이 최선의 피해구제방안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인한 최선의 피해구제방안 마련과 관련된 실무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다.

- 포털뉴스와 정정보도
- 포털뉴스와 손해배상
- 포털뉴스와 기사삭제 또는 기사게시중지

이들 실무적인 쟁점 검토에 앞서서 총론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기로 한다.

III.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다양한 시각의 대립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참 어렵다. 그 이유는 포털의 뉴스서비스 또는 그로 인한 피해구제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이 대립하고 있고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몇 가지 주된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본다.¹⁶⁾

1. “언론이다” vs “언론이 아니다”

15) 주지하다시피, 작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의 주제가 ‘포털저널리즘, 그 실제와 전망’이었다. 이 세미나는 포털이 우리 사회에서 언론으로서 이미 충분히 기능하고 있으며,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막대한가를 직시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의 해석상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볼 수 없는 입법상의 공백이 발생했음을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당면한 과제를 공론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년이 흐른 지금, 다시 작년과 비슷한 영역의 주제를 다루는 것은 보다 실무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16) 이장의 논의는 견해의 대립 상황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대립되는 견해 중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포털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이곳이다. 그 당부를 떠나 일단, 현재의 대체는 언론¹⁷⁾으로 보는 입장이다.

가. 언론으로 보는 입장

포털을 언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매우 다양하다. 첫째, 언론관계법은 아니지만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인터넷 언론' 개념에 따르면 포털 역시 인터넷 언론에 해당된다. 공선법 제8조의 5는 '인터넷 언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언론관계법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포털은 이미 입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언론으로 규정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뉴스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포털은 주요 소비처가 되었다.¹⁸⁾ 인터넷이라는 뉴스 소비의 새로운 공간에서 네이버·다음·네이트 3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기존 언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닷컴의 이용자수를 월등히 능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이신문을 매일 구

독하는 독자가 총 인구의 23.4%인데 비해 인터넷을 통하여 매일매일 뉴스를 열람하는 독자는 27.9%라고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열람하는 독자들의 주된 뉴스 소비사이트는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파란-조인스닷컴-조선닷컴-동아닷컴 순이라고 한다.¹⁹⁾ 시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포털의 압도적 우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다.

셋째, 뉴스의 생산·공급 측면에서도 포털은 언론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편집'과 '배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배포력에 있어서 포털은 이미 기존 언론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막강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 각 포털들은 공급받은 기사의 제목을 수정도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도 한다. 다시 말해, 어느 기사를 메인에 배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해석 작업을 통해 기사의 중요도를 평가,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 포털의 이러한 기능을 통해 사회적 의제까지도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나. 언론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

이러한 견해와는 반대되는 것이 포털은 뉴스 유통사일 뿐이지 뉴스 생산자(언론사)가 아니라는 견해이다.²⁰⁾

일단, 이 견해를 취하는 쪽에서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개별 사업자들이 전통적인 언론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다. 즉, 현행법상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모두 전기통신사

17)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어디까지나 직업적 전문인으로서의 언론인에 의해 만들어진 뉴스의 제작, 전송, 복사 행위를 의미한다. 흔히 'journalism' 혹은 'journal'이라고 번역되는 것이다.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언론은 아닌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황용석(2005), 포털저널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도 정기세미나 종합보고서, pp. 16~17을 참고하기 바란다.

18) 물론, 이것은 인터넷뉴스 시장을 염두에 둔 말이다.

19) 황용석(2005), 앞의 책, pp. 26~27.

20) 각 포털들이나 인터넷기업협회 쪽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주로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시각 대립하고 있어

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게는 주무 행정부처²¹⁾가 달라지고, 크게는 근거 법령도 달라진다.

또, 언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기사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으로 보기 어려운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주장한다.

2. "구제"적 관점 vs "규제"적 관점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피해구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행정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것은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입법에 있어서 포털 관련 규정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중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일단, 포털을 언론으로 보지 않는 시각에서는 신문법에 규정하여 언론사에 준하는 행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포털을 언론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포털 관련 규정을 신문법에 둬으로써 행정규제와 피해구제 두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둬으로써 행정규제의 문제는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피해구제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할 수도 있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각 포털들의 입장은 대체로 피해구제적 접근법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포

털을 뉴스 유통사로 보아야지 언론사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우선 이용자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²²⁾ 이것은 각 포털들이 '열린사용자위원회'라든가 '미디어책무위원회' 등과 같은 자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3. 정 리

각주 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장에서의 논의는 어떤 견해가 타당하다거나 어떤 견해를 지지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관점의 차이는 포털을 바라보는 이념 혹은 세계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되거나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면이 분명 있다. 다만, 전적으로 타당한 견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법을 찾는 데에 집중하는 방향을 갖고 구체적인 쟁점별 검토에 들어가고자 한다.

IV. 【각론 1】 포털뉴스와 정정보도²³⁾

1. 논의의 배경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내용에 문

21) 전통적인 언론사들의 주무 부처는 문화관광부이거나 방송위원회가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처는 정보통신부가 된다.
22) 동아일보, 2006. 9. 30. 자. 「포털사이트는 인터넷 신문? 논쟁 재점화」.
23) 이 장에서의 논의는 정정보도 외에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정보도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할 것을 요구하거나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의 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전자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하고, 후자는 '반론보도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리의 행사가 포털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다 같은 기사인데 단지 그 게재된 위치가 포털인지, 아닌지에 따라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좌우된다 하니 일단 상식적인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예를 한 번 들어보자. A라는 기사가 오늘자 B신문사 조간신문에 실렸다. A기사는 B신문사와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C포털에 전송되어 C포털에도 게재되었다. 그러니까 A기사는 B조간신문지면과 C포털사이트 화면에 실린 것이다. 일반인의 시각에 B신문에 있는 것이든 C사이트에 있는 것이든 다 같은 기사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B신문에 인쇄되어 있는 것만이 기사 혹은 언론보도인 것이다. 이것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사람들의 눈에 C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A는 신문기사로 안 보여야 한다. C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A 역시 신문기사로 보이는데 언론보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 포털 측의 항변

물론, 이에 대해서 포털 측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저작권. 포털은 정정보도청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저작권 문제를 거론한다. 포털이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기사의 생산자

인 언론사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 임의대로 기사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둘째, 계약상의 문제. 포털은 기사콘텐츠 공급자에 해당하는 언론사와의 계약내용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저작권 문제와 함께 포털이 기사로 인한 법적 책임 이행 문제에 있어서 기사 공급자이자 생산자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뒤에 숨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 점에 관한 각 포털들의 입장은 일치되어 있다.

셋째, 운영주체의 문제. 포털 측은 포털사업자를 언론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포털사업자는 분명 전통적인 모습의 언론사와는 많이 다르다. 법률적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3. 포털의 항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가. 저작권 문제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시사 보도는 어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사 보도는 인사왕래·사망기사·화재·교통사고 등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기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²⁴⁾ 그러므로 기자의 사상과 견해가 포함된 대부분의 기사는 어문저작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포털 측의 항변은 타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부정적이다.

먼저, 정정보도는 원 기사 자체를 가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원 기사의 내용이나 문구를 수정하는 것

24) 송영식·이상정(2003), 『저작권법개설』(제3판), 서울: 세창출판사, p. 102.

포털과 언론사 간의 계약사항을 이유로 들어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어

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아주 무관하다. 오히려 정정보도는 원 기사가 보도되었음을 전제로 그것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있느냐 문제는 원 기사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나. 뉴스콘텐츠 제공계약상의 문제

한편, 포털의 정정보도 이행 문제는 언론사와 포털 간에 체결하는 뉴스콘텐츠 제공계약 체결 시에 정정보도를 포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조항이 거래 관행상 뉴스콘텐츠 제공 계약 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²⁵⁾ 그렇다면 이런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로부터의 정정보도청구를 포털 측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문제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거부의 이유로 드는 포털과 언론사 간의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일종의 계약(契約)이다. 계약이란 넓은 의미에서 2인 이상 당사자들의 합의인

것이고, 서로에 대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된다.

이와 같은 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에 동의한 계약 당사자만을 구속한다. 계약상의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계약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포털과 언론사 간에 체결된 뉴스콘텐츠 공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포털과 언론사에게만 미친다. 계약사항과는 무관한 제3자, 즉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보도 피해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포털과 언론사 간의 계약사항을 이유로 들어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무는 법에서 정한 다소 강제성을 띤 의무이다.²⁶⁾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그래서 포털 뉴스 역시 언론보도로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일반적인 정정보도청구 시에 갖추어져야 할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일단 정정보도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다. 운영주체의 문제

현행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은 정기간행물이나 방

25)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 시장에서의 포털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막대한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포털에게 기사를 공급하려는 언론사는 많고 포털, 특히 네이버·다음·네이트 같은 빅3의 경우에는 자신의 입맛대로 뉴스 콘텐츠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뉴스콘텐츠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시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포털 측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언론사와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도 든다.

26) 이 말의 뜻을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기 바란다.

송, 뉴스통신 및 인터넷 언론과 같은 각 언론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으로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언론사로 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는 다르다. 현행법의 규정형식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으로 볼 수 있느냐 문제이지 언론사로 볼 수 있느냐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포털에 게재된 기사를 언론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를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비록 전통적인 언론사와 다르더라도 이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²⁷⁾

라. 보론: 전문보도(傳聞報道)의 법리에 관하여

언론보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보도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즉, 뉴스통신사와 같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전제하는 경우, 다른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리고 독자투고라든가 기고문 등 많은 형태의 전문보도가 존재한다.

실제로 많은 언론사들이 뉴스통신사들과 전제계약을 체결하고 기사를 전제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들은 포털처럼 기사의 매개자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포털이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느냐 문제는 포털 영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고, 매개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의 문제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비교에 대해서 포털과 뉴스통신사의 기사를 전제하여 신고 있는 언론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과 같이

언론사와 포털의 법적 지위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법적 지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뉴스통신사와 전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언론사 역시 해당 기사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또한 해당 기사의 생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포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 전문보도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법리가 포털 영역에도 그대로 혹은 유추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은 전문보도의 법리를 보여주는 판례들이다.

“피신청인은 ○○동에 있는 위 토지가격의 축소신고에 관한 기사를 ○○○○. ○. ○○자 신문의 보도를 인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비록 피신청인이 다른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피신청인의 신문에 게재한 이상 그 내용 중의 사실적 주장은 피신청인의 그것을 게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²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가 연구비판의견 또는 견해에 관한 발표를 요약, 인용한 것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반론보도청구권의 목적이 언론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27) 이와 유사한 문제점은 다른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대학신문의 경우, 각 대학신문은 정기간행물,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의 언론사는 누가 될 것인가? 언론중재법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해당 대학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는데 이것은 대학신문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총학생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법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총학생회나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역시 전통적인 언론사와 매우 다르다.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3. 7. 30. 선고 93가합312 판결

정정 또는 반론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보도형태가 아닌 사실의 적시이므로 포털에 게재된
 매개기사에 대해서도 그 공표의 최종 매개체가 된
 포털이 정정보도 의무 저야

데 있는 것이므로,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이상 다른 사람의 발표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²⁹⁾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도는 일반적인 기사의 형식으로 보도되든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보도되든지 그 보도의 형식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³⁰⁾

결국,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적시 여부이지 보도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그러므로 포털에 게재된 매개기사에 대해서도 공표의 최종 매개체가 된 포털에게 정정보도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포털 측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³²⁾

4. 정정보도청구절차에 관한 논의들

그러면, 포털의 정정보도 의무가 인정된다는 전제에

서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관광부의 입장³³⁾

이 문제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피해자가 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매개자에게도 선택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포털이 피해자로부터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언론사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만일 언론사(기사생산자)가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받았으면 그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및 정정보도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포털에 통보하고 포털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전태진 변호사의 견해³⁴⁾

29) 서울고등법원 1999. 5. 27. 선고 98나64969 판결

30)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2. 11. 선고 87가40175판결

31) 윤재윤·함석천(2005), 『언론분쟁과 법』, 서울: 청림출판, p. 206.

32)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발제를 맡은 양삼승 변호사는 “그러면 네이버 측에서 가지는 의문은 언론사와의 계약에 의해 임의로 기사를 손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의미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편집권이 있는데, 즉 언론사로부터 기사가 잘못된 기사라고 하면 뺄 또는 올리지 않을 권리, 책무, 편집권이 있는데 언론사와의 계약에 의해 그 편집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네이버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언론사와 계약을 할 때 포털에게 편집권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언론사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라고 말한 바 있다.(언론중재위원회 2005년도 정기세미나 종합보고서, p. 89.)

33) 언론관계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2006. 8. 2.), 문화관광부, p. 15.

34) 지난 8. 10. 민언련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았던 전 변호사는 “포털에 대한 직접 청구도 필요하지만,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는 궁극적으로 뉴스생산자인 언론사와 다투어야 하므로 1차적으로 언론사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직권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별도의 청구 없이 포털사이트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고, 포털은 이를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 보다 간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견해는 매개기사의 진위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 기사의 출처인 언론사와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래서 분쟁의 가닥을 기사의 출처인 언론사와의 다툼으로 좁히고 여기서 결론이 나면 기사를 공급받은 언론사는 무조건 그에 따르라는 식으로 피해 구제 절차의 간명화(簡明化)를 시도하고 있다.

다. 소 결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떤 하나의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정정보도를 청구함에 있어서 피해자는 기사생산자인 언론사를 상대로 할지, 아니면 포털을 상대로 할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³⁵⁾ 제 아무리 단순 매개기사일지라도 일단 자신의 공간 또는 이름으로 공표되었으며 포털 측에게 편집권한, 삭제권한이 있다면 그 기사에 적시된 사실적 주장은 해당 포털의 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체생산기사인지 매개기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된 모든 언론사나 포털들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³⁶⁾

둘째로, 정정보도청구에 있어서 피해자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편의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다. 즉, 피해자가 원 기사의 출처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여 해당 언론사가 당사자의 정

정보도 등을 받아들여 해당 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이미 게재한 경우 및 조정이나 소송과 같은 법적 구제 절차에서 정정보도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즉시 자사와 기사공급계약을 맺은 다른 언론사 및 포털들에게 해당 사실(정정보도의무 이행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보를 받은 언론사들은 역시 지체 없이 정정보도를 게재할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피해자는 원 기사로부터 기사를 공급받았을 수많은 언론사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상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위 첫 번째와 같이 선택적 청구권한을 가지는 피해자가 자신에 관한 기사가 어디에, 얼마나 뿌려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그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이에 관한 정보를 원할 경우 원 기사의 출처인 언론사는 어떤 언론사나 포털들에게 기사가 제공되었는지 그에 관한 정보를 줄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보다 더 생각해 볼 점

포털과 정정보도의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음을 밝힌다. 포털에의 정정보도권한 인정이 혹시 기사제공자 혹은 생산자의 입장에 있는 언론사들의 포털에의

35) 오히려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을 배제하고 기사생산자인 언론사에게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부당한 권리의 제약이라고 생각한다. 즉,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포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764조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포털 측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곧바로 정정보도인 것은 아니겠지만 정정보도 내지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보도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6) 최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인터넷 신문을 인터넷 언론으로 개칭하고 이 인터넷 언론 속에 언론사 닷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안 제2조 제8호). 이에 따라 오프라인 매체의 기사를 단순 매개하는 언론사 닷컴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안 제5조 제2항).

정정보도청구에 있어 언론보도 피해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보장해야

종속화 현상을 재촉하는 것은 아닐까?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흐려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포털에게 정정보도권한까지 주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대책 외에 다른 방식의 안전장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마든지 야기될 수 있는 당면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간 설왕설래만 있었지 이 부분에 관한 이렇다 할 만한 판례가 없었는데 첫 장에서 소개한 2005가단 18300 판결을 계기로 포털의 오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 장에서의 논의 역시 위 2005가단18300 판결이 중심이 될 것이다.

V. 【각론 2】 포털뉴스와 손해배상

2. 오보에 따른 면책의 가능성에 대하여

1. 쟁점의 특성

가. 포털 측의 항변

포털뉴스와 손해배상의 영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 즉 △ 포털의 주의의무의 유무와 그 범위 △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격과 내부 구상문제 △ 기사를 수정한 경우 그 책임소재의 변화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하다.

포털에 하루 올라오는 기사는 몇 건이나 될까? 네이버의 경우에는 대략 8,000건 정도 되는 것 같다.³⁸⁾ 각 포털의 사정에 따라 정확한 건수는 차이가 나겠지만 나머지 다른 포털들도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제시한 쟁점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분명히 밝혀둘 것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위 IV.에서 검토한 「포털뉴스와 정정보도」의 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포털뉴스와 손해배상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법리로 풀어야 하고, 풀릴 수 있는 문제다. 포털이 언론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³⁷⁾ 포털을 언론으로 보지 않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일

이렇게 많은 기사 중 오보를 가려내기란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 오보가 날 것에 대비하도록 요구하면 무리인 것 같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위 2005가단 18300 사건의 당사자였던 네이버의 방어논리이기도 하다.³⁹⁾

실제 소송에서도 네이버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엔에이치엔은 위 기사작성과정에 개입하지도 않

37) 다만, 포털이 언론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현재와는 달리 중재위원회 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에서 절차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38) ZDNet Korea, 2006. 10. 17. 자. 「네이버, 전여옥 의원 법원 판결 항소」.

39) 상동: 위 기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와 같다. ‘하루에도 8,000여 개가 넘는 모든 뉴스에 대해 포털 사업자가 오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네이버의 입장이다. 네이버 측은 법원이 포털의 입장을 이해해 한 번 더 심사숙고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번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았고 단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네이버의 주장과 같이 포털에게는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이 없는 것일까?

나. 재판부의 판단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앞에서 이미 제시했다.⁴⁰⁾ 관련 부분의 요지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포털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접속하여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험이 상존한다.
- 그러므로 이러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에게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과 달라서 기사의 대상인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의무가 있다.
- 포털의 이러한 주의의무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 나온다.

이러한 재판부의 관점은 우리 법체계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 헌법적으로 '명예'는 보호되어야 할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이다(헌법 제21조 제4항). 때로 알권리와 충돌하기도 하여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을 담고 있는 법률은 많다. 언론중재법 제5조 인격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러하고,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부터 제310조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및 형법 제310조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5조 ②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들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명예를 보호해야 할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경우는 단 한 가지, 그 공표한 내용이 공공성을 띠고 진실하거나 진실하지는 않지만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리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부른다.

다. 네이버 측의 주장이 과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

위법성조각사유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다시 네이버의 항변을 나름대로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네이버는 해당 기사 작성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모른다.
- 네이버는 노컷뉴스가 전송해 준 기사가 진실일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게재했을 뿐이다.
- 해당 기사의 제목은 우리(네이버)가 달았지만 전송해준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 그러므로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이 없다.

40) I의 3.항 참조

사적 계약인 뉴스콘텐츠 공급 계약에
따라 공급된 것에 불과한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상당성 인정받을 수 없어

이렇게 재구성해 놓고 보니 네이버 항변의 실체가 드러난다. 네이버가 하고 있는 말은 결국 기사콘텐츠 제공자 측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기사는 허위였다. 허위의 기사라 하더라도 공표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이다. 그런데 네이버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상당성이 있겠는가? 그저 기사콘텐츠 제공자 측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된 판결로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이 있다.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참작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도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자기 책임 하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취재시간이 제한된 탓에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과장 보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진실로 믿기 위하여는 더욱더 진위 여부의 확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경찰 출입기자가 없는 한 영자신문의 기자가 경찰의 보도자료, 연합뉴스의 보도문, 다른 신문의 기사, 방송매체의 방송내용을 참고하여 마치 이를 직접 취재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⁴¹⁾ 책임 인정의 주체가 신문사이고,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도한 경우라는 점에서 포털과는 경우가 아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믿줄을 친 부분이다. 한 마디로 기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실로 믿었다고 해도 그 신뢰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⁴²⁾라든가,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⁴³⁾를 믿은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상당성을 인정받기란 어렵다.

결국, 사적(私的) 계약인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된 것에 불과한 기사를 진실하다고 믿었다는 포털 측의 항변만으로는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나아가 면책의 가능성도 없다.

라. 과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지 여부

다른 한편으로, 이번 네이버 관련 판결의 초점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명예훼손에 대한 과실의 존재에 대한 판단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 언론보도에서 읽을 수 있었던 네이버 측의 입장⁴⁴⁾은 이것에 가깝다. 즉,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기사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문제의 기사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것을 포털은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모른다.

사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행위에 대한 가해자 측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한다(민법 제750조). 명예를 훼손할 의도(고의)가 있었거나 명

41) 윤재윤·함석천(2005). 앞의 책, p. 119.

4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8389 판결

4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4406 판결

44) 각주 38) 39)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하다. 포털에 올라오는 수많은 기사들, 이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포털 측에서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의의무가 없을 수 없고 과실이 있음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포털 측에서는 기사의 건수가 너무 많아 오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사의 '건수'에 원인을 돌리는 것은 핑계라는 생각이 든다. 건수가 너무 많은 것이 정말 문제라면 감당할 만큼만 올려야 할 것이다. 포털에 하루 8,000건씩 기사를 올려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설령 기사의 건수가 줄어들어도 기사의 매개를 주로 하고 있는 포털이 무슨 수로 오보를 잡아낼 수 있을까? 가령 너무 퇴폐적인 내용이라거나 혐오스런 사진, 비방이나 욕설 등이야 걸러낼 수 있겠지만 취재를 하지 않는 포털은 사건의 진위 여부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보를 잡아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3.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격과 내부 구상문제

가. 포털이 취할 수 있는 대책

위 2.항에 따르면 포털의 입장은 참 답답할 것이다. 오보를 잡아낼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오보가 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책임을 지라니 말

이다. 그런데 오보에 따른 포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해서 포털에게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볼 때, 오보의 일차적인 원인은 기사를 제공한 쪽에 있다. 그러므로 오보 사태로 인한 궁극적인 책임의 소재 역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포털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사를 생산하고 제공한 언론사 쪽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오보가 발생함으로써 포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기사콘텐츠 제공자 측에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두어야 한다.⁴⁵⁾

나. 부진정연대책임과 구상권 행사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

뉴스콘텐츠 제공계약 체결 시에 오보에 따른 모든 책임이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임을 앞서 말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정이 없으면 책임관계는 어떻게 될까?

포털에 게재된 잘못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것은 민법 제760조에 규정된 '공동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뉴스콘텐츠를 제공한 언론사의 기사 생산행위와 포털의 공표행위라는 복수의 사람의 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공동해서 결국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다.⁴⁶⁾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45) 물론,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실현불가능하면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포털이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생각할 때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46) 박윤직(2003). 『채권각론』(신정판). 서울: 박영사. p. 527.

포털은 당사자 간 약정 혹은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상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해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⁴⁷⁾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⁴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대하여’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하고, 또 채무자 1인이 배상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배상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여러 명의 불법행위자로부터 1회의 만족을 얻을 뿐이다.⁴⁹⁾ 다만, 여러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상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결국,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 언론사와 포털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어느 쪽이라도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을 마치면 다른 한쪽까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2) 책임의 분담과 구상권 행사

그 다음에는 부진정연대책무의 성질상, 내부적 책임 분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부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 1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⁵⁰⁾ 이것을 구상권 행사라고 한다.

위 2005가단18300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 다

음과 명시하였다.

“피고들 간의 내부 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의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엔에이치엔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실무에서 주의할 점

이와 관련해서 중재위원회 조정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포털이 언론사로 인정될 경우에는 포털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오보로 인한 포털과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가 여러 개인 경우, 신청인이 동일인이더라도 언론사에 따라 사건을 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무 관행에 비추어보면 포털과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사건이 서로 다른 중재부에서 진행될 수 있고, 배상책임이 언론사별로 각각 산정될 수 있다. 포털과 언론사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7)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연대책임에 비해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가 더 좁다.

48) 박윤직(2003). 앞의 책, p. 526.

49) 이은영(2000).『채권총론』(개정판). 서울: 박영사, p. 513.

50) 이은영(2000). 앞의 책, p. 515.

다. 소 결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포털은 결국 당사자 간 약정으로써 혹은 부진정연대책임의 법리상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적인 책임은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점에 맞추어 포털 스스로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를 바란다.

4. 포털에 의해 임의로 수정된 기사로 인한 책임 소재

가. 검토의 배경

포털이 기사를 단순 매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메인 고정기사의 제목 수정 비율이 포털 '다음'의 경우에는 부분수정이 72.8%, 전면수정이 10.6%라고 하고 '네이버'의 경우에는 부분 수정이 64.5%, 전면수정이 11.3%라고 한다.⁵¹⁾

이러한 현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나. 기사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기사를 읽을 때 제목부터 읽어 내려간다. 바쁠 때는 기사의 제목만 훑어보기도 한다. 이러한 독자의 생리를 잘 아는 신문사들은 독자의 이목과 관심을 끌만한 제목을 달고자 한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다. 그래서 정작 기사 본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사 표제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기사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 명확히 판단을 내린 판결은 없지만 참고가 될 만한 판결이 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은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사 제목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신문사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모 언론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기사를 보도하면서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서신' 등의 제목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제목을 놓고 봤을 때 기사의 대상 인물들이 마치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기사 본문의 내용은 문제가 없었지만 이러한 잘못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것이다.

다. 포털에의 적용

그러므로 기사의 제목⁵²⁾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있는 포털 업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본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포털의 기사 제목 편집으로 말미암는 명예훼손책임 문제가 언제든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책임은 오로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단 포털만의 책임일 것이다.

51) 매일경제신문. 2006. 9. 22. 자. 「신문기사 제목, 포털에선 제멋대로」.

52) 이와 관련해서 기사의 제목과 인덱스(메인화면에 표시되는 식별표지)를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목인지, 인덱스인지 중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별해 볼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포털 및 인터넷 신문과 관련해 신속하게
문제 기사를 삭제하거나 게시중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해

VI. 【각론 3】 포털뉴스와 기사삭제 또는 기사게시중지청구

1. 문제의 제기

포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은 기사삭제 내지는 기사게시중지청구권 문제이다. 실무 경험에 비추어보면, 온라인 기사는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기사가 문제 있는 것으로 밝혀진 후에도 인터넷상에 지속적으로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피해 상황이 종료되어야 하는 단계에서도 피해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피해 유형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예컨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진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경우 해당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내리기 전까지는 광범위하게 복사, 전송될 수 있다. 또,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문까지 게시되었지만 잘못된 기사 원문이 그대로 온라인상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비단 포털만의 문제는 아니다. 포털 외에 인터넷 신문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신문 관련해서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게시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기사삭제 또는 게시중지청구권의 법적 근거

이와 같은 기사삭제 또는 게시중지 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이 실체법상의 근거 규정이다. 즉, 어떤 규정을 근거로 포털 등에게 기

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냐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대략 두 개의 규정을 고려해볼 만하고, 아니면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가. 민법 제214조

인격권이 가지고 있는 물권적 성격에 주목하여 소유권에 근거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규정인 민법 제214조 규정을 인격권 방해 행위 제거 시에도 유추(類推)적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가해자 측의 고의라든가 과실과 같은 별다른 요건 없이 단지 방해 행위가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마련해놓고 있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와 비교해볼 때, 기사삭제청구 또는 게시중지 시 그 원용 가능성 유무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규정이다.

다. 검토

그러나 이들 두 규정 모두 각각의 단점이 있다. 먼저, 민법 제214조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소유권에 관한 것으로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려면 유추적용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은 규정의 위치도 매우 부적절하고,⁵³⁾ 가해자 측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즉, 가해자 측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 규정을 원용하여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에 대해서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것이다. 입법 시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3. 기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 청구 요건

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먼저,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는 그 성격상 원상회복청구권에 가깝기 때문에 권리의 성립요건으로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나.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다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즉,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도 초상권이나 생명권과 같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도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지난 10월 10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3조의 2 제1항은 그 청구권자를 '명예가 훼손되거나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의 없이 찍힌 사진과 함께 게재된 기사⁵⁴⁾의 경우에는 그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 또, 이미 무죄가 판명된 사건에 대한 범죄혐의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삭제나 게시중지를 청구할 수 없다.

물론,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의 절차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청구의 문제에서 핵심은 피해구제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제도로도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만으로는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본다.

법원의 재판절차 외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면 중재위원회를 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 제1안: 기존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먼저, 기존 조정절차를 따라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의 청구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미 오랜 경험과

53)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고, 표제 역시 '손해의 배상'이다. 또, 제4절 소송 편에 속해 있어서 법원의 소송절차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54) 흔히 '포토뉴스'라고 부르는 것이다.

기존의 조정 절차를 이용해
기사삭제나 게시중지 청구를
처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노하우의 축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7일 전후로 심리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빠르면 1주일 전후로도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조정절차는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 매체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⁵⁵⁾

나. 제2안: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인터넷 뉴스 피해구제 심의위원회'⁵⁶⁾를 통하는 방법

역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3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포털이나 언론사 닷컴이 매개하는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하였거나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가 게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⁵⁷⁾에 중재위원회에 게시중지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 사실을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와 매개자인 포털 등에게 통지한다(제2항).⁵⁸⁾

위와 같은 중재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언론사 및 포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기사의 진실성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제3항).

중재위원회는 언론사 및 포털 등이 위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다린 다음, 늦어도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제출된 모든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 및 명예훼손성을 심사하여 게시중지조치 명령을 내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결정한다(제4항).⁵⁹⁾

이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사게시중지는 일단 잠정적인 조치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기사 삭제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위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게시중지결정을 받은 이후 2월 이내에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이나 중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조정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게시중지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제6항).⁶⁰⁾

어쨌든 위 안에서 제시한 방법은 신속, 간명하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다툼의 폭을 포털이 아닌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와의 문제만으로 좁히고 있다.

다. 검토

55) 조우성(2006). 포털 및 인터넷상의 언론보도 피해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노웅래 의원실 주최 '포털 뉴스 서비스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문. 2006. 8. 31.

56) 이하 '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

57) 신청 기간이 매우 단기이다.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게시된 날로부터 45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58) 이 기간이 대략 1 ~ 2일이 걸릴 것이다.

59) 예컨대, 11월 20일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다음날 언론사에 접수 사실이 통보되었다면 늦어도 11월 27일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장 2주에서 3주까지도 걸릴 수 있는 조정절차에 비해 상당히 신속한 피해구제절차임은 분명하다.

60) 이 외에도 각하되거나 신청 등이 취하된 경우 역시 게시중지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제2안보다는 제1안을 선택하고 싶다. 제2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소명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기사게시중지를 명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하루에도 수 천 건의 새로운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온라인 매체의 현실인데, 2개월 게시중지는 실질적으로 기사 삭제를 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면 모를까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게시중지를 명한다면 아마도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 방어권 보장이 틀림없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 소명을 요한다는 점도 문제다. 언론사 측에서는 이것이 미흡한 절차권 보장과 연결이 된다. 그런데 신청인 측에서도 소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미흡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은 염려가 된다. 자칫 중재위원회의 성격을 분쟁의 조정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로 인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또, 게시중지결정의 효력도 모호하다. 과연 집행력은 갖는 것인지, 게시중지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언론사나 포털 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위 개정안은 침묵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조정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인터넷 기사 삭제나 게시중지를 전담하는 중재부를 현 중재위원회 안에 설치한 다음 현 절차의 진행을 보다 신속하게 한다면 첫 심리기일을 접수일로부터 7일 전후에서 조금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 조치도 마찬가지다. 조정 절차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설령 기사의 삭제나 게시중지가 되었다고 하더라

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권리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소 결

2006서울조정○○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처음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했다. 그러나 심리 과정에서 “정정이나 반론보도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다시 언급하게 되므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같다는 이유로 기사의 삭제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언론사 측에서도 받아들여 기사 삭제 외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역시 또 다른 사건(2006서울조정100)에서는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했으나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삭제함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존 조정 절차를 이용한 기사삭제 내지 기사게시중지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본다.

Ⅶ.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본 포털 뉴스 관련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지루한 반복이라 생각되어,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말로써 나오는 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포털 뉴스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는 행정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들이 있고, 피해구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포털 관련 규정을 신문법에 넣을 것인가, 언론중재법에 넣을 것인가로 이어진다. 물론, 신문법에 넣어서 포털 역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할 필요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좀 더 신중하게 검

피해구제적 접근을 통해
포털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선행돼야

토해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규제적 접근법을 고수했을 때 포털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는 논쟁거리가 될 것이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는 그 시간에도 포털로 인한 피해는 확산되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는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는 별도로 일단 시급한 피해구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다. 행정규제적 접근법에 비해, 피해구제적 접근은 상당히 사회적 합의도 있는 듯하다. 언론중재법에 포털이 조정 및 중재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고, 포털 관련 정정보도청구는 물론, 손해배상과 기사의 삭제 또는 게시중지청구까지 중재위원회 조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본다. □

2006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김창룡 경남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새 언론중재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 새로운 언론중재제도가 거두어 온 성과는 무엇이고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해 일선의 사례들을 제시해가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또한 포털 뉴스의 피해구제 방안에 관한 토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기사삭제 청구권 등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포털이라는 새로운 매체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또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것인지 등에 관해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제1주제 토론

오광건(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의본부장)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관할 범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허위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역시 조정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미 초상권이나 음성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접수되고 있으며 조정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이 '피해자'를 허위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된다는 주장은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과 제18조 제2항만을 놓고 볼 때 일응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상 '피해자'를 허위 보도에 의한 피해자로 한정할 경우 같은 법 내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18조 제1항과 제3항, 제26조 제1항, 제2항 등은 '피해자'의 조정 신청 범위를 정정보도청구로 한정하지 않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도 가능하도록 표기하고 있다. 법 전반을 살펴볼 때 '피해자'라는 표현은 입법 기술상 축약 표현을 위해 차용된 일반적인 청구인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정 관할 범위의 문제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다. 각 중재부의 중재부장 및 전문 변호사들과 심층적으로 논의한 결과 언론중재법 내에서도 '피해자'에 관한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범위

를 보다 넓게 유추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 하에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의 조정 및 중재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법 조항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애매한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강무성(SBS 정책팀 차장) :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공 열쇠는 신뢰도라고 생각한다. 법 시행 초기에는 언론분쟁이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언론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SBS의 입장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개인보다는 정부기관의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언론중재법이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그 취지와 다르게 언론중재법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사 입장에서 이야기 하자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또한 개인에 관한 부분은 가급적 조심스럽게 보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의 조정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듯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공인이나 공적 기관이 정정 또는 반론 등을 요청할 시에 지엽말단적인 부분을 빼고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일 경우 언론사의 입장을 존중해 판단을 내리는 운용의 묘를 살려주었으면 한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과 관련

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의 관련 기관이 논의해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문제를 다루어주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언론중재제도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공열쇠는 바로 신뢰도에 있어

이두영(뉴시스 전국부장)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청인과 정정보도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사건이 완료된 후, 신청인이 같은 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정 합의 후 여타 청구권을 제기하는 것에 있어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그 문제는 신청인과 언론사가 조정 합의를 할 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정합의서 등에 '보도를 내는 조건으로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식의 부제소 합의를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노향기(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시정권고 제도에 관해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정권고 제도는 이미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쳐 언론사로서는 권고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권고를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랜 기간 동안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엄격한 입장에서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리고 새 법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제3자 시정권고' 제도 역시 실

제 신청건수도 많지 않으며 그 중에서 인용된 건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

시정권고 제도는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운 엄정한 기준 하에 운영되고 있으므로 다른 여타 기구가 시정권고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관련 업무의 노하우를 갖춘 언론중재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다만 주위의 우려를 인식해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승훈(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 사실을 기반으로 한 판단 또는 의견에 대해서도 조정이나 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조정, 중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의견이나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내포된 사실적 주장 부분에 근거해 판단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반론보도 등의 신청은 가능하다고 본다. 즉 의견이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판단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의견이나 판단이라도 내포된 사실적 주장 부분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경우 반론보도 등의 신청 가능해

양정웅(MBC 법무저작권부) : 언론사에서 언론중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호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관할 문제, 다른 하나는 당사자 적격 문제다. 먼저 관할 문제와 관련, 지금까지는 사실적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특히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일 경우

에 대한 피해보상을 많이 염두에 두었는데 최근에는 허위보도와 무관한 드라마에까지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당시에도 이 부분이 언론중재의 대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일단 분쟁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언론사가 수용을 했다. 하지만 직권조정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직권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키고 이를 언론사가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관할이 없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 즉 다시 피해자가 같은 건을 가지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내부적으로 이와 유사한 건들이 조정 사건에 해당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발표자에 따르면 당사자가 매 건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조정 관할 여부를 다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 적격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을 비교적 명확하고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생타이어의 위험성을 고발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대한재생타이어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비슷한 건에 대해(동물병원이 폭리를 취한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수의과학협회가 제기한 건, 성형수술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자 의사들이 너도나도 성형수술을 과외로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미용외과학회에서 제기한 건 등) 모두 당사자 적격을 인정, 반론보도의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법원의 모 판사는 '법원도 당사자 적격을 넓혀 가고 있는데다 언론중재는 사법 절차라고는 하지만 분쟁의 해결이라는 측면을 고려, 방송사

가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과연 언론사가 이러한 부분이 사건화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심의에 넘어갈 때 이를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궁금하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피해자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조정의 관할 범위는 단순히 편의적으로만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속히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조정하는 것은 좋지만 손해배상의 조정 관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직권 조정에 있어서만큼은 신경을 써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지만 직권조정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없애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적격의 문제는 결국 실제 보도와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과의 직접적 관련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집단명예훼손소송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도와 관련된 당사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되어 제기된 집단명예훼손소송의 당사자 범위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청구하는 사람 개개인에까지 직접적으로 보도의 피해가 갈 것이냐 아니면 추상적으로만 피해가 가느냐의 문제인데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형외과 의사가 수 천 명이 될 수도 수 백 명이 될 수도 있는데 성형외과 수술의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성형외과 의사가 모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대법

원의 입장이다. 그 부분에 대해 인원수를 한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명을 넘어서면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재생타이어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재생타이어업자가 한두 명밖에 없다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할 것이지만 재생타이어업자가 수 백 명이라 한다면 문제된 재생타이어가 어떤 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단계에서 적절히 끊어야 한다고 본다.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해

이종일(EBS 인사법무팀 과장) : 담당 PD가 대리권을 수입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중재부에 의해 합의 조정되었는데 담당 PD의사와 달리 기관에서는 합의된 반론보도 문구를 방송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다. 하지만 각하되어 결국 신청인이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청구해, 보도문을 내보낸 적이 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대리권을 수입 받아 조정에 참석할 경우 지나치게 합의 조정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권조정을 했다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오히려 합의 조정이 되는 바람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지나친 합의 유도보다는 직권조정이 오히려 언론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니까)라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합의 조정을 했더라도 다시 취소해 재조정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든가 기관의 의사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않은 당사자 합의를 무리하게 유도하지

말고 직권조정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직권조정은 그야말로 비상수단이다. 언론사에서 대리를 할 경우 언론사 내에서 확실하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 합의를 했는데 재심을 한다든지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합의를 깨뜨린다면 절차가 너무 불안정해진다.

이수연(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 한 여학생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사진을 모 언론사가 찍어서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여학생이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다. (여름날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인해 신청인은 친구들로부터 못생겼다는 놀림을 받는 등 인격적인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손해배상을 결정했고 해당 언론사에서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손배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만약 초상권 침해의 경우 신청인이 주장을 강하게 할 경우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최근 대법원에서 초상권과 관련한 판결이 하나 나왔다. 기본 원칙은 공공장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진 찍는 것을 모두 초상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언론 보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가능하며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초상권 침해 여부는 그런 사정을 다 챙겨야 하

는 부분이므로 모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장소에 있다고 해서 초상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공공장소라고 해서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진을 찍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초상권 침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를 어디까지 봐야하는 것인가? 초상권 문제에 얽매이게 되면 기자들은 사진을 못 찍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기본적으로 보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느냐,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느냐, 그 사람이 공인이었느냐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 미국과 우리나라, 특히 유럽이 또 다르다. 미국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찍힌 경우 언론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분위기지만 우리나라와 유럽은 또 다르다.

일반 사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사진이 나가면 이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다. 모자이크 처리나 뒷모습을 찍는 등 본인임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진을 찍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언론재단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강사였던 변호사는 공공장소, 즉 공연장이나 야구장 등에서 찍는 사진은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발표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혼란스럽다. 공연장도 안 된다고 한다면 기자의 입장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사진을 찍힌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찍어도 좋고 하는 묵시적 동의가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치어리더 옆에 나가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찍어도 좋다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봐도 된다.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예를 들어 치어리더 옆에 특이한 복장이나 분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춘 사람을 찍어서 보도했는데 초상권 침해로 항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위수 판사(발표자) : 공중에 대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눈길을 끈 것이므로 사진을 찍어도 좋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도 된다.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현업 언론인과 법원 사이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인들은 사진 한 장이 곧 기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초상권 문제 때문에 자칫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이 고민이다.

김창룡(사회자) : 초상권 문제는 변수가 많다. 공개된 장소인지, 준 공개된 장소인지, 사적인 장소인지, 또 사인의 초상권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느냐 등의 여러 변수 때문에 일반화시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매체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개인의 인격권이 고양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재형(SBS 정책팀/변호사) : 잘못된 보도로 인해 기업의 신용이나 영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수십 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다.

한위수 판사(발표자) : 인과관계 인정 부분은 쉽게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론상 상당 인과 관계는 유추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보도가 나간 뒤 매출액이 떨어지는 추이 등을 비교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보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경영난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보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심흥식(국정홍보처 분석2팀장) : 정부에서 지엽말단적인 부분들로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정부기관의 조정신청이 지난 몇 년 새 증가 추세임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본다.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명하면 언론의 사실에 부합한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를 수용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언론에 대응하는 시스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이라면 법률도 바꾸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아 민주적 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의 입장도 바르게 전달되고 언론도 자유롭게 보도해서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결국 민주적 소통

구조의 확보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어수용(총북중재부 중재부장) : 재판으로 가느냐 그것보다 더 간편하고 쉬운 절차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끝내느냐 하는 문제는 법체계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법에서 전치주의에 관한 문제, 청구 기간을 다르게 한 문제 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전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청구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중재제도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도영(부위원장) : 언론중재법 1년을 맞이해, 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만약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적극적으로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본다.

위원장 : 이런 기회를 잘 가졌다고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와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상호 격의 없는 토론의 자리를 자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다.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느끼는 문제점, 또 혹시 외부에서 잘못 바라본 언론중재위원회의 모습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성의 있는 해명, 이런 것을 통해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이해를 하게 될 때 신뢰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언론중재위원회의 궁극적 목적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독립·중립적으로
언론중재법 및 중재제도를 운용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해**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논의됐다. 하나는 정부기관의 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한 것, 다른 하나는 초상권 침해 등을 과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관할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기관 조정 신청 건수 증가에 대해서는(최근의 경향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평가 문제와는 별개로 이 정부의 태생적 과정이나 국정담당자들의 생각 등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언론의 못마땅한 보도에 대한 이의를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념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은 틀림없고 그 관념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신청 중에 보면 '이런 것까지 신청하나' 하는 건수나 각 부처별로 얼마나 많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 무언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외부에 비춰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것은 못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대응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행여 정부에서 언론 전쟁을 벌이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하나의 전위대로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언론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신청을 하든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정부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혹여 이용하려 한다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절대로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조정에 임하고 있음을 믿어 달라.

손해배상 청구의 관할 범위에 관한 문제, 특히 그릇된 사실 보도와 관련되지 않는 음성권, 초상권 등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디까지 관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중재부장들과 함께 다각도로 토의를 했다. 그 결과, 적어도 언론보도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초상권 침해가 아닌 한, 예컨대 보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언론사 기자가 한 장 찍은 사진과 같은 그런 것은 해당 안 되지만,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사진, 음성, 초상 등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된 경우(물론 그 경우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재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발표자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2주제 토론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과 관련해서 공군 최초의 여자조종사를 취재해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제휴사인 CBS 노컷뉴스에 보냈고 CBS 노컷뉴스는 자신들의 제휴사인 포털사이트로 해당 기사를 보냈다. 그런데 기사가 나간 다음날 문제가 발생했다. CBS 노컷뉴스가 원제목을 바꿔 다른 제목을 달았고 이를 포털사이트가 그대로 받아 내보냈는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이다. 기사의 바뀐 제목으로 취재원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할 우려가 생기고 군인으로서의 신분마저 자칫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까지 번져 신속하게 포털사이

트에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CBS 노컷뉴스 역시 기사 내용 안에 해당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제목을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한참만에 바꾸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에는 한 군대를 제외하고 여전히 문제의 제목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 공개됐다.

이런 경우 취재원이 아닌 취재기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 원제목을 기사 내용에 있다하여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이 경우는 기사 전부를 다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노컷뉴스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했으므로 제휴를 맺은 근거가 되는 계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만약에 기사 제목 수정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저작권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바꿨다고 해서 이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어떤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자 문제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질문자가 CBS 노컷뉴스를 상대로 무언가 소송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다행히 이번 건은 수습이 잘 됐지만 만약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에게 불이익이 생겼을 때만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그런 부분은 사실 법률적으

로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 예로 백령도의 군부대를 방문한 어떤 정치인사가 현직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발언을 했는데 정작 그 피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대 최고 지휘자가 받게 되는 상황에서 보도가 그렇게 나갔고 그래서 지휘자가 국방부로부터 문책을 당했을 경우 이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법 외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작용해서 그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등이 제기되었을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질문자의 이야기처럼 분명히 이 기사로 인해서 취재원이 피해를 보았고 질문자인 해당 취재기자 역시 피해를 봤는데 그런 부분이 모두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소송 건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김창룡(사회자) : 저작권 쪽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일단 정리해 두고 관련된 얘기가 더 나오면 그 때 진행하기로 하자. 포털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해명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

기사를 작성해 제공한 언론사와 기사를 받아 전재한 포털 사이의 의사소통 부족 문제가 종종 발생해

윤태석(네이버 미디어서비스팀 차장) : 먼저 충북일보 건과 관련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어떻게 본다면 포털의 책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충북일보 건은 CBS 노컷뉴스가 대리중계해서 기사를 포털 쪽에 전송하고 이를 포털이 게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이버는 현재 24시간 뉴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발제문에도 소개된 '전여옥 대변인' 사건도 기사를 작성해 제공한 CBS 노컷뉴스와 기사를 받아 전재한 네이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오류 및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배경에 포털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한다.

발표자의 이야기에 대해 몇 가지 논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조선닷컴이 온라인상에 작성해 게재한 기사를 조선일보가 오프라인 지면에 게재했을 경우 그 기사로 피해를 본 사람은 과연 어떤 매체를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즉, 조선일보와 조선닷컴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전혀 다르지만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그 보도를 조선일보가 취재해 올린 보도로 인식하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다.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조선일보의 기사가 네이버에서 유통이 돼(그 기사가 조선일보의 기사라고 인식을 했든 안 했든의 문제는 차치하고) 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네이버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생긴다. 물론 네이버가 시스템적으로 정정보도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경우 네이버가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포털의 영향력이 막대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포털을 찾는다는 논리에 따라 '네이버에 나왔기 때문에 네이버도 직접 정정보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방문자수 3위 정도

하는 사이트에서(포털이 아닌) 조선일보의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가 문제가 되어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한다면 과연 정정보도를 그 사이트에 청구할 수 있는지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정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연합뉴스와 같은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은 언론사가 받은 기사의 일부를 인용 또는 전문을 게재했을 경우에 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는 기사를 제공받은 언론사가 하는 것으로 판례가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포털사이트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제공되는 기사 전체가 외부 언론사의 기사이기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기사의 일부를 전달받아 사용하면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일반 언론사와는 다른 상황에 직면한다. 즉, 포털이 제공하는 기사가 방대하며 직접 기사 생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언론사처럼 모든 기사에 대해 일일이 직접 취재원에 접근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체적으로 크로스체크 할 수 있는 언론사적인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일단은 정정보도 코너를 만들어 기존의 언론사들이 내는 ‘고침’, ‘바로잡습니다’, ‘정정과 반론’ 등을 게재하고 있고 24시간 뉴스센터를 통해 피해구제에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정정보도 코너나 반론보도 코너처럼 이미 피해구제에 대한 시스템은 갖추어 놓은 상태다.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에 의해서 포털도 피해구제 및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된다면 그에 따라 곧바로 적용 가능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언론사와의 계약 문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결정적인 시스템 오류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조선일보와 계약할 때

는 조선일보와 NHN이 직접 뉴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조선닷컴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닷컴은 뉴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대리중계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런데 대리중계의 역할에는 제한이 있다. 원 저작물을 훼손할 수 없다든지 사실 확인 등을 직접 하기 어렵다는 부분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원 계약을 놓고 보면 네이버의 계약당사자는 조선닷컴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직접 네이버에 이야기하는 것은 계약 위배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접촉하는 이유는 조선닷컴이 정정보도를 할 수 있다고 계약조건을 명시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정정보도에 대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당사자는 조선일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일보와 직접 계약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닷컴이 있는 언론사들은 온라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계약 관계 자체가 얽히고설키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포털의 경우, 기사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개 기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있어

또한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만약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포털은 매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실제 계약을 보면 포털이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포털이 뉴스 시장에서 어떤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박영태(다음 미디어콘텐츠 팀장) : 충북일보 측 의견과 관련해, 만일 미디어다음이 충북일보와 직접 콘텐츠 계약을 맺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목이 완전히 바뀌거나 편집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디어다음의 경우, 대리중계하는 과정에서 제휴를 맺은 언론사로부터 받은 기사의 제목을 임의로 바꾸거나 하는 일은 많지 않다. 기사제목은 원제목과 전혀 다르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글자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역시 24시간 응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현재도 이메일, 팩스, 전화로는 24시간 응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파급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지는 단호하다. 지난 10월 7일에 '열린사용자위원회'를 출범시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포털에 대해 갖는 우려를 최소화시키고 가급적이면 포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포털 역시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적극적 노력 필요해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네이버 측이 언급한 내용 중 정정보도 코너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원 보도와 동일한 (신문이라 하면) 지면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정보도 코너를 마련해 그 곳에 정정보도를 올리는 것으로 언론중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원칙과 효과를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정보도가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개하는 기사의 사실 확인이나 크로스체크가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통신사나 언론사와 전제 계약을 맺어 기사를 받아 내보내는 지방언론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반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사를 전제하는 지방언론사 역시 전제하는 기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실의 진위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결국 기사를 공급한 측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포털의 문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포털도 사실을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은, 문제가 된 기사의 취재원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측을 채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채근해 사실 확인 여부를 파악하고 사실 확인 결과 기사가 잘못 되었다라고 하면 언론사가 수정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포털에서 바로 정정보도를 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 부분은 단순히 포털만을 두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언론사도 함께 모여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사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언론사 내부의 결정을 통해 닷컴사를 설립, 뉴스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사 저작권을 가진 언론사는 닷컴사 측에 판매하는 기사에 대한 처분권한을 모두 넘겨주고 포털과 뉴스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닷컴사가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닷컴)은 아

무런 권한이 없고 실제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가 모든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피해구제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것이 현재 업계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런 관행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김규철(충북일보 사회부 차장) :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기사를 생산하면 이를 소속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것을 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춰 왔다. 하지만 최근 문화관광부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별도의 기사를 채용해 취재 보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닷컴사에 있는 기자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기사 중에 좋은 기사는 거꾸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별도로 보고 두 군데 모두와 계약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김강덕(대전중재부 중재위원) : 포털사이트가 과연 언론중재법의 대상이나 아니냐하는 논란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도 언론이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도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포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를 모른척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포털 측이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구제해주는 용기를 가져주었으면 한다.

박해옥(서울신문 뉴미디어국 부국장) : 현재 포털들은 뉴스공급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등 상당히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현재 네이

버를 예로 들면 서울신문은 네이버에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네이버 메인화면의 기사 섹션에 서울신문 기사가 있을 경우, 이를 클릭하면 서울신문 기사가 뜨는 방식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일명 '배꼽박스' 형태의 뉴스박스를 만들어 그 안에 각 언론사별로 사용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각 언론사별로 제공된 마당에서 해당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런데 과연 그 포털, 예를 들어 네이버에 게재된 서울신문 기사를 포털에 게재된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즉 (현재 논의되는 이야기대로 한다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언론사별 뉴스 박스 중 서울신문 뉴스 박스에 들어가 기사를 클릭하게 되면 서울신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기사가 네이버의 신문기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뉴스 소비처를 네이버 등 포털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편집·배포권 문제 역시, 각 뉴스 박스의 개별 언론사 코너 안에 있는 기사의 편집을 각 언론사가 직접 그 마당에 들어가 하게 되면 편집권은 개별 언론사에게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뉴스 박스 공간을 제공한 네이버 측에서는 항변의 논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럴 때 편집·배포권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또 네이버가 제공한 마당에서 편집된 서울신문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이 달릴 경우 그 댓글 마당이 네이버라고 봐야 하는 건지 서울신문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네이버에서 제공한 뉴스 박스 안에 각 언론사가 편집한 기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됨으로)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제 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해본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언론피해구제 제도 마련 필요해

무조건적으로 포털을 언론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 져야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음 역시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뉴스공급방식 변화의 문제, 거기에 따른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웃 링크' 방식을 도입하려는 얘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업계나 언론사 측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그 방식의 도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은 인정한다. 만약 구글이 뉴스를 제공하는 방식처럼 국내 포털사이트도 뉴스 공급 방식을 달리 한다면 뉴스 소비자가 포털인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해옥(서울신문 뉴미디어국 부국장)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이버가 뉴스 박스 안에 개별 언론사가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변화를 추진한다면(물론 일부 언론사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쩔 수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때문에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구창훈(KBS 지역/법무팀 변호사) : 정정보도, 반론보도는 고의·과실, 즉 귀책사유가 필요 없는 것이므로 이 둘과 손해배상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경우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털이 책임은 없지만 피해를 확대시키는데 있어 일정한 매개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구제 입장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당위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자면 발표자는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를 배제하고 포털에 단독으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포털사이트가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어렵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면 어차피 해당 언론사 역시 포털과 마찬가지로 정정이나 반론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하므로 자칫 이중의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를 직접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포털이나 해당 언론사를 피해자가 선택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문제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해서 승소를 했는데 아직 피해 구제 가능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를 했을 경우, 포털사이트로부터 얻은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포털사이트는 정보력이 약하고 입증방법이 적어 입증 책임 문제에서 피해를 보지만 해당 언론사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간의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한 결과가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포털만을 단독 대상으로 삼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고려해봐야 한다.

**포털만을 단독 대상으로 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논란의 소지 있어**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라는 귀책사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서울남부지법의 '전여욱 대변인' 사건 판결을 보면 "포털사이트에게도 기사가 사실 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의무가 있다"는 언급이 있는데 사실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일반 언론사처럼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말해 오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즉 최대한 빨리 주의 의무를 기울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은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서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포털사와 언론사 따로따로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같은 기사임에도 입증 책임의 문제로 포털과 언론사가 다른 판결을 받는다면 부당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소송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송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같은 의무를 지는 자이지만 다른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소송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선택권

을 주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포털에 대해 정정보도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민법 764조에 보면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조항에 따르면 포털사가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사인지는 아닌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털이 언론사인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민법 764조를 본다면 그것을 조금 더 변형 발전시키면 정정보도 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포털의 경우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더욱 필요해**

포털이 오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지만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를 사이트에 올리고 그 기사를 방치해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오보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고의·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일반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쟁점이 됐던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게시판 관리자의 주의 의무 문제) 판결이 있다. 이 판결을 보면 청도군청 홈페이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포털의 경우에는 더욱더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구창훈(KBS 지역/법무팀 변호사) : 주의 의무 위반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올라온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포털사이트도 처음에는 오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가 오보라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야 비로소 오보임을 알 수 있고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 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임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안재형(SBS 정책팀/변호사) : 포털을 굳이 언론사로 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포털에 기사 게재로 인한 책임이 있느냐 여부와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포털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에 대한 피해구제를 과연 일반불법행위로서 법원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려면 포털이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언론이어야 하는데 현행 언론중재법에서는 포털을 언론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발생한다고 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굳이 포털을 언론으로 보지 않더라도 '유사 언론' 또는 '방송사나 언론사로부터 영리적으로 기사를 받아 게재한 자' 등으로 정의해 입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양재규 변호사(발표자) : 발제문은 포털이 언론중재법 안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전개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좀 더 세부적인 문제인데 인터넷 신문의 규정

을 확장시켜서 기사를 매개하는 행위까지 인터넷 신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노웅래 의원 안처럼 새로운 개념으로 언론을 정의해 포털을 넣을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든 괜찮지만 일단 법원 절차로 하면 피해구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편한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당사자 권리구제에 훨씬 유용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접근했다.

윤태석(네이버 미디어서비스팀 차장) : 피해 접수 사례 등을 볼 때 피해를 받고 있으니 우선 해당 기사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 기사를 내리려면 해당 언론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받고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상 걸린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피해를 주는 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네이버가 노웅래 의원 측의 발의안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던 것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우선 포털이 해당 기사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사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 네이버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고 언론중재법 상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된다면 당연히 따를 생각이 다.

포털에서의 피해구제 핵심은 문제의 보도가 유포되는 것을 얼마만큼 막느냐에 있어

그런데 발표자는 현재의 조정 절차를 따라 피해구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노웅래 의원의 법안처럼 일단 문제 기사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난 후 피해 당사자가 언

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되 만일 문제가 없으면 블라인드를 해제하면 되고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정이 된다면 기사를 삭제하거나 처리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구제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조정 절차를 따르다면 피해구제에 있어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 기사는 그 동안 인터넷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피해자는 끊임없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피해구제의 핵심, 특히 포털에서의 피해구제 핵심은 유포되는 것을 얼마만큼 막느냐에 있다고 본다.

이수언(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 일반 개인의 경우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매체(오프라인)의 기사를 보고 신청하는 사례도 있지만 포털에 나온 기사를 보고 나서야 해당 오프라인 매체에 기사가 난 것을 알게 되고 이를 확인해 신청한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포털에 기사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척 우려되는 부분이다. 신문이 먼저 보도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포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포털이 신문 기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지만 전달하는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김창룡(사회자) : 포털 문제와 함께 오전 세션의 주제까지 논의를 넓혀 이야기해 달라.

장용택(영남일보 제1사회부장 겸 고충처리인) :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경우 언론사 데스크와 포털 담당자가 신속히 연락을 취해 포털사이트에서 신속하게 기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김창룡(사회자) :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졌고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한성일(중도일보 정치행정부 차장) : 무작위로 배포되면서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언론중재법에서 포털 뉴스에 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전재우(국민일보 뉴미디어부 차장) : 네이버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면을 바꾼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뉴스에 편집되는 기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보통 '파급력'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검색해서 보는 기사의 파급력보다 포털사에서 편집해 놓은 기사의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포털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김영서(세계일보 심의위원) : 신문윤리위원회에서만 음란물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를 심의, 시정권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최근 음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일보의 '강안남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한 적이 있는가?

위원장 :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문화일보의 '강안남자'에 대해 심의를 하거나 시정권고를 한 적이 없다. 언론 보도와 무관한 소설 내용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만큼 그에 비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석민(매일신문 문화부 차장) : 포털은 함부로 편집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사 내용이 똑같더라도 제목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포털이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면 포털은 편집권한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되고 편집권한을 행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포털과 피해자, 원 기사를 쓴 언론사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작동되도록 애써야 한다.

포털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의 구제 측면에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를 악용해 오히려 포털 기사의 비판적 기능을 억압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양정웅(MBC 법무저작권부) : 오프라인 매체에서 뉴스 공급을 받았다하더라도 노출여부는 포털에 권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절차 부분에 있어서 언론사로부터 확인을 하고 언론사의 허락이 없는 한 내릴 수 없다는 식으로 언론사와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최근 모 재벌과 유명 탤런트의 결혼 보도의 경우는 다른 보도에 비해 신속하게 기사가 내려졌는데, 어떤 내부 절차에 따라 것처럼 신속하게 기사가 내려졌는지 궁금하다.

윤태석(네이버 미디어서비스팀 차장) : 기사를 내리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 측면도 있

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과 같은 속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계약서상으로는 블라인드 처리 조항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문제가 없는 기사임에도 포털이 언론사 확인 없이 마음대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거나 삭제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이다. 단 한 건의 기사도 공급자의 요청 없이 삭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포털 마음대로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삭제하지 못한다.

재벌과 유명 연예인과 관련한 부분은 관련 기사의 댓글이 엄청나게 붙었는데 댓글 자체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댓글을 올린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훼손 등이 발생하는 등 기사와 상관없이 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고 그러한 댓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등 더 이상 기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내리게 됐다.

이수연(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 선정적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주길 바란다.

위원장 :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의 엄청난 파괴력을 생각할 때 포털도 언론중재법의 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미 공론화가 됐으며 그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잘 귀담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잘 조합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최종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있는 조화를 추구하는것

시정권고에 대해 간단히 다시 언급해보고자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어떤 선에서 조화롭고 균형있게 추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자체 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권고하는, 법적 강제력은 전혀 없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권고 제도의 범위를 신문 윤리적 차원으로까지 넓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근거로 엄밀하게 세워진 기준 위에서 자체심의를 하고 있다. 한편 새 법 시행과 함께 제3자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 중에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무척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제3자 신청 자체도 많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단 4건만이 처리됐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제3자 신청 역시 심의 권고 기준에 정확히 해당되는

케이스여야 한다는 원칙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정권고의 역사가 20여 년 정도 된다. 시정권고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엄밀히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시정권고가 비록 권고적 효력을 가졌을 뿐이지만 언론사에 의해 단 한 건도 거부되거나 이의 신청이 없었고 언론사 스스로 내부 점검을 하는 계기로 작용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데 조금은 보탬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정권고 제도는 아주 엄밀한 기준 하에 진행할 것이다. 시정권고결과 공표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이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공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

장시간 의견 개진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독일의 언론관계법 및 언론피해 구제 제도

나 낙 균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1. 서론 : 독일 언론관계법의 의미

독일의 언론관계법은 언론법, 방송법, 영상법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규정한 미디어법학의 한 분야로서 연구되어 왔다. 미디어법학은 과거에는 개별 매체의 특성에 따른 법체계로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단일한 미디어법체계로서 매체 전반에 통용되는 논의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단일한 미디어법 영역의 형성은, 전송기술이나 인쇄매체, 전자매체를 구분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매체의 발달과 사용방식의 변화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유럽미디어통합법이 수용자에 대한 미디어의 서비스 성격을 강조한 이래로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법체계로서의 공통성이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일한 미디어법체제의 형성에 대한 동인으로는, 첫째, 다양한 매체의 전송기술이 더 이상 객관적인 법률 규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둘째, 민영방송을 허가하는 이원적 방송시스템으로 신문시장과 차별화 되었던 공·민영 구분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 이종기업인 신문과 방송의 통합 내지 융합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셋째, 유럽미디

어통합법이 커뮤니케이션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시장경쟁원칙을 도입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방송활동을 독일 국내법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됨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법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범질서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언론관계법은 독일의 미디어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나, 언론의 개념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일컫는 광의의 언론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기존의 신문 등 인쇄매체를 일컫는 협의의 언론개념으로서 이해된다. 이 글의 연구목적은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미디어의 보도행위와 인격권의 보호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 발생시 그 민법적 구제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논의함으로써 언론관계법의 구조와 그 법규정의 세부적 의미를 짚어 보는데 있다.

2. 독일 언론관계법의 구조와 법원

1) 언론의 공익적 임무

매스미디어는 독일의 기본법 제5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접근 가능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인 정보의 자유(Informationsfreiheit)를 실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일반 대중에게 경제와 정치 등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생활 영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시킴으로써 의견 형성의 기능을 하는데, 실제로 일반 대중에게는 정보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및 정보추구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매스미디어는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¹⁾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독일 연방주의 언론법(Landespressegesetze)들에서는 이러한 공익적 성격에 기초해 신문과 방송에 대한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주의 미디어법, 연방주간의 방송국가조약 및 방송사 규정들도 동일한 내용의 공익적 규정을 담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 언론의 특별한 위치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민주주의 국가 체계에 있어서 자유를 구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으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 동시에 매스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²⁾ 이는 1961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언론과 방송은 “없어서는 안 될 현대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형성”하는 매체라는 것이다.³⁾

2) 언론관계법의 필요성

독일의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보자유(Informationsfreiheit)의 기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반법 또는 미디어법 차원의 규정들이 필요한데, 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 보장(§§4, 25 LPG)과 명예훼손의 경우에 여론의 정당한 관심대변(Interessenswahrnehmungs-recht)의 보장(§193 StGB), 기업경영권(§118 BetrVG), 언론과 방송 종사자의 증인보호권과 형사담당기관의 수색 및 압류권한의 제한 등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자유 실현을 보장하는 중심적인 법규정이다.

언론관계법은 국가의 압력과 미디어 조직의 권력화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있다. 송신자가 전달내용과 경향을 단독으로 결정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정보의 자유 및 의견형성에 미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과 위험성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특히 언론과 방송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매체로서 국가의 발전 및 시대적 사건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삶과 여가시간 영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⁴⁾

현대사회에서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는 시민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형성에 기여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와 경제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⁵⁾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매스미디어를 의견형성을 위한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의견형성의 요소로 간주하며, 정치·사회적 삶은

1) BVerfGE 12, 113, 125; 20, 205 ff., 50, 234, 239.

2) BVerfGE 12, 113, 125; 20, 205ff.; 50, 234, 239.

3) BVerfGE 12, 205, 260.

4) BVerfGE 35, 222; 57, 319; 59, 258.

5) BVerfGE 10, 121 ff.; 12, 162, 174 f.

물론이고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전체 삶의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의 수행자 및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매스미디어의 공공영역에 미치는 영향력과 일방성, 정보의 통제 가능성 때문에 언론의 신중성과 진실성, 매체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명시한 언론법 및 방송법 규정 등 매스 커뮤니케이션 기제에 대한 법적 질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갖는 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반의 구조와 효과상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언론관계법의 법원

언론관계법은 신문과 방송 등 매스미디어에 관한 법률체계의 통칭으로서 그 분류상 완결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언론관계법은 다수의 법률규정에 분산되어 있는 횡적인 법(Querschnittsmaterie) 체계로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규범들의 집단으로 파악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횡적인 체계로서 미디어법의 법원(Rechtsquelle)은 그 속성상 헌법(Verfassungsrecht)과 사법(Privatrecht), 공법(Oeffentliches Recht), 형법(Strafrecht)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는 미디어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로서 그 보장의 범위와 대상이 거론되고 있고, 사법은 인격권 및 명예의 보호와 기업 및 저작자의 보호 문제를 그리고 공법상 행정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형법은 국가안보와 청소년보호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법은 취재원 비닉권 내지 압수 및 수색금지 등과 관련해서 적용된다. 이와 같이 독

일의 미디어법은 횡적 법체계로서 헌법 및 연방법, 주법 등 일반법상에 근거를 갖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법(Voelkerrecht)과 유럽법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구성하는 판례법(Richterrecht)은 또한 언론관계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판결들은 중요 법원(法源)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체계화하고 있으므로, 특히, 미디어법의 상당부분은 판결에서 나타나는 법의 해석과 형성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 법을 이해할 수 없거나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외에도 직무규정(Standesregeln)은 또 다른 미디어법의 법원을 이루고 있는데, 직무규정은 비국가적인 자율규제 규범으로서, 의사, 변호사 또는 언론인과 같은 중요한 공공과제를 수행하는 직업에서 통용되는 규정이다. 이러한 직무규정에 의한 자율규제는 국가의 통제와 질서로부터 구속되지 않는지만 공공영역에서 직업의 위상과 명예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규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규제는 입법화 되거나 관습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법적 규범능력을 갖지는 못한다(§ 57 Abs. 1 StBerG, §§ 1, 18 WPO).

3.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1) 독일 기본법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독일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법질서는 특히 공법 중에서도 기본법의 헌법 규정에 의해서 형성된다. 특히 독일 기본법 제5조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6) BVerfGE 12, 205, 260; 57, 295, 320.

(Kommunikationsfreiheit)가 인정하는 개인적·제도적 보장은 전체적으로 미디어법 질서를 구성하는 헌법적 틀을 제공한다. 독일기본법 제5조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법질서에 핵심적인 의미를 주는 몇몇의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에는 자유로운 의견의 표현과 유포권, 정보자유권, 언론자유권 및 방송과 영상물을 통한 보도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본권은 기본법 제5조 2항의 조치에 따라 일반법의 규정들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외에도 독일 기본법 제5조 1항 3문의 사전검열금지, 동법 제5조 2항의 제한조건들에 대한 제한규정으로서, 기본권 중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기본권 제5조 2항의 제한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사전검열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없다.

독일기본법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적·공적인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한 것이다.⁷⁾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즉, 기본법 제8조의 집회의 자유, 제9조의 결사 및 통신의 자유, 제17조의 청원권 등)과 함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견 및 의사형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본법 제5조 1항의 기본권적 자유들은 공통된 보호 목적을 지니는데, 자유민주주의 질서⁸⁾의 요소로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것이다.

2) 독일 기본법상 언론의 자유

(1) 가장 강력한 현대 사회의 기본권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Pressefreiheit)는 같은 기본권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신문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문의 역할을 '포괄적인 정보의 제공과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의 전달 및 의견의 형성과 대변⁹⁾'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이 부여되는데, 이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실천적 개념으로 '공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검열 받지 않는, 자유로운 언론은 자유국가의 본질적 요소이며 현대 민주주의에서 필수불가결한 것¹⁰⁾'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주나 언론종사자의 의사표현 내지 정보의 자유를 구체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견 자유의 종속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제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¹¹⁾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갖는 정신적·경제적 권력으로 인해 언론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의 사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비판하는 기관으로 언론의 자유는 오늘날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기본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2) 언론의 공적 기능과 언론의 자유

독일의 기본법에서 언론은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대한 판결(Spiegel-Urteil)¹²⁾ 이래로 언론의

7) Degenhart, Bonner Kommentar zum GG, Art. 5 Abs. 1 und 2 (Zweitbearbeitung), Rn. 1, 4 ff.

8) Schmitt-Glaeser, AceR 113 (1988), S. 52 ff.

9) BVerfGE 52, 283, 286; 20, 162, 174 f.

10) BVerfGE 20, 162, 174; 52, 283, 266; 66, 116, 133.

11) BVerfGE 10, 121; 20, 162, 176 참조.

12) BVerfGE 20, 162, 174; BVerfGE 10, 121; 12, 205; 66, 116, 135; 80, 124, 133.

공적임무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언론자유를 명제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판결 이후로 언론의 자유는 방어권으로서 외에도 국가의 제도적 기능으로서 보장(institutionelle Funktionsgarantie)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적 임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필수 불가결한 대중매체의 언론기능의 수행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¹³⁾

그러나 언론이 갖는 공적 임무는 또한 조직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수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판결에서 언론기업은 사회적 공간에서 자유로이 형성되고 사경제적(privatwirtschaftlich) 원칙과 사법상(privatrechtlich)의 조직형태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경제적 구조로 인한 언론기업의 집중화로 인해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언론집중화 억제조치는 헌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보면 ‘국가는 자유언론에서 의견독점 현상이 조성되는 위협에 대처할 의무를 지닌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언론기업의 집중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¹⁴⁾ 또한 내적 언론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논의 역시 언론자유 제도적 보장이 갖는 의미와 범위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논의는 상호 간에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연방헌법재판소조차도 내적 언론자유 확립이 헌법에 합치되는가

에 대해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⁵⁾

4. 언론보도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1) 일반법규상 언론보도의 법률관계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관장하는 법질서는 특별히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위해 마련된 원칙과 규정들 그리고 특히, 민사법과 형사법 등과 같은 일반 법률의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과 규정들은 모두 독일기본법 제5조 2항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본법상 보장되는 커뮤니케이션 자유의 제한은 특히 일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실 매스미디어 보도의 표현들은 매스미디어 자체가 갖는 확산효과 때문에 일반법 상의 명예훼손과 청소년 보호 규정들을 침해하게 됨으로써 기본법 제5조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매스미디어에 의한 사실의 보도나 의견의 유포에 대해서는 보도 대상자의 인격권 또는 기업이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예방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러한 일반 법률 규정의 원칙들은 보도라든가 조사, 판매, 광고 등 매스미디어 기업들의 활동범위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데, 크게 개별적 인격권(besonderes Personenlichkeitsrecht)과 일반적 인격권(allgemeines Personenlichkeitsrecht)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 글에서는 특히 미디어

13) Loeffler/Ricker, Hadbuch des Presserechts, 2. Aufl. Beck, 1986, Kap. 3 Rn. 19 f. 참조. 언론에 부여된 공적 임무는 세 가지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데, ① 언론은 공공의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형성 과정을 이끌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의 시장(Meinungsmarkt)을 조성한다(커뮤니케이션 임무). ② 언론은 또한 수용자들에게 공시된 보도내용에 대해 수긍 또는 거부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독자적인 의견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의견형성의 임무). ③ 언론은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 유입되는 정치 메시지를 형성하도록 한다(정치화 기능).

14) BVerfGE 20, 162, 176.

15) BVerfGE 52, 283, 297.

어 보도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개별적 인격권의 하나인 명예의 보호와 일반적 인격권의 사적 영역에 대한 사실 주장 및 허구적 주장에 대해서 서술하도록 한다.

2) 명예의 보호

(1) 법적 토대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는 형법 제185조 이하 (§§ 185 ff. StGB)에 기초하는데, 동시에 민법 제 823조 2항 (§ 823 Abs. 2 BGB)의 불법행위에 의거 보호된다. 업무상의 손해를 주는 표현(Aeusserung)에 대한 명예훼손은 표현행위가 경쟁을 목적으로 일어난 경우로서 불공정거래방지법 제14조 (§ 14 UWG)에 의해 보호가 보장되는데, 경제적 경쟁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민법 제824조가 적용된다. 그리고 의도적인 관습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의 명예보호는 민법 제826조에 의해 보장된다.

명예보호규정은 주관적인 명예감(Ehrgefuehl)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명예를 보호한다.¹⁶⁾ 명예의 보호는 따라서 개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명예의 범위와는 상관없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정신박약자에게도 존재한다. 즉, 명예보호 대상자는 첫째로 살아 있는 자연인이며, 연령이나 정신 및 육체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없다. 명예보호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루어지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법 제1조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불가침의 보호위상을 부여

한다(내적 명예).¹⁷⁾ 그러나 명예보호는 또한 사회에서 획득한 개인의 명성에도 해당된다(외적 명예 혹은 경제 영역에서의 영업상의 명예).¹⁸⁾

사자의 명성훼손에 대해서는 물론 형법 제189조의 특별규정이 보호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명예보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적 단체는 법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통일된 의지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 개별적 회원의 명예보호와는 별도로 단체로서 명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모욕을 당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인적 집단의 회원은 또한 개별 회원의 이름이 정확히 거론되지 않더라도 집단적 표현을 통한 공격에 의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소위 집단모욕: Kollektivbeleidigung). 판례의 전제조건에 따르면 집단모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표현된 인적 집단이 일정한 특징으로 인해 일반인과 뚜렷이 구별되어 당사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별되고 일목요연하게 구분될 것을 요한다.¹⁹⁾ 또한 일반적이어서 개별적 인간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가치판단이 표현될 경우, 집단적 모욕은 성립되지 않는다.²⁰⁾

(2) 명예보호 규정의 체계와 개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모욕(Beleidigung), 비방(ueble Nachrede), 무고(Verleumdung) 세 가지의 기본적인 범죄구성요건(Grundtatbestand)으로 구분된다. 첫째, 형법 제185조의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공표행위를 통해 경시하거나, 경멸하게

16) Wenzel, Handbuch des Aeusserungsrechts, 3. Aufl., 1986, Rn. 5, 132.

17) Vgl. BGHSt 11, 67.

18) Wenzel, Handbuch des Aeusserungsrechts, 3. Aufl., 1986, Rn. 5, 136.

19) BGHSt 2, 38, 39; 11, 207, 208; 19, 235 .

20) BGH, NJW 1985, 1365, 1366.

나, 무시함으로써 침해하는 경우이다. 둘째, 누가 타인에 관한 사실의 주장(Tatsachenbehauptung)을 하거나 유포하고, 동시에 이러한 사실의 주장이 그 사람을 경멸스럽게 만들거나 여론상 인격을 실추시키는 데 적합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주장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형법 제186조의 비방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셋째, 누군가 양심에 반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은 형법 제187조의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범죄구성요건은 법체계상 구별되는데, 무고죄와 비방죄는 사실의 주장 또는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 반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평가의 공표행위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 밖에도 형법 제185조의 구성요건은 손상된 명예보호 대상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주장도 포함한다. 그러나 형법 제186조와 제187조의 구성요건은 위의 명예보호 대상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은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방죄와 무고죄의 구성요건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의 주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의미에서 비방죄 내지 무고죄는 명예 소유자에 관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주장이 제3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즉, 표현의 수신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명예보호 규정의 체계와 개념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법질서를 위해서 중요한데,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명예의 보호를 제한(Schranken)하는 것과 기본법 제5조 1항의 의견의 자유 내지 미디어의 자유와

의 비교형량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그 표현된 사실의 진실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 위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법규정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사람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한다. 이것은 기본권인 의견의 자유의 헌법적 적용을 반영한 것으로, 부정확한 정보는 헌법상 전제된 의견형성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²¹⁾ 보호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매스미디어 보도에 있어서 이러한 입증책임 규정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이 규정이 보도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하는 힘든 임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정당한 여론의 관심을 대변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형법 제193조의 보호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일의 판례를 보면 미디어 자유의 헌법상의 위상을 고려해 정당한 여론의 관심을 대변한 경우에는, 매스미디어에게 형법 제186조의 사실 주장의 진실 증명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면해 주었다.²²⁾ 진실에 대한 증명이 제시될지라도 모욕적인 주장의 형태로 제기될 경우에는 형법 제192조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소위 형식적 모욕).²³⁾ 따라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명예훼손죄가 구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다른 사람의 사실 주장을 유포함으로써 비방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매스미디어의 보도에 대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3)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1) 법적 토대

21) BVerfGE, NJW 1992, 1439 참조.

22) BGH, NJW 1987, 2225, 2227; OLG Frankfurt, NJW 1980, 597.

23) BGH, GRUR 1977, 801; NJW 1974, 1762 참조.

일반법의 규정에는 일반적인 인격권이 속하는데, 이러한 일반법은 독일의 기본법 제5조 2항에 의거해 동법 제5조 1항의 자유권을 제한한다. 일반적 인격권은 개별적 인격권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별적 인격권은 입법자에 의해 범죄구성요건이 설정된다. 일반적 인격권은 오늘날까지도 법문상의 명백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독일연방법원(BGH)의 판결은 인격권을 기본법 제1조 1항의 인간의 존엄성 및 동법 제2조 1항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보호로부터 이끌어 내어 법률을 형성하고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판결을 통해 민법 제823조 1항에 따라 기타의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또한 판례는 일반 인격권의 보호 범위를 확정적으로 종결짓는 것을 피하고 있는데, 일반적 인격권이 새로운 사안에 대해 포괄적 권리(Rahmenrecht) 또는 근원적 권리(Quellrecht)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또한 일반적 인격권의 소유자는 자연인으로서, 죽음과 함께 행동 및 인격발현의 개인적 특성은 잃지만²⁴⁾ 인간 존엄성을 특성으로 하는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목적은 죽음 뒤에도 존속한다고 본다. 특히 사자에 대한 추모와 그의 생애 사진은 죽음 뒤에도 보호된다.²⁵⁾ 단체(법인, 상사)는 단지 정해진 결성 목적과 기능의 범주 안에서만 인격권의 보호를 향유할 수 있다.²⁶⁾

(2) 보호 범위

다양한 인격영역 및 보호영역을 구분하는 작업은 일반적 인격권 침해의 전형적인 범죄구성요소를 만

들어 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전형적인 범죄 구성요소를 밝혀내는 것은 일반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판결에서 행해지는 비교형량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인격영역의 구분은 정당한 관심(ein berechtigtes Interesse)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개별 인격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동일하게 인정될 수는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의 사안이 친밀한 개인들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될수록 인격권의 보호는 더욱 강해지는데, Wenzel은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영역을 다섯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내밀영역(Intimsphaere)에서부터 비밀영역(Geheimnissphaere), 사적영역(Privatsphaere), 사회적 영역(Sozialspahre), 공적영역(Oeffentlichkeitsspahre)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⁷⁾ 이 중 사회적 영역과 공적영역은 개인의 공공에 할애한 인격발현 공간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 영역에 대한 보도는 그것이 진실되지 못한 사실의 주장이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비방이 아닌 한 보도될 수 있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5. 언론 보도상의 침해에 대한 민법상의 구제 제도

매스미디어 보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제한규정의 침해는 다양한 법률상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권리 피해자와 피청구권자의 이해관계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매스미디어와 중사자의

24) Loeffler/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1986, Kap. 42 Rn. 1.

25) BVerfGE 30, 173 - Mephisto.

26) BGH, NJW 1975, 1882.

27) Wenzel, Das Recht der Wort-und Bildberichterstattung, Dr. Otto Schmidt, 3. Aufl. 1986, Rn. 5,31 ff.

민법상 책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민법상 고려되어야 할 청구권의 종류와 청구권에 구속되는 대상자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1) 청구권의 종류

(1) 반론청구권

반론청구권은 매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법률적 반응의 보장으로서, 이는 미디어에 의해 공개된 자신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률소송의 특별한 기소요건(besondere Betroffenheit)이 된다. 만약 한 개인에게 미디어의 공개적 표현에 의해 개인적인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해당 매스미디어에게 자신이 작성한 반론을 첫 번째 보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의 특수성은, 이것이 순전히 형식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인데, 매스미디어에 의한 허위 사실의 주장 또는 명예훼손적 주장이 제시되었는지 그 여부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 그렇다.

반론권의 목적과 근원에 관한 문제제기는 반론권에 대한 개별적인 규정의 해석은 물론 총체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반론권은 본질적으로 매스미디어의 대중을 상대로 한 일방적 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개인들은, 공중에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인지, 무엇으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 보일 것인지, 자신을 보도

의 대상으로 공개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사적인 것을 알린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알린다면 얼마만큼 알릴 것인지 등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이 반론권은 보편적 인격권의 해석에 의해 형성·발전되어 왔는데, 이러한 인격권은 시민들이 헌법상의 언론 및 방송의 자유와 문제가 될 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권리이다. 따라서 미디어에 자신의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사람에게는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인 바, 지면의 동일한 곳, 동일한 토론장에서, 동일한 공개성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기회가 허용되어야 한다.²⁸⁾

또한 반론을 표시해줄 미디어의 책무는 개인에 대한 보호 외에도 포괄적인 정보에 대한 공중의 욕구가 반영된 것인데, 공중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판자 외에도 그 비판의 당사자가 발언하도록 하여야 한다.²⁹⁾ 이와 같이 반론청구권은 기본법 제5조가 보장하는 권리인 자유로운 의견표시권에 의해서도 형성되는데, 자유로운 의견표시권은 여론형성의 기능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2의 사실 주장의 게재를 요구할 청구권은 부분적으로 기본법 제5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 제5조를 반론청구권의 유일한 토대로 간주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기본법 제5조에서도 출될 수 있는 여론형성에 관여할 권리는 개개인에게 특정한 미디어조직에 대한 발표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론청구권은 개인의 직접적인 당사자 적격(persoenliche Betroffenheit)으로부터 결과하는 것이며 일차적으로 인격권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반론청구권을 보편적 인격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는 기본권과 같은 헌법적

28) BVerfG, NJW 1983, 1179 - NDR-Staatsvertrag.

29) BGH, NJW 1963, 151.

가치로 환원시킨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곳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원칙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정지청구권

정지청구권은 반론청구권과 함께 비판적인 미디어의 보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936조의 가치분(einstweilige Veruegung)조치는 피해당사자에게 권리침해가 예상될 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소위 예방적 정지청구권³⁰⁾), 미디어 보도에 대해서도 피해당사자가 예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권리를 침해하는 미디어 보도의 유포를 저지시킬 수 있다. 정지청구권은 성명권 및 소유권 침해 내지 점유방해(Besitzstoerung)와 같이 법률로 명백히 규정된 경우뿐만이 아니라, 민법 제12조, 제862조, 제1004조에 의해 인격권 및 기업권 침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지청구권은 피해당사자의 보호권리가 침해 예상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 권리의 경우 방해의 배제 청구권(negatorischer Anspruch)이기 때문에, 청구권은 가해자의 책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침해의 위법성에 종속된다. 권리의 발생요건은 주장되는 권리의 침해가 목전에 임박해 있어야 한다. 즉,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으로 중대한 위험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당장의 방해가 존재해야 하며, 반복되는 위험성이 있는 최초의 위험이어야 한다. 법원의 관례에 따르면 재발위험성은 이미 위법적

침해가 실행되었다면 통상적으로 인정이 되며, 관례에 따르면 표현증명(Anscheinsbeweise)의 의미에서 실제적 예상(tasaechliche Vermutung)을 통해 재발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³¹⁾

피청구권자가 침해의 중지 의사를 제출하는 경우 반복위험성은 사라지게 되는데, 피청구권자는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 제기된 표현을 더 이상 행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계약상의 처벌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재발 위험성은 매스미디어가 문제가 된 보도를 바로잡아 공개할 때 해소된다³²⁾고 본다.

(3) 정정청구권

정정청구권은 정지청구권처럼 민법 제12조, 제862조, 제1004조의 적용 하에 미디어 보도에 의한 권리 침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침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정은 문제된 매체의 표현을 앞으로는 중지하겠다는 약속이나 피해자의 반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³³⁾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정정청구권에 의거해 자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공표된 허위 사실의 주장을 정정보도(berichtigende Klarstellung)의 방법으로 다시 제거해야 한다.

정정청구권이 비사실적 주장으로 제한되는 것은 기본법 제5조 1항의 의견의 자유 보호에서 출발하는데, 이에 따르면 누구도 표현된 의사를 수정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³⁴⁾ 또한 그 누구도 허위 사실

30) Baur, JZ 1966, S. 381 f. 참조.

31) BGH, NJW 1987, 2227.

32) OLG Karlsruhe, AfP 1989, 191.

33) Soehring, Das Recht der Journalistischen Praxis, Schaeffer, 1990, Rn. 22, 57.

34) BGH, NJW 1982, 2246.

을 수용하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으므로 정정청구권은 전제조건으로서 문제가 된 미디어 표현의 비진실성이 청구권자에 의해 밝혀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증되어야 한다.³⁵⁾ 정정청구권은 또한 문제가 된 표현의 비진실성 외에도 인격권 또는 기업권의 침해와 같은 민법 제1004조에 명시된 가치척도에 따르는 권리의 침해를 전제하고 있다.

피해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허위 사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권의 행사를 통해 방어할 수 있으며, 정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권리 침해를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형식³⁶⁾ 면에서 논란이 되는 정정이 가해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오랜 시간이 흘러 정정요구에 대한 이해가 소멸된 때에는, 정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애매하여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4) 손해배상 및 반환청구권

민법 제823조의 위법적 유책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배상은 민법 제249조 이하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질적 손해가 된다. 그리고 민법 제847조의 위자료청구권이 고려될 수 있는데, 소위 헤렌라이터(Herrenreiter)판결³⁷⁾로부터 유래하여 이후 연방법원의 판례로 굳어진 두 가지의 제한조건이 고려된다. 첫째, 심각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다른

청구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어야 한다.

또한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 민법 제812조에 따른 이득반환권의 형태에서 지불청구권이 고려될 수 있는데, 지불청구권은 미디어 보도와 관련해 특히 불법적인 초상의 공개 또는 광고목적에 의한 성명의 언급 등은 의미를 갖는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디어 공개는 성명권의 지시기능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며 또는 민법 제812조 1항 1문의 침해상황의 원칙에 따라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성명권이나 초상권의 침해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변상되어야 한다.³⁸⁾

2) 청구권의 대상

(1) 언론기업

언론기업 즉, 출판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는 미디어 보도에 대한 민법상의 문제에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은 반론권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법규정에 기인하며, 민법 제1004조에 근거하는 정지 및 정정청구권의 경우에 청구권은 침해자에게 제기되며,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823조, 제831조로부터 발생한다.³⁹⁾ 침해자는 책임과는 상관없이 침해를 야기했거나 그 태도가 침해를 예상케 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위법적 주장을 유포하는 신문출판사나 방송사는 가해자가 되는데, 문제된 표현이 제3자에 의해 유래된 것이나 매스미디어에 의해 유포된다면

35) BGH, NJW 1976, 1198.

36) Loeffler/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1986, Kap. 44 Rn. 28.

37) BGHZ 26, 349.

38) BGH, NJW 1979, 2205.

39) Soehring, Das Recht der journalistischen Praxis, 1990, Rn. 21.1.

가해자가 된다. 그러나 매스미디어가 문제된 표현으로부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거리를 유지한다면 그렇지 아니하다.

언론기업은 면책가능성(Entlastungsmoeglichkeit)을 갖고 있지 못한데, 신문사와 방송사 등은 “사건의 주책임자(Herr des Geschehens)”로 간주된다. 신문사나 방송사 등 법인에 관한 경우, 이들은 자신들의 기구(Organe)나 종사자를 통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민법 제31조, 제831조의 귀책원칙(Zurechnungsgrundsuetzen)에 따라 책임은 이들에게 귀속된다. 특히 민법 제831조 1항의 무과실규정(Exkulpationsregelung)에 따른 면책 가능성은 없는데, 이는 언론기업에게 발표된 전체의 기사에 대해 내용상의 정확성과 법적 안전성을 검사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판례는 신문업자가 제3자 또는 종사자에게 검사임무를 위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것은 결코 면책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검사임무를 위임 받은 자는 민법 제30조, 제31조 상의 기관의 지위(Organstellung)를 가지게 됨으로 신문업자는 면책 가능성 없이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고 또는 검사임무 수탁자에게 기관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결과에 있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하자 조직의 책임의제: Fiktion-shaftung fuer mangelnde Organisation).⁴⁰⁾

(2) 언론종사자

언론기업과 더불어 언론종사자도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 침해를 하는 언론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진다.⁴¹⁾ 이것이 편집장에게 의미하는 것은, 편집장이 매체의 언론행위에 직접 개인적으로 참여하였거나 또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종사자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⁴²⁾ 출판정보를 담은 간기(Impressum)나 방송에 대한 책임자의 소개에 의해 거명된 책임편집자는 통상 개인적으로 공시물의 발행에 참여하게 되는데, 판례는 이러한 경우 책임편집자로 거명되었으므로 당연히 신문법에 명시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공시물이 처벌받을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는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인정하고 있다.⁴³⁾ 편집장으로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작가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정지청구권의 채무자, 정정청구권의 채무자, 손해배상청구권의 채무자 상호간의 관계 및 이들의 청구권자에 대한 관계는 일반적 원칙에 따르게 된다.⁴⁴⁾ □

40) BGH, NJW 1980, 2810, 2811.

41) Loeffler, Presserecht, Kommentar, 3. Aufl., Verlag C.H. Beck, 1983, Bd. I, § 6 Rn. 77 ff.

42) Wenzel, Handbuch des Aeusserungsrechts, 3. Aufl., 1986, Rn. 14.60 참조.

43) BGH, NJW 1977, 626, 627.

44) Wenzel, Handbuch des Aeusserungsrechts, 3. Aufl., 1986, Rn. 12.57, 14.63 ff.

인격권에 관한 2006년 판결례

이 승 한
서울고등법원 판사

I. 서 설

인격권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리키며, 정신적 자유의 권리는 명예, 신용, 정조, 성명, 초상, 학문이나 예술에 의한 창작, 사생활 등의 보호를 포함한다”고 설명되지만,¹⁾ 주로 명예,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등 정신적 영역에 관련되는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²⁾

종래 인격권에 관해서는 법률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조항,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제18조의 통신비밀 조항 등 헌법조항을 근거로 학설 및 판례에 의하여 구체적인 인격권의 유형이 정립되어 왔는데, 2005. 1. 27. 제정(2005. 7. 28.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법률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인격권의 구체적 유형을 명시하고 정의하는 한편, 제5조 제2항에서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인격권 침해에 공통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인격권 정의 조항 및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이 언론중재법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현대 사회에서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가장 빈발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일 뿐, 언론에 의한 침

1) 박윤직(2005).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p.100.

2) 전원열(2004).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비교. 『민사법연구 제13집』 제2호, p. 69.

해의 경우에만 그와 같은 광범위한 인격권을 보장하고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격권은 언론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기업 또는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고, 따라서 언론중재법의 인격권 정의 조항 및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은 언론 외의 국가기관이나 기업 또는 사인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언론중재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정의 조항 및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을 신실한 취지를 되새겨 보면서, 2006년에 선고된 인격권 침해(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정하지 않는다)에 관련된 흥미로운 몇몇 판결들(대법원 및 하급심)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³⁾

II.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

1. 일반론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명예훼손죄에 특유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명예훼손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이 없으나, 위 형법 규정을 유추하

여 사안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서의 상당성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는 데 학설·판례가 일치되어 있는바, 형사·민사사건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명예훼손소송은 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준부가 중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그 외의 형법상 일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법성조각사유⁴⁾가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었다.⁵⁾

그러나 신설된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이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사회상규 및 피해자의 동의를 위법성조각사유로 거시(다만, 위 두 가지 사유를 중복적 요건으로 구성하고 있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상 필요에 의한 공적 관심사까지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⁶⁾하는 등 명예훼손을 포함한 인격권 전반에 관하여 그 침해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널리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위 조항이 그 외의 일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제한하는 취지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또는 민법상의 일반 위법성조각사유는 당연히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일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아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할 것인데, 최근에 명예훼손

3) 2005년도에 선고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판결례에 관해서는 한위수(2006, 봄), 2005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p. 46 이하 참조.

4) 형법은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제22조(긴급피난), 제23조(자구행위), 제24조(피해자의 승낙)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법은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만을 두고 있으나, 정당행위, 이익형량 등도 위법성조각사유로 거론되고 있다. 이은영(2005), 「채권각론」(개정판), 서울: 박영사, p. 602.

5) 모욕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6) 피해자의 동의나 공적 관심사는 종래 명예훼손 이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로 거론되어 오던 것이다. 위 규정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적용되던 위법성조각사유를 프라이버시 이외의 인격권에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내지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일반 위법성조각사유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실시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2. 사기업(보험회사)에 의한 침해와 이익형량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사생활을 촬영당한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주장한 사안⁷⁾에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피고들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들에게는 위 침해행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 즉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 허위 또는 과장된 청구를 밝혀내어야 할 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이익,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 이익 등이 있고, 이는 원고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충돌하는 이익이 된다. 이처럼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

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침해법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보험회사의 사적(私的)이익과 피해자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법익형량에 의하여 위법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그 입증책임은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서 언급된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미국에서 ‘홀로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alone)’로 발전되어 온 프라이버시와 유사한 개념⁸⁾이다. 미국에서는 Prosser 교수의 분류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행위 유형을 ① 사적인 공간과 생활의 침범(intrusion), ② 사적 사실의 무단공표(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③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공표(false light invasion of privacy), ④ 성명이나 초상 등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것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the right of publicity or appropriation)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⁹⁾ 위 판결의 사안은 프라이버시

7)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 보험회사 직원이 원고들의 장애 정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아파트 주차장, 직장 주차장, 차량수리업소 마당, 원고의 어린이집 주변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사안이다.

8)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이나 성명권 등을 프라이버시에 포함시키는 견해와 프라이버시와는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9) 한위수(1999, 여름).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국내 판결의 동향. 『언론중재』, pp. 47 ~ 61.

침해의 첫 번째 유형인 intrusion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¹⁰⁾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촬영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사안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과연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인 intrusion은 정보의 내용이 아니라 그 정보가 수집된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¹¹⁾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부적절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그 촬영 방법의 부적절한 태양(미행에 의한 몰래 카메라 방식)을 적시한 후 이러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면책사유(우리나라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될 수 있다)에 관하여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legitimate public concern)나 피해자의 동의(승낙)를 가장 중요한 면책사유로 설명해 왔는바,¹²⁾ 이에 대하여 위 판례는 법익형량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거시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판결에서 인정된 법익형량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는 특히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침해법익)이 종래 인정되어 오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보호될 수 없는 사익(私益)¹³⁾일 경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타인의 사익(私益)이 충돌할 경우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상호 명예훼손 행위에서의 정당행위

서울고등법원 2004. 7. 20. 선고 2000나50208, 50215(반소) 판결은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원고(반소피고)와 의사인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상호 명예훼손 사안¹⁴⁾에서 “일방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특히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는 언론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신

10) 초상권에 관한 사안이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네 번째 유형인 appropri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appropriation은 통상 유명인인 타인의 성명 또는 초상 등을 허락 없이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성명·초상이 공개적으로 사용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보다는 오히려 광고출연에 대한 대가(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 또는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모델료 하락과 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적 사항에 대한 권리보다는 ‘공개에 관한, 유명함에 관한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으로 인정되고 있다. 전원열(2004), 앞의 논문, p.77.

11) 한위수(1999, 여름), 앞의 논문; 김경환(2006, 봄),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언론중재』, pp. 62~78.

12) 전원열(2004), 앞의 논문, p. 78 이하; 김경환(2006, 봄), 앞의 논문, p. 65;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도 피해자의 동의와 공적인 관심사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13) 위 사안에서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여 얻는 재산상 이익, 허위 또는 과장된 청구를 밝혀내어야 할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이익, 부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을 들고 있다.

14)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의료기기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진행되던 중에 피고가 먼저 “원고 회사는 기술력이 떨어짐에도 권력자의 비호, 특혜금융에 의해 급성장했고, 피고가 고소한 사건을 권력자의 압력을 통해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위층에 로비를 벌이며 뇌물을 전달했다”는 등의 제보를 하여 기사가 게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여러 의료기회사들과 분쟁을 일으킨 경력이 있으며, 상습적으로 트집잡기와 투서행위를 하는 자이고, 다른 고위층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원고에 대한 특혜의혹과 고위층 비호 의혹 등 근거 없는 진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반박 광고 등을 한 사안이다.

속하고도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타방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목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여타 다른 효과적이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다른 일방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더라도 타방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진실한 사실이나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에 기초한 반박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행한 대응행위는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 42609, 42616(반소) 판결은 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서 정당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명예훼손 나아가 인격권 침해 전반에 걸친 위법성조각사유의 범위를 형법 제310조 및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의 위법성조각사유 외의 일반 위법성조각사유로 확대해 나가는 데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4.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항소)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안기부 X-파일¹⁵⁾을 보도한 기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¹⁶⁾ 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에서는 아무런 위법성조각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는

형법상의 정당행위 조항 내지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통신의 비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몇 가지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되고, 따라서 기본권의 규범 조화적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형법상의 일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됨을 인정하고, 통신의 내용, 취득과정에 있어서 불법과의 연관성, 편집·보도에 있어서 수단·방법의 상당성, 기타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요소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그 보도가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그 대화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화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당사자 및 대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모두 공적인물이며 그 대화 내용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등에 관한 것이고 이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자료가 있는 이상, 그 정도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도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1725 판결(상고)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는 이상 형법 총칙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한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15) 안기부에서 대기업 간부와 언론사 사주 사이의 대선자금 제공 등에 관한 대화를 도청한 내용으로, 사인간 대화내용을 도청하였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16)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2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공개한 행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언론 보도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위법성조각 조항을 두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통신 제한 행위의 허용은 구체적·예외적으로 매우 엄격한 대상과 절차를 열거하며 사후적으로 국회에 의한 통제까지도 명시하고 있는 등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규정 전반을 검토하여 보면, 도청 내용 공개가 언론의 공적 사명에 기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려면, 일반적 정보원에 따른 언론 보도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원칙에 기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의 특수성상 그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선언한 후, 나아가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개인을 발가벗겨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자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부분,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그 양심을 독백하거나 서로 간에 공개의 공포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생활의 자유 내지는 통신비밀의 보호가, 이를 엿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관심 내지는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협이 야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신 비밀의 공개 누설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국가안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통신 비밀의 침

해에 대한 위법성조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 판결들은 통신 비밀이라는 인격권과 중대한 공공적 사안에 관한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권리가 위법수집정보라는 접점을 기준으로 충돌할 경우 통신 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반 위법성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가,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떤 기준 하에서 가능한가, 그 기준은 다른 인격권 침해와 달리 더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선험적인 가치가 큰 판결들인바, 이러한 논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언론사 상호간의 명예 훼손

언론사 상호 간의 명예훼손 소송은 2000년을 전후하여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언론사간 명예훼손소송에서 적용되어야 할 독특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었는데,¹⁷⁾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은 최초로 이에 관한 판시를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 판결은 방송사가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를 다루면서 특정 신문사가 언론사로서의 힘을 이용하여 썬 이자로 돈을 대출받은 의혹이 있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한 사안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17) 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소송 일반에 대해서는 배병일(2001, 겨울), 언론사간 매체비평과 소송의 한계, 『언론중재』, p. 4 이하;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례와 그 법리에 관해서는 한위수(2006, 봄), 앞의 논문, p. 51이하.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원심¹⁸⁾의 판단을 지지하였는바, 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적용되던 법리에 부가하여 언론사의 특수성을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언론사 상호간의 명예훼손적 사실의 보도에 있어서는 그 설시와 같은 언론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관한 보도에서 인정되는 언론의 자유보다 더 광범위한 언론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사의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언론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4가합30267 판결¹⁹⁾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 및 상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사의 신문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고 언론사 상호간의 소송이라는 특색을 고려하여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상고)은 이와 달리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언론사간 명예훼손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몰라도 손해배상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IV.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은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경찰관들이 고리사채 때문에 마카오까지 팔려가 윤락을 강요당하다가 국내로 돌아와 수사를 의뢰한 피해자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몸수색을 하고 참고인을 구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사채업자와 결탁하여 불성실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서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된

18) 서울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2나22153 판결.

19) 일간신문사가 진보논객의 강연 내용을 인용하여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태도 등을 비판한 사안이다.

다”고 판시하였다.

기존의 판결들이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될 수 없다는 법리를 판시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위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 판결이 언론의 공직자나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폭로성·음해성 보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V. 편집권 남용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7829 판결은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대통령 탄핵지지집회에서의 발언을 편집하여 보도한 사안²⁰⁾에서 “언론기관인 방송은 보도를 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언론기관이 특정 사실의 보도 및 이에 대한 논평을 하거나 방송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타인의 발언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 보도하는 경우 그 발언자의 진의 또는 그 발언자의

발언 의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최소한 그 발언자가 한 발언 중 앞뒤의 말을 생략하여 일반인들이 발언자의 발언의 의미를 정반대의 취지로 이해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위험성이 있도록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편집권 남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나29589 판결(확정)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방송 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당해 방송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므로,²¹⁾ 편집을 통해 발언자의 진의를 왜곡한 이상 명예훼손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VI.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언행의 보호범위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의 의원석에 앉아서 한 언행을 방송한 사안²²⁾에 대해서,

20) 원고 발언의 전체 취지는 대통령이 기업 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후 기업 대표가 자살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자질을 비판하면서 그 비교예로 영부인의 학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를 든 것일 뿐인데, 피고 방송사가 편집을 통하여 마치 원고가 직접적으로 영부인의 학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과 같이 보도한 사안이다.

2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22) 변호사인 원고(신청인)는 열린우리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전반기 2년간 국회 내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 및 정보위에 소속되어 있다가 후반기인 2006. 6경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법사위에 배정되었고, 이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의 의원석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이 법사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한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 및 발언(000 의원님, 000 운영위원장 찍어주지 마세요,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이 다 헛갈리잖아요, 나한테 법안에 대해서 얘기만

원고(신청인)는 위 방송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의 게재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사안의 쟁점은 ① 방송내용이 이미 변호사 휴업신고를 한 원고가 마치 변호사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 배정을 기피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의 촬영이 원고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③ 피고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대화의 비밀에 관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자 2006카합2018 결정(항고)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구분하지 않은 채 공공성, 공익목적,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항소)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구분하여 판단하면서, 명예훼손에 관하여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독설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 공격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닌 한 널리 허용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언론기관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위 방송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당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국회의원들의 법사위 등 비 인기 상임위 기피와 그로 인한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의 어려움 및 그

에 따른 일부 의원들의 불만을 보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고,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와 비밀녹음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의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²³⁾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면서 “원고는 현재 국회의원으로 그 행위, 인격에 대하여 공중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위치에 있는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 중 원고가 등장하는 장면은 원고가 국회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으로서 그 내용 또한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되고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는 공적 영역이라 할 것이지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과 대화가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방송 및 동영상의 보도내용, 보도경위 및 보도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상당한 방법에 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가처분신청사건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 11. 6. 자 2006라1020 결정(재항고)은 신청인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

해봐. 죽어버릴라니까. 등) 내용이 당시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있던 피고(피신청인) 방송사의 기자에 의해 촬영 및 녹음되어 방송되고 동영상으로 게재된 사안이다.

23) 이 표현은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후문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지 아니하면서도, 신청인의 대화가 '사적인 대화'이고 피신청인의 촬영 및 녹음은 '몰래 한 것'이라고 인정된 후, 피신청인의 이러한 촬영 및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대화의 비밀로서의 인격권도 포함된 의미라고 보인다)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대화의 비밀로서의 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제1심 결정 및 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이 사안은 명예훼손 부분보다는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회의원으로서의 직접적인 직무행위가 아닌) 언행이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에 관한 인격권으로서 얼마나 보호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더 큰 선험적 의의가 있는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가 국회의원이라는 점, 피고가 언론사라는 점, 장소가 국회 본회의장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의 대화가 사적인 것인가 공적인 것인가, 사적인 대화라면 그 대화가 공개된 것인가, 피고의 촬영행위가 몰래 한 것에 해당하는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조각 사유인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후문의 요건(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이 갖추어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인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언행에 대한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판례가 기대된다. □

200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신용정보(주) 리서치사업본부(책임연구원 석상호 팀장)에 의뢰해 최근 1년 여 간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했던 신청인,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에서는 ‘조사개요’, ‘조사 결과 요약’ 등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언론 조정·중재제도의 만족도 및 인지도 평가
- 언론 조정·중재제도 운용 활성화 방안 및 효율적인 홍보 방안 모색
- 상담 및 교육 등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위원회에 적합한 객관적 성과지표 개발
- 조직 및 업무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직 컨설팅 차원의 조사 수행

2. 조사 설계

- 조사대상
 - 최근 1년간(2005. 7. 28.~2006. 7. 27.)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인
 - 최근 1년간(2005. 7. 28.~2006. 7. 27.)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피신청인

- 최근 5개월간(2006. 5. 1.~2006. 9. 30.)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이용자
- 최근 2개월간(2006. 10. 8.~2006. 12. 8.)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수강자(일반인/언론인)
- 조사응답자
 - 신청인 : 193명
 - 피신청인 : 153명
 - 상담이용자 : 334명
 - 교육수강자 : 187명
- 조사방법
 - 신청인/피신청인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
 - 상담이용자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 교육수강자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006년 10월 23일~11월 24일
- 주관 및 수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신용정보(주) 리서치사업본부

II. 조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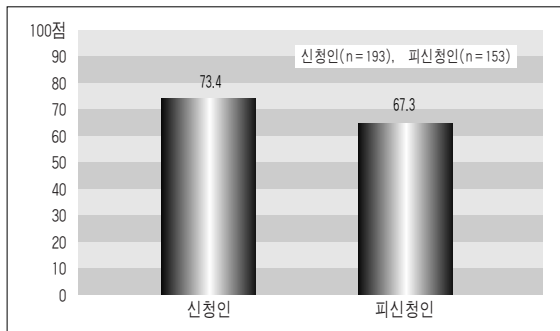
1. 신청인·피신청인 조사결과

1)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및 차원별 중요도/만족도

(1)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종합만족도를 산출하기 위해 문항을 각각의 차원(신청인 5개 차원, 피신청인 3개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차원별 평가점수(5점 척도, 5점 만점)에서 각각의 차원과 체감만족도(전반적 만족도)의 상관계수² 값을 이용하여 산출된 중요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한 결과, 신청인 193명의 종합만족도는 73.4점, 피신청인 153명의 종합만족도는 67.3점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의 종합만족도가 피신청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6.1점).

〈그림 1〉 조정(중재) 종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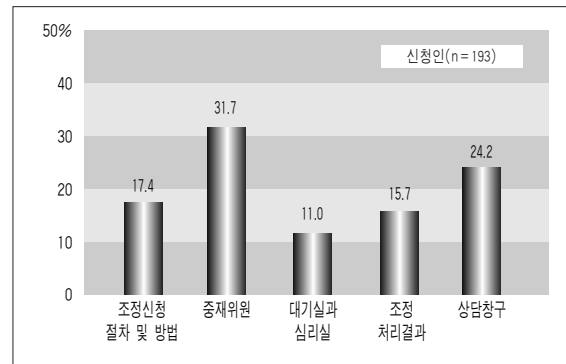


(2) 차원별 중요도

차원 중요도는 각 차원별 만족도 응답 점수(5점 만점)와 체감만족도(전반적 만족도) 응답 점수와의 상관관계 통계기법을 통해 상관계수를 구한 후, 상관계수²의 합에 대한 각 차원의 상관계수² 값의 비율로 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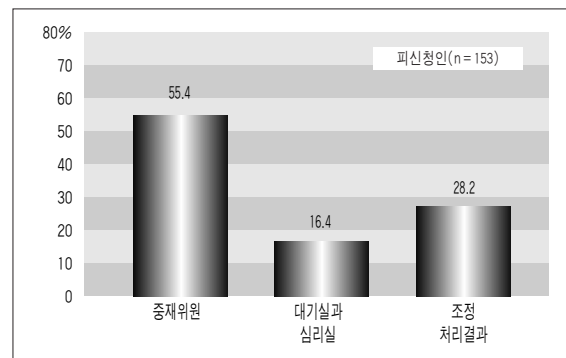
신청인의 차원별 중요도(가중치)를 살펴보면, 『중재위원』 차원(31.7%)과 『상담창구』 차원(24.2%)을 신청인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신청절차 및 방법』 차원은 17.4%, 『조정 처리결과』 차원은 15.7%,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은 11.0%로 나타났다.

〈그림 2〉 신청인 차원별 중요도(가중치)



피신청인의 차원별 중요도(가중치)를 살펴보면,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중재위원』 차원이 55.4%로 타 차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정 처리결과』 차원은 28.2%였고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은 1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 피신청인의 차원별 중요도(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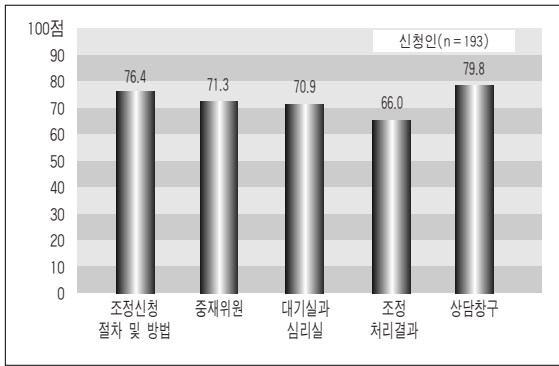
(3) 차원별 만족도

차원별 만족도는 각 차원별 만족도 응답 점수(5점

만점)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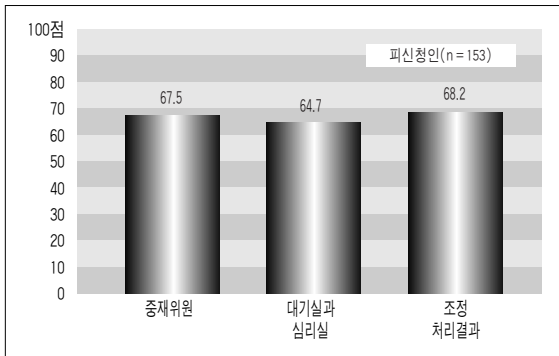
신청인의 각 차원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담창구』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79.8점, 『조정 신청절차 및 방법』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76.4점으로 타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재위원』 차원은 71.3점,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은 70.9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처리결과』 차원은 66.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 신청인 차원별 만족도



피신청인의 각 차원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 가운데 가장 낮았던 『조정 처리결과』 차원에 대한 만족도가 6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재위원』 차원에 대한 만족도는 67.5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피신청인 차원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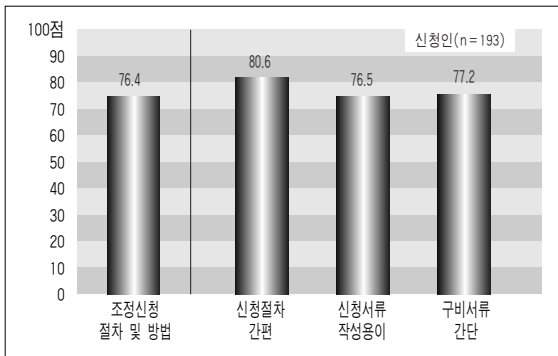


(4) 항목별 만족도

① 조정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인의 『조정 신청절차 및 방법』 차원과 관련된 각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100점 만점)는 76.4점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청절차 간편”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80.6점으로 가장 높았고, “구비서류 간단”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77.2점, “신청서류 작성 용이”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76.5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조정 신청절차 및 방법』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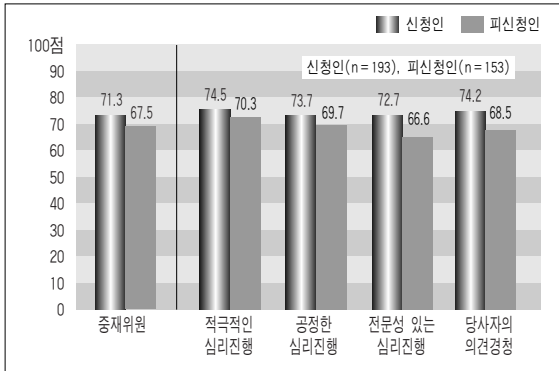
② 중재위원

『중재위원』 차원과 관련된 각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는 신청인이 71.3점, 피신청인이 67.5점으로 신청인의 중재위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적극적인 심리진행”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은 “적극적인 심리진행”에 대하여 74.5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어 “당사자의 의견 경청”에 대하여 74.2점, “공정한 심리진행” 73.7점, “전문성 있는 심리진행”에 대한 만족도가 72.7점 순이었다. 반면, 피신청인은 “적극적인 심리진행”(70.3점)에 대한 만족도에 이어 “공정한 심리진행”(69.7점),

“당사자의 의견 경청”(68.5점), “전문성 있는 심리 진행”(66.6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림 7〉 『중재위원』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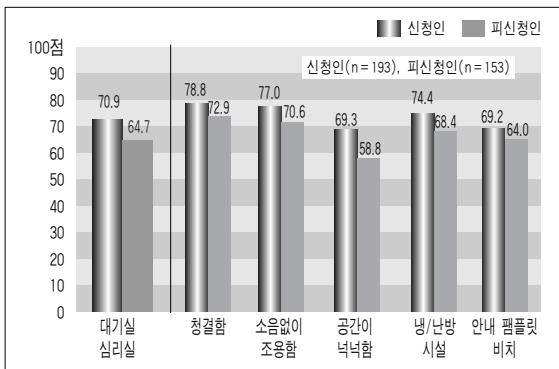


③ 대기실과 심리실

『대기실과 심리실』 차원과 관련된 각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는 신청인이 70.9점, 피신청인이 64.7점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청결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신청인 78.8점, 피신청인 7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이 넉넉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신청인 69.3점, 피신청인 58.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8〉 『대기실과 심리실』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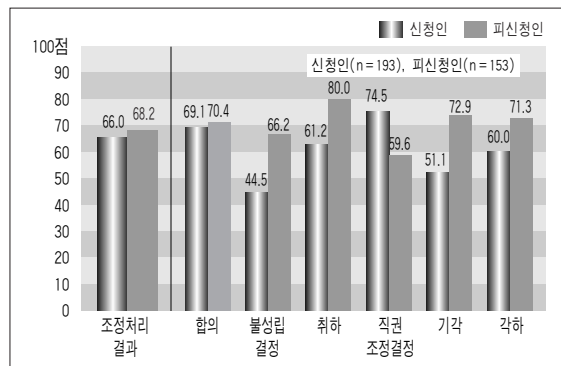


④ 조정 처리결과

『조정 처리결과』 차원과 관련된 각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100점 만점)는 신청인이 66.0점, 피신청인이 68.2점으로 조사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직권조정결정” 항목을 제외한 “합의”, “불성립 결정”, “취하”, “기각”, “각하” 항목의 만족도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신청인은 “취하”된 결과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80.0점)를 보인 반면, 신청인은 “직권조정결정”(74.5점)된 경우,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조정처리결과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림 9〉 『조정 처리결과』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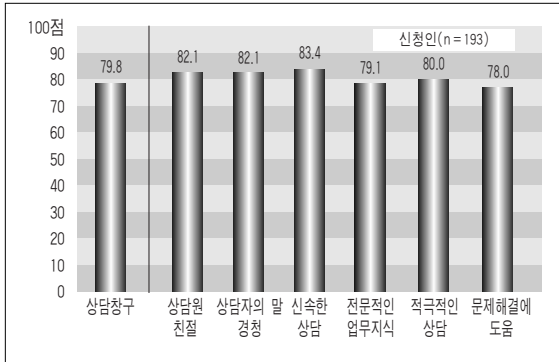
⑤ 상담창구

『상담창구』 차원과 관련된 신청인의 각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는 79.8점으로 5개 차원 만족도 중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속한 상담” 항목이 83.4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상담원 친절”과 “상담자의 말 경청” 항목도 각각 82.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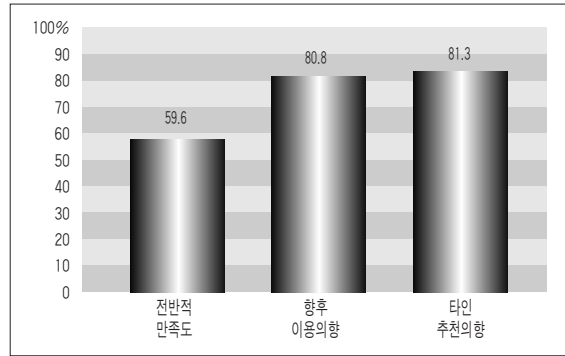
“문제 해결에 도움” 항목은 78.0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10〉 『상담창구』 항목별 만족도



11.4%(‘별로 권유할 의향이 없다’ 8.3%, ‘전혀 권유할 의향이 없다’ 3.1%)에 불과하였다.

〈그림 11〉 『언론중재위원회 지지도』(TOP 2%)¹⁾



2) 언론중재위원회 지지도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인 193명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TOP2%는 59.6%(‘매우 만족’ 9.3%, ‘만족’ 50.3%),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불만족’ 13.5%, ‘매우 불만족’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 향후 이용의향 TOP2%는 80.8%(‘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46.1%, ‘아마 이용할 것이다’ 34.7%)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고,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8%, ‘아마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조사되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인 193명의 타인 추천의향 TOP2%는 81.3%(‘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 44.0%,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권유하겠다’ 37.3%)이며, ‘권유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 언론중재위원회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먼저 인지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청인 193명 중 20.2%, 피신청인 153명 중 47.7%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한 피신청인은 없었으며, 신청인은 16.1%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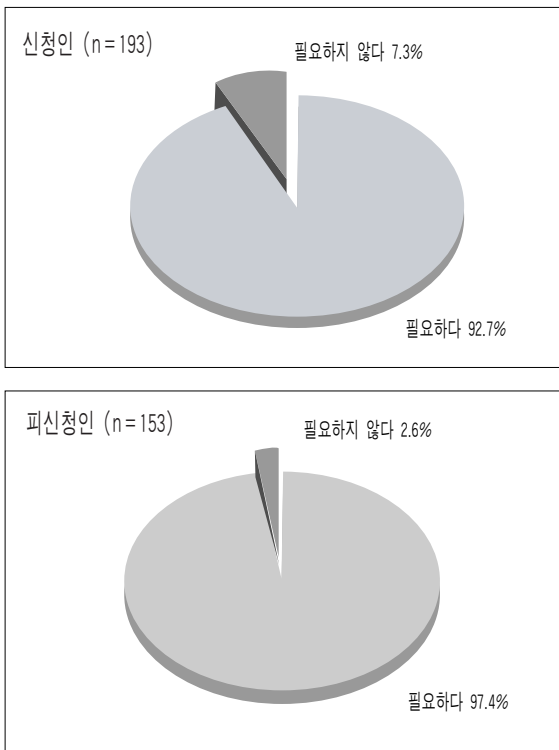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가장 빈번한 인지 경로는 36.3%를 차지한 ‘TV광고’와 24.4%를 차지한 ‘주위 사람들’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신문보도’가 23.8%, ‘방송보도’가 18.7%로 나타났다. 반면, 피신청인의 가장 빈번한 인지경로는 ‘신문보도’가 45.8%라는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로 ‘TV광고’가 29.4%, ‘기타’와 ‘신문광고’가 22.9%로 높게 나타났다.

1) 전반적 만족도 TOP 2 % : ‘매우 만족’ or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
 향후 이용의향 TOP 2 % : ‘반드시 이용’ or ‘아마 이용’이라고 응답한 비율
 타인 추천의향 TOP 2 % : ‘적극적 권유’ or ‘권유’라고 응답한 비율

4)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필요성 인식

언론보도 분쟁해결을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청인 193명 중 92.7%(179명), 피신청인 153명 중 97.4%(149명)로 중재위원회 필요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상대적으로 중재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언론중재위원회 필요성 여부



언론중재위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신청인의 82.1%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법원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45.3%), “언론사의 자율적인

피해구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3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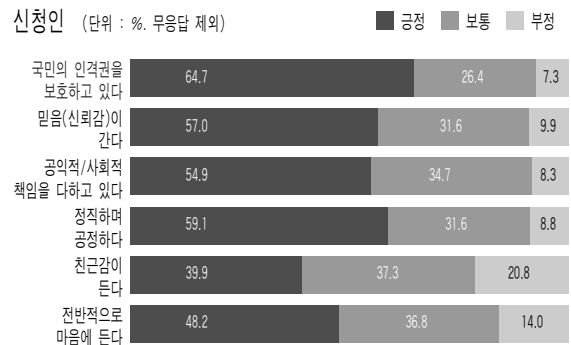
5)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및 이미지/선호도 변화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결과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에 대해 신청인의 64.7%, 피신청인의 71.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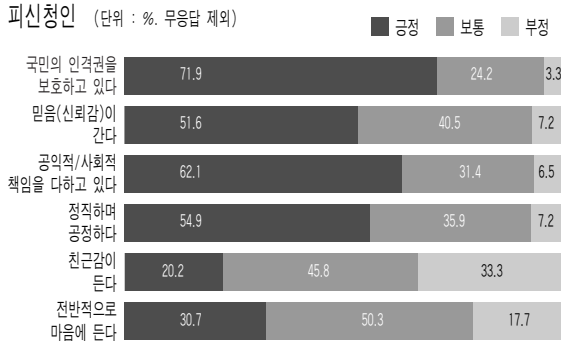
신청인의 경우, 위원회가 ‘정직하며 공정하다’(59.1%), ‘믿음(신뢰감)이 간다’(57.0%), ‘공익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54.9%) 순으로 위원회에 대한 이미지 공감율이 높았다. 반면, 피신청인의 경우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이미지에 이어 ‘공익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이미지에 대해 62.1%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정직하며 공정하다’(54.9%), ‘믿음(신뢰감)이 간다’ 순으로 위원회의 이미지가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 조정기구로서 “언론피해구제”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뚜렷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미지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3〉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피신청인 (단위 : %, 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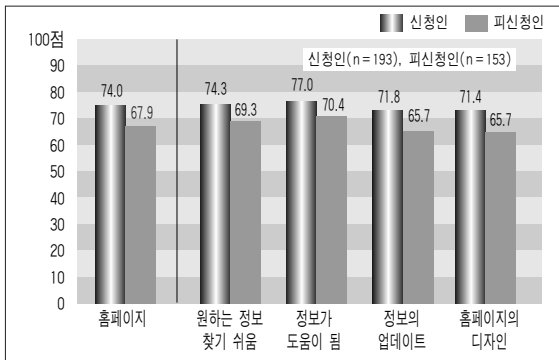


6)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경험 및 평가

193명의 신청인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유경험자는 56.5%(109명), 무경험자는 43.5%(8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53명의 피신청인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유경험자는 37.9%(58명), 무경험자는 62.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차원과 관련된 각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는 신청인 74.0점, 피신청인 67.9점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정보가 도움이 됨' 항목에서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만족도가 각각 77.0점, 7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4〉 『홈페이지』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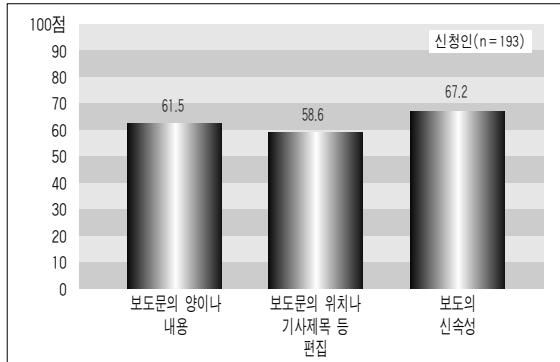


7) 신청인의 피해구제제도 평가 및 사후 안내 만족도

신청인 193명의 조정 신청 후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도의 신속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6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도문의 양이나 내용”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61.5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도문의 위치나 기사제목 등 편집”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58.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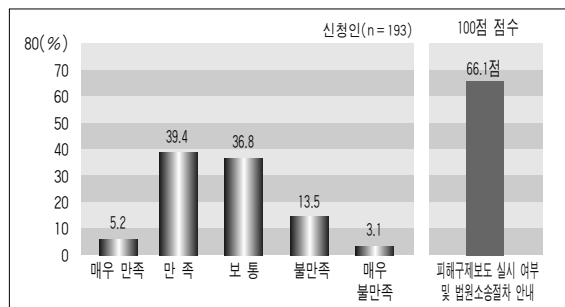
〈그림 15〉 『피해구제제도』 항목별 만족도



“심리 종결 후 피해구제제도 실시 여부 안내 및 법원 소송절차 안내”에 대하여 신청인 193명 중 189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44.6%(86명)가 ‘(매우) 만족’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36.8%(71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6.6%(32명)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100점 점수로 환산하면 “심리 종결 후 피해구제제도 실시 여부 안내 및 법원소송절차 안내”에 대한 만족도는 66.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피해구제제도 실시 여부 안내/법원소송절차 안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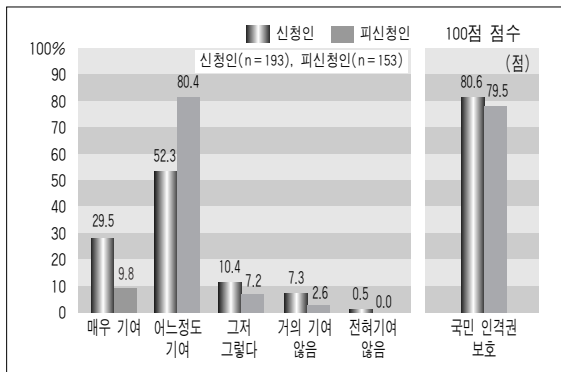
8) 피신청인의 심리참석 후 기사작성, 편집 태도의 변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 참석 후 기사 작성이나 편집 태도의 변화에 대하여, 피신청인 153명 중 152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중 84.3%(129명)가 '이전보다 신중하게 다룸', 15.0%(23명)가 '특별히 전과 달라지지 않음' 이라고 응답하였다.

9) 언론중재위원회의 국민 인격권 보호 기여도 및 사회적 공공성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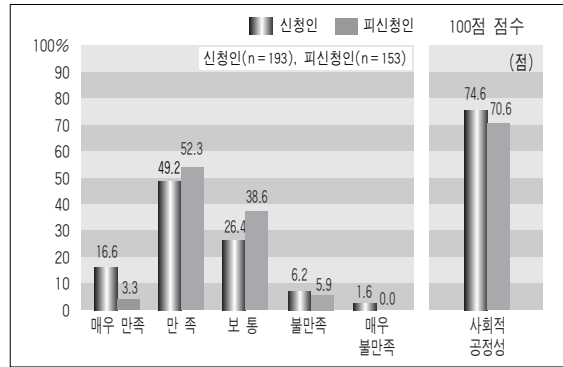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기능과 역할이 국민의 인격권 보호에 기여한 측면에 대하여, 신청인 193명 중 81.8%, 피신청인 153명 중 90.2%가 '(매우)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신청인의 경우에는 29.5%가 '매우 기여한다', 52.3%가 '기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9.8%가 '매우 기여한다', 80.4%가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7〉 국민인격권 보호 기여도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 등 공공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사회적 공공성 측면에 대하여, 신청인 193명 중 65.8%, 피신청인 153명 중 55.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8〉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공공성



10)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및 포털, 언론사닷컴 등의 조정대상 포함에 대한 태도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달라진 제도에 대한 평가에서 신청인 193명 중 38.3%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5.6%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긍정평가가 8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피신청인 153명의 경우, 1.3%만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1.6%였다(긍정평가율 52.9%). 신청인이 상대적으로 피신청인보다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경우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중재) 및 피해구제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율(89.2%)을 보였고, "손해배상청구 가능"(87.6%), "구술 및 전자우편신청 가능"(87.0%)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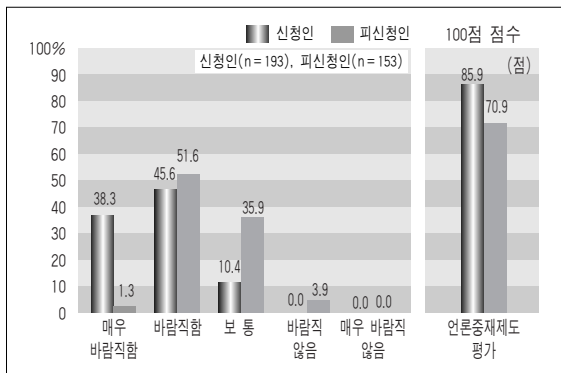
피신청인의 경우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중재) 및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 153명 중 79.1%로 높은 긍정적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 측면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5.3%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30.8%)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포털, 언론사닷컴에 대한 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신청인 44.0%, 피신청인 58.8%가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닷컴도 “조정신청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신청인의 44.6%, 피신청인의 32.7%는 “조정 신청은 물론, 기사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신청인 가운데 88.6%, 피신청인의 91.5%가 인터넷 포털이나 언론사닷컴이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의 기타 의견으로는, “언론매체와 포털사이트를 구분하였으면 한다”, “오보에 대한 사과 없이 삭제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림 19〉 달라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평가



11) 신청인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정정보도는 언론사가 자사의 언론보도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보도를 말한다. 반면, 반론보도는 보도의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보도 당사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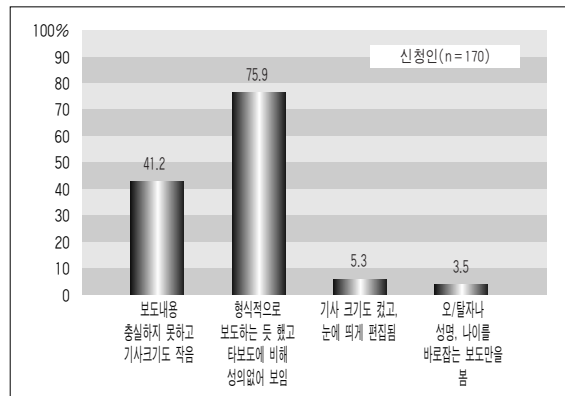
주장 내지 진술을 담은 내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신청인이 조사 대상자의 64.8%를 차지하였다. 반면 반론보도도 정정보도와 동일하게 이해하는 신청인은 30.1%,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의미를 반대로 알고 있는 신청인은 5.2%로 조사응답자의 35.2%는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다.

신청인 가운데 평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88.1%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노출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조정신청 전 게재(방송)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 신청인 170명 중에서 보도(게재)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 대한 생각이 ‘형식적인 보도’라고 응답한 신청인이 75.9%로 가장 많았으며, ‘보도 내용이 불성실하다’라고 응답한 신청인이 41.2%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20〉 조정신청 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문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평가(복수응답)



조정신청 전 게재(방송)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본 적이 있는 신청인 170명 중에서 정정보도나 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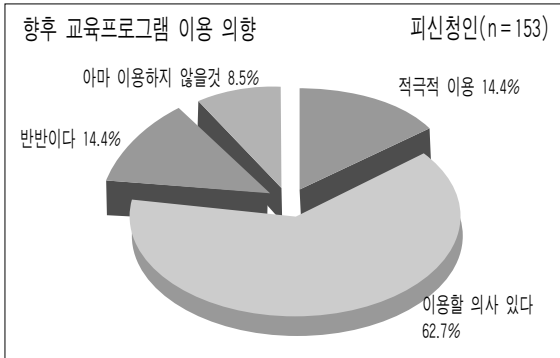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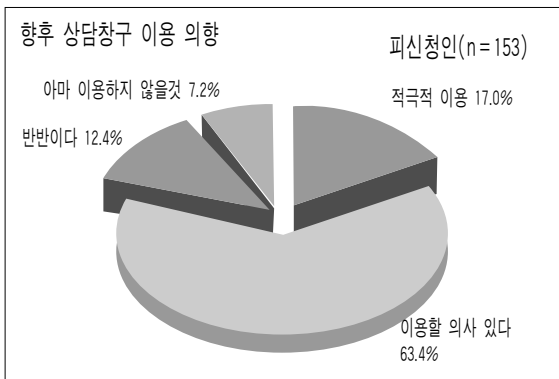
보도가 원 보도에 실렸던 지면이 아닌, '바로잡습니다', '고침' 등의 고정란에 게재되거나, 방송의 경우 원 프로그램이 아닌 시청자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보도되는 경우에 대하여, 69.4%가 '원 보도에 보도되어야 한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22.4%는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시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라고 응답하였다.

12) 피신청인의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
교육프로그램 이용 의향

변호사 등 전문 상담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는 피신청인 153명 중 123명인 80.4%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17.0%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63.4%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른 분쟁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향후 이용의사를 살펴보면, 14.4%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62.7%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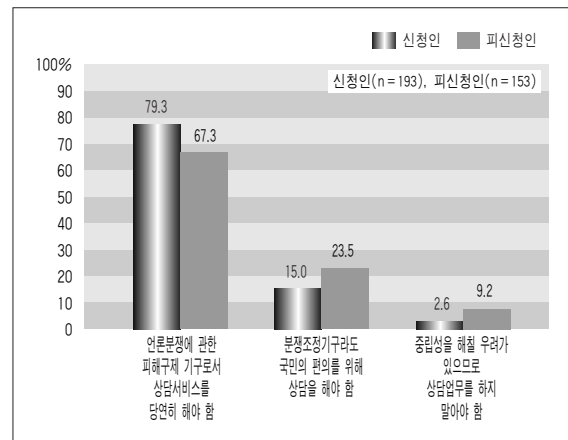
<그림 21>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 의향



13) 언론분쟁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신청인 193명 중 94.3%(182명), 피신청인 153명 중 90.8%(139명)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과 관련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신청인의 79.3%(153명)와 피신청인의 67.3%(103명)가 '언론분쟁에 관한 피해구제기구로서 상담서비스를 당연히 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15.0%(29명)의 신청인과 23.5%(36명)의 피신청인이 '분쟁조정기구라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상담을 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그림 22> 언론분쟁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2. 상담이용자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분쟁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취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 신청'을 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334명) 가운데 가장 많은 74.0%(247명)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해당 언론사에 먼저 연락을 한 뒤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을 한 경우가 20.1%(67명)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를 바로 이용한 이유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를 담당하는 주요기관'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71.3%(17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광고를 본 적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7.0%(42명)로 나타났다.

다른 조치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상담창구를 이용한 응답자 87명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묻은 결과, '다른 상담 후 만족할 만한 상담결과를 얻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상담기구보다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5.6%로 두 번째로 높은 이유를 차지하였다. 기타 이유를 살펴보면, '인터넷 정보/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다'(23%),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이용함/중앙정부기관의 소개로 이용함'(각 11%) 등의 이유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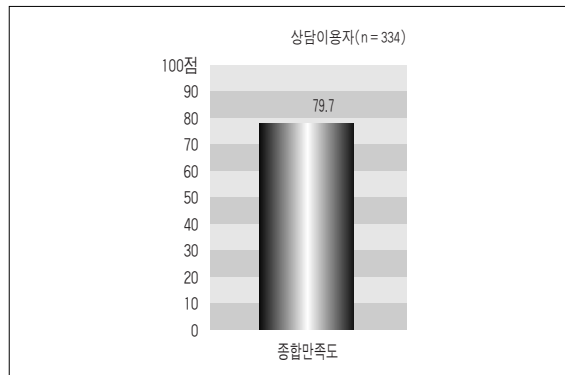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을 신청한 방법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334명 중 79.3%(265명)가 '전화상담'을, 그 다음으로 '인터넷상담(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18.9%(63명), '방문상담' 16.2%(54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상담 가능 등으로 인한 접근성 및 편리성 차원에 대해서는 상담이용자의 64.0%가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3%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상담창구에 대한

접근성 및 편리성 차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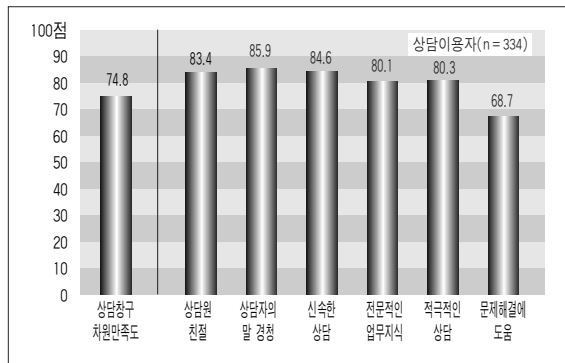
각 항목별 평가점수(5점 만점)에 각각의 항목과 체감만족도의 상관계수² 값을 이용하여 산출된 중요도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산출한 상담이용자의 종합만족도는 79.7점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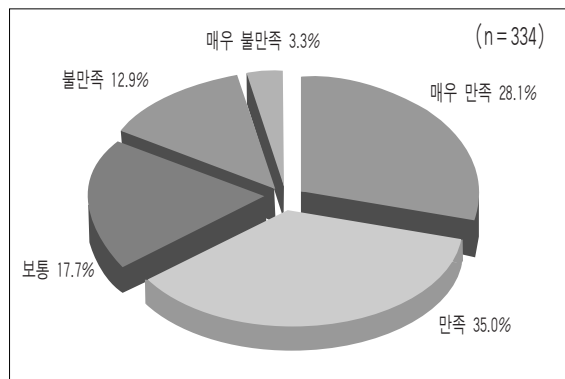
상담이용자의 『상담창구』에 대한 만족도는 74.8점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자의 말경청” 항목이 85.9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신속한 상담” 항목과 “상담원 친절”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84.6점, 83.4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문제 해결에 도움” 항목은 68.7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상담창구』 항목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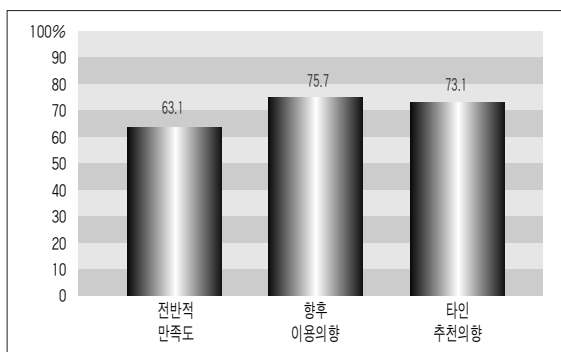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이용자 334명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TOP2 %는 63.1%('매우 만족' 28.1%, '만족' 35.0%)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7.7%,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2%('불만족' 12.9%, '매우 불만족' 3.3%)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의 TOP2%가 63.1%로, 긍정평가율이 부정평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이용자들이 상담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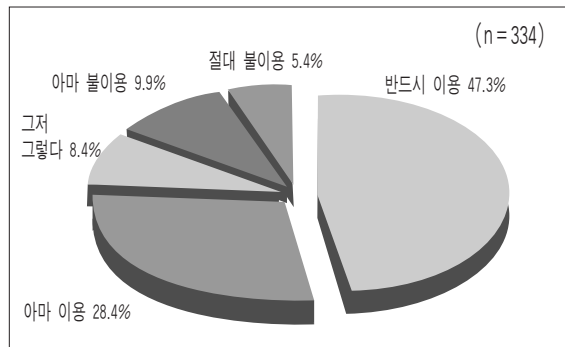
〈그림 26〉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지지도』(TOP2 %)



만약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창구를 재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상담신청인 중 '반드시 이용할 것'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47.3%, '아마 이용할 것'이라고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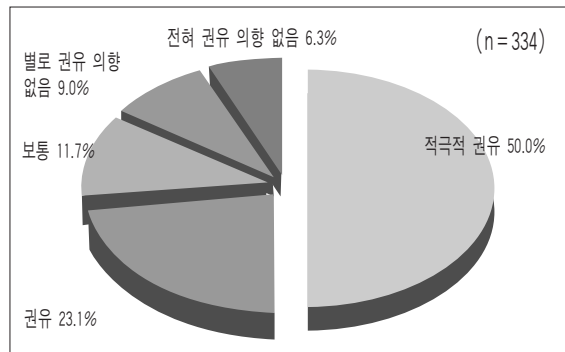
답한 비율은 28.4%로, 긍정평가율이 75.7%에 달했다. 한편,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 '아마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9%,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4%(부정평가율 15.3%)로 나타났다.

〈그림 27〉 향후 이용의향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이용자 중 앞으로 주변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또는 분쟁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을 권유하겠느냐는 물음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라고 응답한 타인 추천의향 TOP2 %는 73.1%('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 50.0%, '적극적은 아니지만 권유하겠다' 23.1%)로 나타났다. 한편, '권유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5.3%('별로 권유할 의향이 없다' 9.0%, '전혀 권유할 의향이 없다' 6.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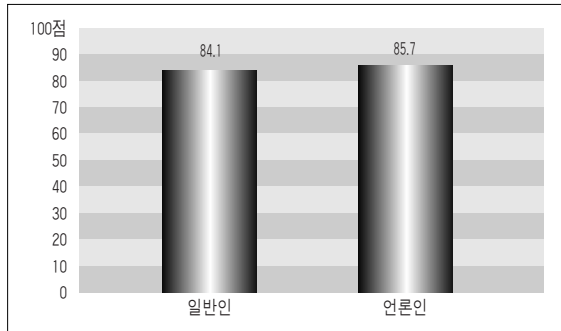
〈그림 28〉 타인 추천의향



3. 교육수강자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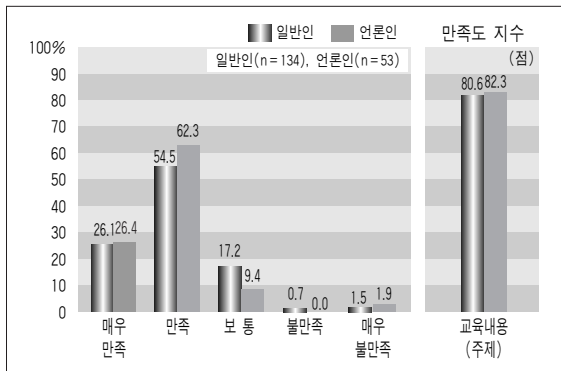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산출 결과, 일반인의 종합만족도는 84.1점, 언론인의 종합만족도는 85.7점으로 조사되어 언론인의 종합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1.6점) 나타났다.

〈그림 29〉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교육내용(주제)”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인의 80.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80.6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88.7%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82.3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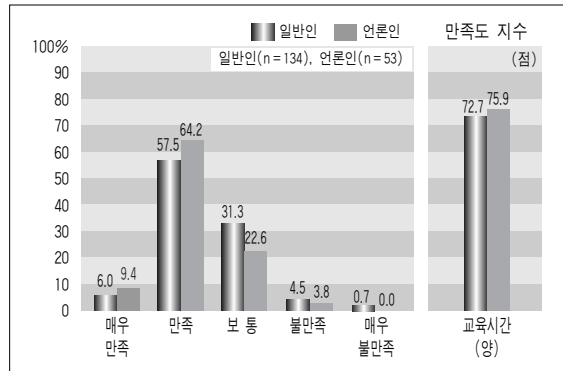
〈그림 30〉 “교육내용(주제)” 항목 만족도



“교육시간(양)”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인은 63.5%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72.7점의 만족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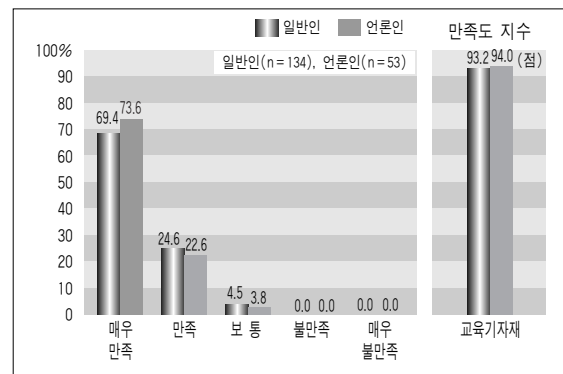
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73.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75.9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여 언론인의 만족도가 일반인의 만족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 “교육시간(양)” 항목 만족도



“교육기자재”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인은 94.0%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93.2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96.2%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94.0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일반인과 언론인 모두 동영상이나 시각자료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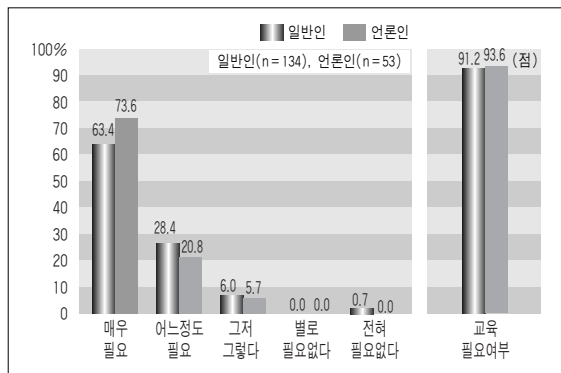
〈그림 32〉 “교육기자재” 항목 만족도



“교육시간(양)” 항목의 만족도가 “교육내용(주제)”과 “교육기자재” 항목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적절한 교육시간(양) 분배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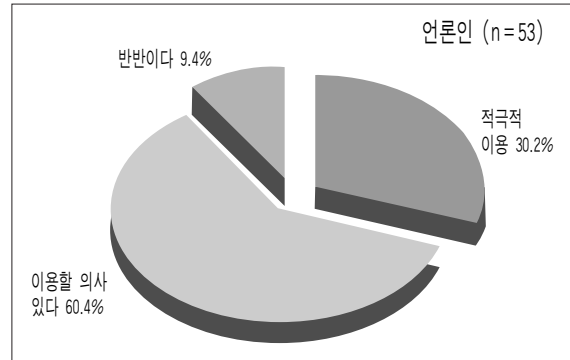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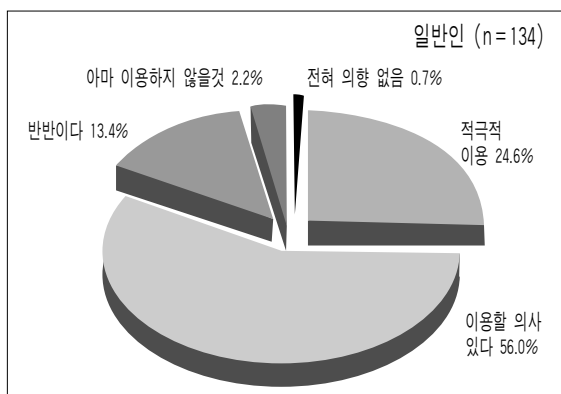
일반인의 91.8%, 언론인의 94.4%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이 ‘(매우/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3〉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의 일반인 및 언론인에게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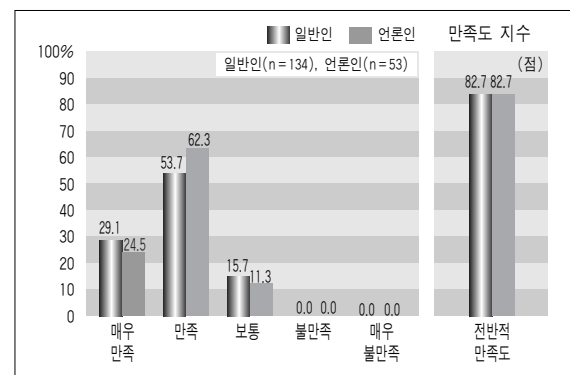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을 살펴보면, 일반인의 80.6%(123명), 언론인의 90.6%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언론인의 향후 이용의향이 일반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 향후 교육 이용의향(일반인 및 언론인)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반인의 82.8%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82.7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으며, 언론인은 86.8%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82.7점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한편 일반인과 언론인의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0.0%로 나타나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35〉 교육 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박 종 호

충북 중재위원, 청주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28일 충북 청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호 위원(충북 중재위원, 청주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이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충북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수용 중재부장(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I. 머리말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제도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제도는 언론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구제제도이다.

도청구권(사실은 반론보도청구권임)이 도입되고 3개월 뒤인 1981년 3월 31일에 언론중재위원회가 가동되었다. 그 후 언론기본법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탄생동기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일자 폐지되었으나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반론권 제도는 1987년 11월 28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일부 흡수되었으며 1991년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1995년 12월 31일 정간물법의 개정을 통해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정식 명칭이 채택되었으며,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법이 제정·공포되어 그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I. 언론중재제도

1. 탄생과 변천

언론중재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 태동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정정보

2. 주요내용 및 특징

1)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명확화

주제논문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하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그만큼 언론의 공적(사회적)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철학적 기초이기도 하다.

2)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공정성, 자율성 등을 갖춘 조직으로서 전면에서 언론중재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3)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의 다양화 도모

언론중재제도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인격권 침해 정지 및 침해예방·관련물 폐기청구, 명예회복청구, 시정권고청구, 선거기사심의 등으로 나누어진다.

①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는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및 인터넷 신문의 보도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는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보도 내용과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추후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는 언론에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

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그 후 형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결과 사실을 후속보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④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는 언론사나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 등에 제소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에는 일반 쟁송사건과 같이 언론사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요구된다.

⑤ 인격권 보장 청구

언론중재법 제5조에서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명예회복처분청구

명예회복처분청구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사과광고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을 취해줄 것을 청하는 것을 말한다.

⑦ 시정권고청구

언론 보도 내용이 옳지 못하거나 잘못되거나 국익, 공익, 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선거기사 심의

언론중재제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일전 120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 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불공정, 비형평, 편파성, 반공익성, 정치적 개입 등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권고·주의·경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반론보도청구 회부사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고충처리인제도 설치

언론중재법 제6조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ombudsman(ombudzman)제도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3. 언론조정 절차

언론중재제도는 법익에 관한 다툼을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며 분쟁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송에 갈음, 중재와 조정과 같은 분쟁 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를 활용한 제도이다.

1) 중재부

조정 및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현재 각 중재부마다 현직 부장판사가 중재부장으로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조정신청 및 조정기관

조정신청은 피해자 또는 언론사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이 있으면 중재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조정대리인

언론중재제도는 조정대리인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조정기일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조정대리인이 출석한다. 조정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5) 증거조사

주제논문

중재부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사건의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서증조사, 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참고인의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중재심리에서의 증거조사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증거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Ⅲ. 언론중재위원회

1. 설치배경

언론의 자유가 확보되는 만큼 그에 비례한 공적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장치가 언론중재위원회 설치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근거해 1981년 3월 31일 설립된 후 사반세기인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2. 성격 및 기능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피해의 조정·중재, 손해배상 등의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독립된 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

3. 기구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 중재부, 사무처 등의 기구를 두고

있다. 중재부는 중재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전국 16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중재부는 조정 내지 중재신청 건에 대하여 정정, 반론,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처는 2본부 1센터 9팀과 10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Ⅳ. 언론중재위원회의 미래과제

1. 중립성·독립성 및 기능강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으로 인하여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소송절차보다는 조정과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및 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i)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재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ii) 정당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원 지위를 상실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게 하며, iii) 중재부의 기구를 확대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청구 등 언론분쟁전반에 대하여 법원제소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지도 향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상황을 알리는 안내지

를 비치하는 일, 도나 시·군 회보에 게재하여 국민이 알게 하는 일, 신문이나 방송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사건 및 결정 내용'을 보도케 하는 일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3. 성숙한 판단력의 구비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은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더구나 언론피해는 i)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ii) 동시다발적이며(한 언론사가 보도하면 다른 언론사도 연달아 보도), iii) 오보든 정보든 그 결과와 파급효과는 동일하고, iv) 법적보상제도가 비현실적이며(보상액 낮게 책정), v) 언론사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고(연예인과 정치인에게는 치명적), vi) 고위관료를 비롯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언론 피해에 대해 취약하며, vii) 일반적으로 국민이나 독자들은 언론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 즉 성숙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법을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분쟁대상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과 중재를 해야 한다.

4. 접근성 용이

언론중재위원회는 독자, 국민, 시민단체 등을 비롯, 이용 필요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민간 사회단체들이 자리한 곳이나 대학가 그리고 공원근처, 지방자치단체 정문 앞 등이 이상적인 장소다. 또한

신청방법도 단순화 할 것이 요구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방법과 궤를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5. 중재위원의 전문성 확보

중재위원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을 임무로 하는 만큼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에 대한 기초지식, 언론보도 기사로서의 가치와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언론사의 사명, 국민의 기본권, 시비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는 판단력,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 신념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신청 층의 확대

과거 조정신청이 언론사,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기관 내지 단체의 청구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일반인의 신청이 미미하다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만큼 언론에 대한 국민권리 보호의 창구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함으로써 신청 층을 두텁게 하여야 한다.

V. 맺음말

언론중재위원회는 중립성·독립성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수요자 및 국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토 론

한다. 또한 누구보다 성숙한 판단력을 구비해야 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전문성을 갖대로 하여 중재위원이 선정돼야 한다. 언론사 및 공공기관의 이용 층을 일반인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정부기관이 그러하듯, 언론중

재위원회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나 공공기관만이 사용하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연기자(주역)로 하는 국민의 무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의 법익보호에 초점을 두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토 론

사 회 어 수 용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정연은(충북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지 25년이 되었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다. 그만큼 홍보가 미비하다는 뜻이다. 위원회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선관위는 최근 일련의 선거를 치루면서 ‘낮잠자는 선관위’, ‘얼빠진 공무원’ 등 몇몇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사사건건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신청 할 만한 기사에 대해서는 거꾸로 상대방에 연락해서 조정신청을 권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협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성규(중부매일 대표이사) :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회적 순기능을 인정하며 제도적 필요성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은 최소화하여야 한

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기본적인 기능은 정보제공과 비평이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필수적인 역할이다. 시각의 충돌로 인해 분쟁이 빚어졌을 경우 당사자들의 화해와 조정이 가장 중요한데 언론중재위원회가 개입해서 이를 조정하려 한다면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사를 검열하는 것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매우 위협적인 발상이다.

안종욱(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에 대해 자체 검열 내지 시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중재제도 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겠으나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우선 제도의 존재부터

알리는 게 시급하다고 본다. 또한 지역 언론은 중앙 언론과 달리 지역 내에서 상당한 위상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진실보도를 담아내려는데 힘써야 한다.

강태재(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 : 중재위원의 역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인사들로 중재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중재위원회가 중재위원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북지역의 경우 조정건수가 적은 것은 언론의 피해구제가 신속해서라기보다는 충북 지역 사람들의 기질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즉 예부터 양반고을이라 하여 면전에서 체면을 구기는 일을 꺼리는 경향이 강한 대신 투서형식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또한 충북 지역 언론 역시 상대적 우월감이 강해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보복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즉 현실적으로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중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적다는 뜻이다.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중재위원이 법조, 학계, 언론계 출신 위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역 사정에 능통한 지역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일반인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더욱 많아져야 한다. 언론중재의 목적이 조정과 합의도출이라는 측면에서 위원 인선시 이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박민순(청주 MBC 보도편집국장) : 백 건의 사건 중 아흔아홉 건의 잘하는 사건보다는 한 건의 잘못된 사건을 취재하고 기사화하는 것이 한국 기자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국민의 세금을 받아 일하는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언론이 비리나 부정부패 관련 보도를 하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딱지만 건다는 식으로 향의를 한다. 언론이 무조건 딱지건다는 생각 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언론은 사회가 발전하고 외연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이다. 언론의 오보대응은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사회가 성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물론 사후구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는 지극히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 모습이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홍보하고 강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본다.

김영일(새충청일보 대표이사) : 언론중재위원회 홍보를 가장 열심히 해주는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사이다. 일반인들이 향의를 해오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정보도하기 때문에 조정건수가 적은 것이다. 또한 향의를 해 온 사람과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로 가라고 안내한다.

중재위원 중에 언론사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현재 충북 중재부에는 언론사 출신 위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오히려 언론조정과 중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언론사 출신이 있을 경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이라

토 론

할지라도 언론사 출신 선배 중재위원이 조정을 권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기수(전 중재위원) : 중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싸움을 말리는 기관이다. 언론사 출신 위원이 없다면 공정한 중재를 하는데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어떤 분들은 언론사 출신 중재위원이기 때문에 언론사 일방을 편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언론사 출신 위원은 그러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조정에 임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중립적인 자세로 사안에 접근한다.

이상열(충북관광협회 회장) :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잘 몰랐으나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각 언론의 북한 핵 보유 오보 사건을 보면서 오보가 터지기 전에 그 기사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여실히 느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유태(청주 여성의 전화 대표) : 충북중재부에 여성위원이 없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전체적인 토론 내용의 흐름상 언론계보다는 시민단체 쪽의 얘기가 더 맞다고 본다. 조정과 중재는 전문성을 따지기에 앞서 지역사정을 잘 아는 소비자들이 중재위원으로 활동할 때 더욱 합의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위원회의 위원이 반드시 5명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한성(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의장) : 언론중재위원으로 누가 들어가 있던지 간에 중립성을 담보로 활동하면 된다고 본다. 기업들이 노동자들 때문에 기업활동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노동자에 불리한 부정적인 보도를 접할 때는 언론이 중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가 삭막해진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기 전에 언론사와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타협과 양보를 통해 절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김춘길(충북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지역 중재부의 중재위원이 중앙 행정기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의 편집국장 및 고충처리인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언론피해구제의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면 훌륭한 오보대응시스템이 구축되리라 본다.

조성훈(동양일보 대표이사) : 자칫하면 언론은 피해만 주는 기관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르겠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사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의 견제기관이 아니라 언론으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어수단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기자를 교육시키고 또 일반인을 상대로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이는 언론사에게도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해외시찰 보고서

-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사례 -

조정1팀 차장 **여** **종** **국**
조정2팀 차장 **최** **영** **훈**

이번 해외시찰 방문국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개국이었으며, 방문처는 모두 6개 기관으로 이 중 신문사와 언론유관기관이 각각 3곳이었다.

시찰기간 동안 각 기관별로 오보로 인한 이용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은 방문국의 언론현황 및 방문 기관의 주요 업무 그리고 언론피해구제와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언급한 후, 대담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로 기술하였는데 방문처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I. 스위스

스위스에 특별한 언론관계법은 없으며, 다만 연방 헌법 55조에 '언론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다른 조항과 기타 각종 법률 및 각 주의 조례와 경찰법규 등에 의해 언론 자유는 어느 정도 제약되나, 그 대부분은 언론자유

의 남용에 국한하고 있다. 스위스의 법률 중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은 악의적이고 조작된 중상모략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인에 대한 중상보다는 일반인에 대한 중상이 더욱 엄하게 적용된다.¹⁾

스위스 신문평의회(Press Council)는 스위스 언론인연맹(FSJ)에서 언론인연맹 규칙 제27조 '언론인의 의무와 권리선언'에 입각하여 언론인의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언론인의 권리침해를 다루기 위하여 설립되었다.²⁾ 신문평의회는 독자불만을 접수하는 역할 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자체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며, 심의사항을 매년 자체 간행물에 공표하고 있다.

방문처 1.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

(Neue Zürcher Zeitung : NZZ)

2004년 기준 스위스의 유료 일간신문은 93개로 249만 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부수 상위 5개 신문은 「Blick」(27만 5천 부), 「Tages-Anzeiger」(23만 6천 부), 「Mittelland Zeitung」(19만 부),

1) 언론중재위원회(1989, 여름). 스위스 신문평의회. 『언론중재』, 통권 31호, p. 58.

2) 언론중재위원회(1989, 여름). 앞의 책, p. 58.



「Berner Zeitung」(16만 6천 부), 「Neue Zürcher Zeitung」(15만 5천 부) 등이다.³⁾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은 독일어로 '새로운 취리히 신문'이라는 뜻으로 1780년 1월 12일 창간되어 독일어로 발행되고 있다. 세계 10대 고급지 또는 세계 3대 고급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도우파 성향이다. 처음에는 주간지로 창간하였다가 1843년 일간지로 변경하였다. 1997년에 NZZ 온라인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일요판과 월간도 발행하고 있다.

세계의 엘리트 신문은 각기 그 성격이 다양한데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은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레마이네」와 함께 가장 진지하고 분석적이며 논평을 위주로 하고⁴⁾, 특종이나 선정적 보도는 철저히 배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신문은 여러 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1면을 제외한 첫 묶음은 거의 국제기사일 정도로 국제소식 비중이 상당히 높다. 지식인, 정부관리, 경제·정치 지도층 인사들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국에서의 구독률이 높다.

세계 주요도시에 특파원 및 통신원 60여 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신문의 크기는 한국 신문의 기본인 대판과 타블로이드의 중간 형태인 베를린판형이다. 이 신문은 사실이 따로 없고 장문의 논평, 의견 기사들이 1면 등 주요 면에 실린다. 사실과 기사를 '교활하게' 분리하지 않는다. 현 편집인 마르쿠스 슈필만(지난 4월 취임)은 40살인데 전임자도 40대 초반에 취임해 21년을 재임하였다. NZZ는 1933년부

터 현재까지 편집인이 4명에 불과했다.⁵⁾

NZZ는 인건비 지출이 많고 2000년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자 금년에는 3인 공동대표 체제로 변환하고, 그 동안 매우 학술적이며 침울하고 답답한 편집으로 인해 멀어진 독자들을 재확보 하기 위해 1면에 컬러사진을 게재하는 등 새로운 편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사 전체 인원은 550명(각 지역국 인원까지 합칠 경우 2,000여 명)이고, 일간지 편집국 기자는 250명이다.

〈면담 요지〉 대담자: Mr. Kamer 편집부국장

-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창립 역사와 관계가 있다. 1780년 발행 당시의 기사가 국내 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제 뉴스였다. 당시 정부가 신문기사에 대한 검열을 심하게 하여 국내 소식을 쓸 수 없게 되자 외국의 소식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⁶⁾ 국제적인 뉴스를 많이 쓰다 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다.

- 현재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자들의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옴부즈맨은 없지만 독자의 불만은 각 사장⁷⁾ 아래의 담당자들이 처리하고 있다. 독자들은 신문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역할이 옴부즈맨과 비슷하지만 옴부즈맨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3) 한국언론재단(2006, 5월). 세계언론통계-2005 유럽국가별 신문 종류수·부수·광고. 『MEDIA WORLDWIDE』, p. 83.

4) 이상철(1997). 「세계신문론」. 서울 : 일지사. p. 33.

5) 한겨레, 2006. 7. 6. 자 13면.

6) 스위스는 1767년부터 주에서 검열제를 실시해 오고 있었다. 1798년에 와서 스위스 공화국이 언론자유, 출판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앤서니 스미스(2005). 「세계 신문의 역사」. 서울: 나남. p. 125).

7) 편집담당 이사(편집국장 겸임), 출판담당 이사, 재정담당 이사. 의견 충돌시 편집담당 이사가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

- 1년에 약 250건 정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사 내용상의 불만 유형으로는 정정 또는 반론보도 요구 등이 있으나 손해배상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안다.

- 정정이나 반론보도는 원 보도의 위치에 게재하며, 그 크기는 원 보도에 비해 작으므로 눈에 띄게 보도해 준다.

- 연방이나 주 정부에서 불만을 제기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독자투고란에 의견을 기고하는 경우는 있다. 그 이유는 스위스에는 투표가 매우 많은데 이 투표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 취리히 주법에 취재원 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방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현재 계류 중인 취재원 공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 신문평의회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스위스의 신문평의회가 유명 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신문평의회는 독자불만을 접수하는 역할 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자체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 한다. 이 심의사항을 매년 자체 간행물에 공표하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시정권고 사항을 수용하나 평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도하기도 한다.

- 독자들은 기사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보통

신문평의회 보다 신문사로 먼저 불만을 제기한다.

- 스위스에는 언론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민법 등의 규율을 받는다.

II.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연방공화국의 언론구조는 극심한 언론자본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프린트(Mediaprint)⁸⁾가 인쇄매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고 공영방송인 ORF⁹⁾는 방송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어 다양한 여론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¹⁰⁾

1990년 중반 민영방송 송출 허가 와 아울러 2001년에는 민영방송법이 제정되어 민영방송이 출범했으나 2003년에야 전국 방송을 시작한 민영방송의 시장 점유율은 저조한 실정이다.¹¹⁾

정부에서는 여론의 다양한 형성과 신문 판매활동 그리고 언론인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문지원 정책¹²⁾을 펴고 있는데 지원금으로 해마다 약 1,390만 유로를 배정하고 있다.

1. 오스트리아 언론법

1981년 제정되어 2005년 개정된 오스트리아 언론법¹³⁾은 신문, 방송, 뉴미디어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8) 독일의 언론제별인 서부독일신문(WAZ), 노이에 크로넨 자이퉁(NKZ) 언론그룹, 쿠리어 언론그룹의 신디케이트가 설립하였다.

9) 1955년 창립되어 독일어로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2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2006 세계언론개황, 해외홍보원).

10) 서명준(2005), 오스트리아의 언론규제와 지원정책[미디어 규제와 지원제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p. 152.

11) 서명준(2005), 앞의 글.

12) 1985년 '신문진흥법'을 제정하여 일간/주간신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4년 139개사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120개사가 지원혜택을 받았다.

13) 'Bundesgesetz über die Presses und publizistische Medien(언론과 인쇄매체에 관한 연방법)'. 이 글에 요약한 부분은 이주관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가 번역하였다.



단일법이다. 총 5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 부분은 우리 언론중재법과 유사하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주요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6조 1항 : 언론매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실현되면, 피해자는 언론기업주(발행인 삭제)에 대하여 인격모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언론매체의 전파방법 및 전파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언론기업주(언론기업에서 언론기업주로 변경)의 경제적 존립유지를 고려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20,000유로(한화 약 2,500만 원)를 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중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50,000유로(한화 약 6,200만 원)를 한도로 한다.

제6조 2항 :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보도이거나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방송에 관한 경우(주의의무 소홀인 경우 제외), 웹사이트의 이용자 게시물에 관한 경우(주의의무 소홀인 경우 제외), 3자가 표현한 것을 진실에 충실히 재현한 것으로서 공표에 우월적 공익이 있는 경우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1항 : 언론매체에서 개인의 고도의 사생활 영역을 그가 공중에서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기술 또는 묘사한 경우, 피해자는 언론기업주에 대하여 인격모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20,000유로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7a조 1항 : 언론매체에서 형사상 피해자 또는 형사상 혐의가 있는 자,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이름, 사진 또는 당해인의 신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표되고, 당해인의 공적 지위, 공적 활동과의 관계 및 기타 공

표로 인한 우월적 이익 없이, 공표로 인해 당해인의 보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피해자는 언론기업주에 대하여 인격모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20,000유로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7b조 : 언론매체에서 형사상 혐의자나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가 죄가 확인되거나 유죄인 것처럼 기술된 경우 언론기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20,000유로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7c조 1항 : 언론매체에서 통신 감청, 녹취로부터 얻은 녹음, 사진, 활자적 표현을 보도한 경우, 그 내용이 공개변론에서 공개된 경우가 아닌 한, 언론기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50,000유로를 넘어서는 아니 되나, 공표로 인해 피해자의 경제적 존립 및 사회적 지위가 파괴된 경우에는 100,000유로를 한도로 한다.

제9조 1항 : 정기적 언론매체에 의해 전파된 사실보도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언급된 자연인 또는 법인(관청)은, 반론이 허위이거나 다른 이유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당해 언론매체에 무료로 반론을 공표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3항 : 웹사이트 게시물에 대한 반론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한 달간(원 보도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게시해야 하며, 제목을 초기화면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보일 수 있게 해야 한다.

2. 오스트리아 신문평의회

오스트리아 신문평의회는 1961년 4개의 단체(신문협회, 언론노조, 잡지협회, 기자·작가공동협회)가 모여 결성하였다. 신문평의회는 인쇄매체와 온라인

.....

신문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해 결정을 내리며, 권력 기관에 대해 신문사의 이익을 대변한다.

또한 신문평의회는 신문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진실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등 언론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 이를 위해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양측 당사자를 불러 각자 입장을 표명하도록 한다. 불만처리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에 공개한다.¹⁴⁾

신문평의회는 신문협회와 언론노조에서 각각 10인, 기자·작가공동협회와 잡지협회에서 각각 2인으로 하여 총 24명의 명예직으로 구성되었다.

신문평의회는 1995년에 42건을 처리하기도 했으나 불만제기 건수가 계속 감소하여 2002년 이후 해체된 상태이다. 현재 평의회를 재건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이며 2007년경에 재건될 예정이라고 한다.

방문처 2. KommAustria(커뮤니케이션청)

롬오스트리아는 2001년 4월 1일 '롬오스트리아법'에 의해 방송의 법률적인 규제를 위해 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롬오스트리아는 민영텔레비전방송청과 라디오지역민영방송위원회, 케이블·위성방송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2003년 제정된 통신법에 따라 방송네트워크와 서비스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되어 업무영역이 확대되었으며 2004년 신문진흥법이 개정되어 신

문 및 인쇄매체의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

롬오스트리아는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공사(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Ltd.; RTR-GmbH)¹⁵⁾에 지침을 전달하며 공사로부터 방송관련 업무지원을 받는다. 롬오스트리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상위 기구인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Federal Communications Senate, 6인으로 구성)에 항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롬오스트리아의 주요 업무>

- 민영방송 인허가권 부여
- 방송국(ORF를 포함) 설립 및 운영 허가권 부여
- 민영방송국 감독
- 민영방송국 및 ORF의 광고 심의
- 디지털 방송 추진사업
- 방송과 부가서비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기반시설 규제
- 주파수 분배
- 방송사에 과태료 부과
- 신문에 보조금 분배

<면담 요지> 대담자: Michael Ogris 청장, Brigitte Zauner-Jelemensky 신문지원담당

- 롬오스트리아는 방송의 오보에 대해 규제나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인쇄매체에 대해서는 지원만을

14) 서명준(2005). 앞의 글. p. 170.

15) 2001년 '커뮤니케이션청 및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설치법'에 의해 설립. 방송과 통신 분야가 있으며 롬오스트리아와 통신조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이다. 방송담당 사장은 연방총리가 임명하고 통신담당 사장은 연방기술교통혁신부장이 임명한다. 직원 수는 약 80명이다. 연방정부 소유이며 연방정부 예산과 방송사업자들로부터 일부 충당하는 예산으로 운영한다 {서명준(2005). 앞의 글. p. 173}.



담당하고 있다.

- 신문평의회에 대해 언론인들이 다시 관심을 가져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콤포스트리아도 2005년 이후 이 평의회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의 기구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 적합한 기본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첫 연구가 발표되었다. 신문평의회는 2007년 경에 재건될 것으로 보인다.

- 오보에 대한 정정결정이나 시정명령은 법원에서 하는 일이며 콤포스트리아는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를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언론법에 의해 판결한다.

- ORF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는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에서 담당하나 광고 부분은 콤포스트리아에서 담당한다.

- ORF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는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일과 그 위반 내용을 방송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영방송은 결정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오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고 있다.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는 ORF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방문처 3. 스텐다드(Der Standard)

오스트리아는 전국지와 지방지를 합쳐 9개 주에서

모두 17종의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197개의 주간신문이 존재한다.

스텐다드는 1988년 10월 Oscar Bronner에 의해 창간된 전국 일간지이다. 창간 초기 독일 슈프링어(Springer) 언론그룹이 주식의 50%를 소유하였지만 1955년 Oscar Bronner가 매수하였다. 1988년 이후 남독일 출판그룹(Süddeutscher Verlag)이 4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¹⁶⁾

국내 뉴스보다는 경제와 외신에 큰 비중과 관심을 갖고 있으며(외신이 50면 중 5면) 비교적 진보적 성향(사민당 지지 경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간 역사가 일천하나 타 언론사에 비해 많은 특파원을 두고 확장일로에 있다.¹⁷⁾

오스트리아 주요 일간지의 발행부수와 구독률은 다음과 같다.

매 체 명	발행부수	구독률(%)
Neue Kronen Zeitung	1백 1만 8천부	43.4
Kleine Zeitung	29만 4천부	12.4
Kurier	25만 8천부	11.1
Oberösterreichische Nachrichten	13만 3천부	5.3
Die Presse	12만 3천부	5.3
Tiroler Tageszeitung	11만 8천 부	5.1
Der Standard	11만 부	5.7

출처: 오스트리아 발행부수 협회 (Austrian Circulation Control: OAK), 2002년

<면담 요지> 대담자: Dr. Eric Frey 편집국장

- 오스트리아 언론법은 매우 엄격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특히 정치문제나 정치인들 보

16) MEDIA IN AUSTRIA, THE FEDERAL PRESS SERVICE VIENNA 2003, p. 9.

17) 2006 세계언론개황, 해외홍보원

도에 대한 판결로 위축을 받는다. 폐소 시에 손해배상액이 크며 언론사는 생존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변호사가 기사를 사전에 열람한다.

- 스텐다드에는 옴부즈맨이 없다. 편집국장과 기자들이 독자들의 불만에 직접 응대하고 있다. 독자들이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 몇 해 전까지 신문평의회가 있었는데 이 평의회 결정에 언론사들이 별로 승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의회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었다. 신문평의회가 재건되기를 바라며 예전보다 큰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 독자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편집국장이 먼저 담당 기자와 얘기하고 그 다음 담당부서장과 얘기한다. 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편집국장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의를 시도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곧바로 사내 변호사와 협의하도록 하게 한다. 독자들이 소송으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이것을 '민중의 스포츠'라고 부르기도 한다.

- 타 언론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최근 5년 동안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난 추세이다. 지금까지 스텐다드가 당한 소송은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극우자유당에서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맞추기 위해 스텐다드를 공격하기도 한다.

- 스텐다드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 언론에 이미 공표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원을 절대로 공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공격적이면서 자신감 있게 처신한다.

방문처 4. 신문협회
(Verband Österreichischer Zeitungen; VÖZ)

오스트리아 신문협회는 지역신문이 발달한 오스트리아 신문들의 경영발전과 신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신문사간 과다경쟁을 제한하며 매체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1946년 5월 4일 설립되었다.

신문발행면수의 상한선을 조정하고 구독료의 협정가격 책정 및 신문사간 광고, 판매의 과당경쟁을 막으며 신문사의 이론적 정립을 위해 신문학자와 언론인 간의 공동연구 등이 주 업무이다.

협회에는 구독자 후원 제도가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교육(NIE)에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을 교육하여 청소년들에게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현재 협회에 78개사(일간지 17개, 주간지 및 월간지 61개)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장은 Dr. Horst Pirker 디 프레세 사장, 부회장은 Oscar Bronner 스텐다드 사장 외 3명이다.

〈면담 요지〉 대담자: Dr. Heinz Wittmann 교수,
Hannes Schopf 홍보담당

- 오보로 인한 피해구제 업무는 협회의 업무가 아니다. 회원사들이 불만 제기자와 직접 대화하며 협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 회원사가 원하는 독자층을 유지하고 발행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신입 언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기관을 운영하며, 언론인만을 양성하는 언론전문대학을 설립하였다. 현직 언론인들이 이 대학에서 언론인 전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 (크로넨 자이퉁과 쿠리어가 오스트리아 신문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를 질문하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창간된 신문들은 정당의 기관지



였다. 정당 신문들에 비해 이 두 신문은 전혀 새롭게 창간된 것이었고 마케팅과 경영에서 결속을 하였다. 독일의 WAZ 그룹(알게마이네 자이퉁 출판그룹)이 크로넨 자이퉁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쿠리어 지분의 49.4%를 소유하고 있다.¹⁸⁾ 여기서 큰 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 오보의 경우 원 기사와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크기로 게재해 주어야 한다. 인터넷 언론에 관한 사항도 언론법에 명시되어 있어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반론보도의 경우 한 달 동안 인터넷에 게시할 의무가 있다. 원 보도가 초기 화면에 보도된 경우 반론보도의 제목을 원 보도의 기사 제목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초기화면에 표시하고, 클릭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문평의회는 편파적인 보도, 오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였으나 원래 보도를 하였던 동일 지면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등을 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었다. 언론인이 언론인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불만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다.

- 현재 작은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편집국과 불만 제기자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중재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 (자율적인 기구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3기관은 외부에서의 통제를 의미한다. 협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율적인 통제이다. 예전에 한 신문사가 유명한 장군을 ombudsman으로 임명한 적이 있다. 그 장군은 편집국이나 독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다.

Ⅲ. 이탈리아

이탈리아 헌법은 “신문은 허가 대상일 수 없고 검열 대상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판법에 따라 신문이나 잡지는 법원에 등록하기만 하면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는 2005년 현재 약 206개의 일간신문, 약 159개의 통신사 그리고 122개의 광고판매회사가 존재하고 있다.¹⁹⁾ 신문은 가정배달보다는 대부분 가두에서 판매되고 있다(2001년 우편배달 8.7%, 가판 91.3%).

이탈리아 신문 산업은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몇 개의 거대 신문에 의한 자본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본 집중은 1980년대 이후 베를루스코니(S. Berlusconi)²⁰⁾나 아넬리(G. Agnelli) 같은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가들이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출판 산업에 진출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²¹⁾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신문을 가장 적게 읽는 나라 중 하나다. 이러한 낮

18) 독일의 언론재벌이 주로 오스트리아 인쇄매체시장에 진출하였다. 오스트리아 일간신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총 지분 참여 비율은 33%를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19) 이선필(2005), 이탈리아의 언론규제와 지원제도[미디어 규제와 지원제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p. 124.

20) 전 이탈리아 총리로 2006년 4월 총선에서 패해 총리직을 잃었다. 핀인베스트(Fininvest) 미디어 그룹의 총수로서 미디어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였고, 집권 이후에도 공영방송(RAI)을 장악하여 언론인을 해고하고 보도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부패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언론재단(2006, 11월), 소유 미디어와 돈을 정치권력 유지에 이용, 『MEDIA WORLDWIDE』, p. 30).

21) 이선필(2005), 앞의 글, p. 125.

은 수치는 신문 산업에 있어 증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신문지원법 등을 통해 꾸준히 신문 산업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이탈리아 방송은 현재 전국적으로 13개의 지상파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800여 개의 중·소 규모 지방 민영방송국이 존재한다. 그러나 방송시장은 3개의 공영방송(RAI 1, 2, 3)²²⁾과 3개의 민영방송(Canale5, Italia1, Rete4)²³⁾이 지배하고 있다.

이탈리아에는 신문을 규제하는 법으로 신출판법²⁴⁾이 있으며, 방송분야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방송법²⁵⁾이 있다.

방문처 5. 레푸블리카(La Repubblica)

2004년 기준 이탈리아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은 Corriere della Sera(67만 7천 부)이며, 1976년에 창간된 la Repubblica는 62만 2천 부를 발행하였다.²⁶⁾

독립적이지만 중립적이지 않은 신문을 지향하며 좌파계열의 신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4년 크락시, 안드레오티 집권 기간의 부정부패를 세상에 알리면서 유명해졌다. 8개국에 통신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본사는 로마에 소재하고 있다.

Corriere Della Sera와 함께 이탈리아 양대 권위의 하나이다. 90면에 달하는 주말판(II Venerdì)을

별도로 발행하고 있으며, 97년 5월 2대 주간지인 L'Espresso지와 합병을 통해 경영합리화 도모하고 있다.²⁷⁾

〈면담 요지〉 대담자: Mr. Paolo 독자담당국장

- 다른 경쟁지가 100년 정도 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신문이다. 전통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가볍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편집과 기사에 새로운 면이 많다.

- 객관적이라는 말이 중립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영국의 주요 신문도 선거나 정치적 격동기에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정확히 표현하였다. 레푸블리카도 매우 객관적이기는 하나 중립적이지는 않다. 창립 초기부터 정치적 노선을 분명히 드러냈다.

- (옴부즈맨제도를 폐지한 이유를 묻자) 3, 4년 전까지만 해도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였다. 레푸블리카가 이탈리아에서 옴부즈맨을 운영한 유일한 신문이었다. 그러나 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편집국에 불만을 호소하였다. 편집국에서 독자의 불만을 담당하다 보니 더욱더 독자들은 옴부즈맨을 찾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예전에 독자들은 불만내용을 편지로 보냈으나 요즘은 이메일을 이용하고 이에 대해 편집국에서 곧바로 처리해

22) 법적으로 RAI(Radio Televisione Italiana)는 민간 회사지만 대부분의 주식은 국영기업(최근 민영화됨)이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1%를 이탈리아 작가협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RAI를 국영방송으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강준만(2001). 『세계의 대중매체 3』. 서울: 인물과 사상. p. 167}.

23) 미디어 그룹 핀인베스트(Fininvest) 소유

24) 이탈리아 출판법은 1981년 제정되어 1987년과 2001년 개정되었다. 범명은 「Nuovenorme sull'editoria e sui prodotti editoriali: 제67호법」이다.

25) 1975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0년에 '공·민영방송법', 1997년에 '커뮤니케이션청 설치와 라디오 텔레비전 법', 2004년에 '라디오 텔레비전 시스템과 RAI 방송국에 관한 법'으로 개정되었다.

26) 한국언론재단(2006, 5월). 세계언론통계-2005 유럽국가별 신문 종류수·부수·광고. 『MEDIA WORLDWIDE』. p. 85.

27) 2006 세계언론개황, 해외홍보원



주고 있기 때문에 편집국 밖의 옴부즈맨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 독자의 불만은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되며, 독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원하면 신문사 내의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이탈리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정정보도는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에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

- (독자기구가 아닌 편집국에서 독자의 불만을 처리하면 불편부당한 처리가 어렵지 않느냐 질문에 대해) 옴부즈맨 역시 언론사에 소속된 사람이므로 별 차이가 없다. 르몽드의 옴부즈맨을 잘 알고 있는데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 이 옴부즈맨이 처리하는 형식은 '독자의 입장이 이해된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 라는 식으로 거의 비슷하고 매우 타협적이다. 옴부즈맨이 답신에 자신의 의견을 달기 때문에 오히려 덜 객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 (기자들의 교육제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탈리아에는 언론고시기²⁸⁾ 있다. 이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협회에 등록하면 신문사에 취직하여 기자가 될 수 있다. 프리랜서도 이 기자증이 없으면(기자증을 보여주며) 기사를 쓸 수 없다. 협회에서 윤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정직을 시킬 수도 있다.

방문처 6. AGCOM(커뮤니케이션청)

이탈리아 방송의 규제기관은 AGCOM과 경쟁위

원회, '의회 라디오·텔레비전 서비스 지도·감독위원회(의회 방송위원회)'²⁹⁾ 그리고 'RAI 방송위원회'가 있다. 민영방송은 AGCOM과 경쟁위원회에서 규제하고 공영방송은 위의 4개 기관이 모두 규제한다.

AGCOM은 최근 우리나라의 방송, 통신 융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AGCOM 구조와 역할〉

- 1997년 '제249호법'에 의해 설치된 방송·통신 전반을 규제하는 독립기구
- 구성
 - Infra/Network 위원회 :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 Service/Products 위원회 :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 전원평의회 : 위원장과 8명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
- 의장은 통신부장관과 협의 후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8명의 위원은 상·하원이 투표를 통해 각 4인씩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³⁰⁾ 임기는 7년 단임
- 역할 : 미디어 산업에 대한 법적·기술적 권한을 가지며, 방송 서비스의 질과 양을 감독,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조정, 해마다 활동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28) 파시스트인 무솔리니 통치시대에 언론 통제를 위해 법무부가 만든 위원회가 입회 여부를 결정하는 기자회를 설립했다. 파시스트 정권 붕괴 후 기자회는 해산됐으나 이번에는 신문사가 기자회에 등록하지 않은 '비자격 기자'를 대거 고용하는 바람에 기존 기자들의 권익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 결국 63년 기자회가 부활됐고 기자 선발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시험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문제는 기자회가 폐쇄적인 특권조직으로 변질되고 기자 채용과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공룡으로 변해버렸다(중앙일보, 1996. 11. 14. 자 9면).

29) 의회 방송위원회는 1975년 방송법에 의해 상·하원 의장에 의해 임명되는 상·하원 각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30) 이선필(2004, 하권). 이탈리아 방송시장 규제법규와 정책[세계의 언론법제]. 서울: 한국언론재단. p. 86.

- 재원 : 정부 예산 지원과 각 방송사들의 기부금으로 운영

- 정부에서 불만을 신청할 경우에도 의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처리한다.

<면담 요지> 대담자: Stefano Valentino 변호사

- 위원회 1/2은 여당, 1/2은 야당 인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 인터넷 분야를 관할한다. 의장은 현재 교수(2005. 5. 9. 임명)이며, 8명의 위원은 전직 언론인, 법조인 등이다.

- Service/Products 위원회에서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방송에 오보가 있을 경우 해당 방송사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법원만이 권한을 갖는다. 방송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년에 50건 정도의 시청자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 중 정치적인 문제가 30건, 기타 20건 정도이다. 선거가 있는 해의 처리 건수는 약 80건이다.

- 방송에 불만이 있는 시청자는 먼저 해당 방송사에 불만신청을 해야 하고 해결이 안 되면 AGCOM에 신청해야 한다.

- 정정이나 반론보도 요구는 신속히 처리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 공영방송 RAI에 대해서는 AGCOM과 의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한 후 합의해 결정하고 방송사에 명령한다.

- 정치적인 사안의 경우 AGCOM은 주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의회위원회는 정책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불만 신청은 1년에 한 건 정도이다. 주로 총리나 대통령이 신청한 것이므로 많지 않다.

IV. 맺으며

언론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이상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스위스에는 특별히 언론관계법이 존재하지 않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법 등에 의해 규율을 받는다.

오스트리아는 단일 언론법이 존재하며 이 법에는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신문과 방송에 반론보도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언론법에 의해 판결한다. 신문평의회는 2002년 해체된 상태이나 이를 재건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따르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내년 경에 새로운 모습으로 타나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콤포스트리아는 민영방송에 대하여, 연방커뮤니케이션평의회는 공영방송 ORF를 담당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에는 단일 언론법은 없으나 출판법과 방송법이 신문과 방송 분야를 규율하고 있다. 신문평의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과 통신, 인터넷 분야를 관할하는 AGCOM은 시청자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AGCOM은 방송에 오보가 있을 경우 해당 방송사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명령할 수도 있는데 방송사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문 신문사 3곳 모두 오보에 대하여 편집국에서



독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움부즈맨과 같은 전담 불만처리인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소송에 대비해 전문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방문국 모두 오보로 밝혀진 보도에 대하여는 동일 지면에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반론보도 등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과 오스트리아의 인터넷 언론에 대한 반론보도의 형태 즉, 원 기사 제목과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초기 화면에 표시하고 1개월 동안 게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정·반론 보도를 독자의 눈에 띄게 해

준다는 스위스 NZZ의 독자 배려 태도는 인상에 남았다.

신문 등 출판물의 명예훼손 보도와 관련하여 시찰국 대부분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기구는 독자의 만족을 주지 못하여 유명무실하였고, 신속하고 간이하며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보대응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를 벤치마킹하러 찾아오는 나라도 머지않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실무연수 보고서

기획혁신팀 최 승 민

I. 들어가는 말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언론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은 뉴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해외실무연수는 미국 명예훼손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명예훼손 소송의 판례 경향들을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 인터넷에 대한 미 법원의 해석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부즈맨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보므로써, 우리나라에 도

입된 음부즈맨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했으며, 미국 언론윤리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보고서는 해외실무연수 기간 동안 직접 만났던 언론관계 종사자들과 변호사 그리고 언론법제 및 언론학 관련 교수들의 대담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II. 미국의 법과 판례

1. 미국 명예훼손법의 주요 특징들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명예훼손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데, 그 근거가 수정헌법 제1조이다. 이러한 전통은 영국이 sedition과 libel을 수단으로 반정부적 출판물을 통제하려했던 미국 독립 이전의 식민지 시절(New England)에서 유래했다.

미국의 명예훼손법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민법(civil law)으로 처리한다. 몇 개의 주에서는 형법으로 취급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해 구금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명예훼손 소송은 금전적 보상으로 마무리된다.

미국의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각 주의 대법원이 최종 판결한다. 미국 연방법에는 명예훼손 조항이 없으며, 각각의 50개주는 약간 상이한 명예훼손 조항을 가지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을 판결하는 경우는 출판물의 연고지와 명예훼손 소송 원고의 연고지가 다를 때이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 출판되는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거주자가 소송을 할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가기도 한다. 명예훼손 소송의 약 75%는 각 주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지며, 나머지 25% 정도를 연방대법원에서 판결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예를 들

어 공공기관인 주립대학은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지만 사립대학은 가능하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보통 그 기관의 수장이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한다.

미국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불가능하다. 명예는 특정 개인의 것이고 가족에게 양도불가능한 것이라는 반(反) 귀족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는 방송매체보다 신문매체가 훨씬 많으며, 원고는 대체로 법인(corporation), 경제인, 연예인 그리고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피고나 원고들이다.

미국에서는 명백한 허위정보 유포만이 명예훼손 소송의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는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언론사)는 유포된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또한 의견 발표에 대해 특권이 보장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여부가 아닌 단순한 의견 발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의견에는 참과 거짓이 있을 수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alse idea)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정신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A는 B와 같이 잠을 잤다"는 명예훼손 소송이 될 수 있지만, "A는 편력이 심하다"는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공인(public figure)이 재판에서 승소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일반인은 명예훼손을 제기했을 때,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공인의 경우 피고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고의적인 악의(actual malice)를 가지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무모하게(reckless disregard) 허위를 유포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미국의 판례 동향

200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14건의 언론 관련 소송이 있었고, 그 중 언론사가 패소한 건수는 7건이었으며, 평균 손해배상액은 369,000 달러였다.

1980년 이래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들의 통계를 유지하고 있는 MLR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래로

2005년까지 총 531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14건으로 40.3%를 차지했다.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평균액은 290만 달러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언론이 승소한 경우는 51.4%였고, 101건(18.7%)만이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받았다. 원고가 승소해 받은 손해배상의 평균액은 290만 달러였는데, 최종심에서는 평균액이 140만 달러로 줄었다. 그러나 중앙값을 비교하면 손해배상 평균액은 27만 8천 달러였는데, 최종심에서 9만 5백 달러로 줄어들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판결의 경향이 보였는데, 첫 번째로 매년 상당한 정도로 소송의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는 매년 27건 정도였던 언론 관련 소송이 1990년대에는 18.8건으로, 최근 10년 동안은 평균 13.8건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언론사의 승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승소율은 1980년대에는 36.3%에 불과했는데, 1990년대에는 40.2%로, 최근 10년 동안에는 53.8%로 증가했다. 반면, 손해배상액의 규모는 점점 커졌다. 1980년대에는 21.8%

만이 손해배상액이 1백 만 달러를 넘었으나, 1990년대에는 30.0%, 최근 10년 동안에는 37.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손해배상액의 규모는 커지는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1980년대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61%를 차지했으나, 1990년도에는 51.2%, 지난 10년간은 전체 손해배상액 판결 중 73%만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87.6%는 명예훼손에 관련한 소송이었고, 잘못된 보도로 인한 소송이 9.1%, 사생활 침해가 5.7% 등이었다.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 제기한 소송은 247건으로 51.8%였으며, 공인이 사인에 비해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매체별로 살펴보면, 인쇄매체가 전체 소송 중 68.6%를 차지했다. 1980년대에는 인쇄매체의 승소율이 34.6%였으나, 1990년대에는

37.5%, 최근 10년에는 44.2%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쇄매체에 대한 소송은 전체 언론 소송의 감소 추세와 비교해 볼 때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인터넷 콘텐츠와 관련된 소송은 2건이 있었다. 그 중 한 건은 3백 7십 만 달러를 손해배상액수로 지불해야했다.

3. 인터넷과 명예훼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재판 관할권 문제다. 인터넷은 잠정적으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으므로 국제적·국내적으로 재판관할권 문제가 복잡하다. 두 번째는 소송 당사자 문제이다. Internet Service Provider(ISP)나 뉴스 포털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소송 주체가 복잡해졌다.

미국의 경우 재판관할권과 관련해 뉴스가 읽혀지는 지역이 아니

라 publication 지역의 법원에서 관할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primary publication에만 명예훼손을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 소송 당사자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개념적 문제는 당사자를 distributor로 볼 것인가 아니면 publisher로 볼 것인가이다. distributor는 내용을 전달하는 인프라 부분만 제공하고 제3자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정의된다. 전통적인 distributor는 전화회사·서점·도서관·극장 등이고, 전통적인 publisher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영화사 등이다.

1996년에 제정된 Communication Decency Act(통신품위법)¹⁾에 따라 Internet Service Provider(ISP)를 distributor로 규정하며, 포털도 이에 준하여 판결했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ISP는 Comcast, American Online, Verizon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포털은 Yahoo, Google,

1) 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 :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의 일부분으로 인터넷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1995년 의회에서 최초 발의될 때는 인터넷에서 obscene하고 indecent한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으나, 'indecent' 개념이 모호하여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indecent'라는 말이 삭제되었다. 그러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이 ISP를 publisher가 아닌 distributor로 규정한 203조 (Section 230)이다.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MSN 등이 있다.

인터넷과 관련한 명예훼손의 몇 가지 소송 사례는 다음과 같다.

American Online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통신품위법 203조 규정에 따라 ISP 및 포털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를 보장받는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어느 성인이 11살짜리 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담은 장면을 비디오에 녹화해 AOL 채팅룸을 통해 판매한 사건으로, 이 소년의 부모는 AOL이 이 성인이 채팅룸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물의 배포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플로리다주 법을 위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OL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AOL을 전통적인 publisher로 보는 것인데, 통신품위법은 AOL과 같은 ISP를 publisher로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또 다른 판례는 할리우드와 워싱턴 정가에 대한 가십 칼럼인 Drudge Report를 AOL에서 매달 3천 달러의 계약을 맺고 연재하던 중, Sidney Blumenthal이라는 워싱턴 정계 인사가 아내를 학대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칼럼이 문제가 돼 명예훼손 소송에 연루된 사건이다. 원고인 Blumenthal은 AOL이 계약을 맺고 칼럼을 연재했고, 그 칼럼의 게재 여부에 대한 통제권(reserved right)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AOL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OL이 칼럼을 게재할 권한을 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3자가 만든 내용을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한 ISP에게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에 따라 소송을 기각했다.

마지막으로 어느 여성의 헤어질 남자친구가 그녀의 누드사진과 더불어 자세한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야후 웹사이트에 게재하자, 이 여성이 야후에 연락하여 그 웹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야후 측에서 거절하여 야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가 만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ISP를 publisher로 취급하는 것인데 이는 통신품위법 20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4.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으로써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실현을 위해 정신은 반드시 자유로워야 한다. 신념이나 의견 또는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공유해야 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표현의 자유는 진실을 추구하고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요하다. 지식과 진실을 추구하려는 개개인은 모든 질문과 대안, 반대의견 그리고 충분히 다른 의견들을 들어야만 한다. 받아들여진 의견이 충분히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질지라도 토론은 열려있어야 한다. 광범위하게 사실이라고 알려진 것들도 나중에 틀린 것으로 판명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리 잘못된 정보나 유해한 의견이라도 똑같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록 전체로는 틀렸을 지라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세 번째,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 참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다. 이것은 특별히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는 독립선언서의 명제도 있듯이, 개인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통의 판단을 하는데도 전적인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 원칙은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서, 문화, 종교, 학문, 예술, 과학 그리고 모든 인류의 학문과 지식을 형성하는 데도 적용된다.

네 번째, 표현의 자유는 융통성 있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다. 사람들이 결정 과정에서 참여했다면 자신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결정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개된 토론은 좀 더 강력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으로 표현의 자유는 사회를 파괴하지 않고 사회가 진일보하는데 필요한 갈등 속에서 튼튼한 하부구조를 형성한다. 표현의 자유는 안정과 변화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메커니즘이다.

헌법에서 전제로 한 4개의 기본 조항은 미국 문화에서 특별하게

존재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은 개인의 역할을 보장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커뮤니티의 가치를 보다 보장하고 중요시하고 있다.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커뮤니티는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권이 중요하다. 이 권리는 언론도 포함된다.

1890년대에 개발된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개념은 4가지 범주가 있다. 첫 번째는 intrusion(침범)으로 사적 공간과 생활을 침범 받지 않을 권리다. 주로 물질적인 범주로 파파라치 등에 의해 침해받고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초기의 개념과는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두 번째는 사적인 일의 공개(public disclosure of embarrassing facts)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로, 주로 스포츠 영웅이나 전쟁영웅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공중의 오인(false light privacy)이다. 개인의 이름과 과거의 전력들을 보도한 것으로, 개인과 관련된 공적인 기록을 보도할 경우 소송에 걸릴 위험이 크다. 마지막으로 도용(appropriation, with the related "right of publicity")이다. 초상이나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의 상징을 상업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이 있다.

Ⅲ. 미국의 신문 윤리와 옴부즈맨 제도

1. 미국의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옴부즈맨 제도는 역사적으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 감시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언론 옴부즈맨 제도의 효시는 1916년 스웨덴에서 신문의 자율구제를 위해 '스웨덴 신문평의회'가 설립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행정 분야에서 시작되었던 옴부즈맨 제도는 미국에서는 public editor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

1960년대 미국의 신문에 대해 불신과 비난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미국의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국민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 오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면에 보도된 오보를 바로 잡는다면서 28면에 게재하는 식이었다. 특히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이 50년대와 60년대를 거쳐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부유한 이들이 대다수의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는 공화당을 지지했다. 또한 민주주의적

가치에 소홀하고, 뉴스의 내용이 센세이셔널리즘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뜻있는 신문들과 언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독자들에게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이 때 처음으로 미국에서 신문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지의 편집장이었던 Ben Bagdikian이었다. 그는 신문이 공중의 신뢰를 잃고 위기에 처해있다면 옴부즈맨 제도가 독자의 신문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피력하고, “어떤 용감한 소유주가 언젠가는 미국 신문의 궁극적 목적인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고 진력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그 신문 이사진의 한 사람으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뉴욕타임즈의 A.H. Raskin 기자는 옴부즈맨에 관한 구체적인 기사를 제시했는데, 뉴욕타임즈에서는 Raskin 기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Louisville Courier Journal에서 미국 최초의 옴부즈맨을 임명했다. 두 번째로 옴부즈맨 제도를 채택한 곳은 워싱턴포스트지였다.

옴부즈맨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한 Louisville Courier Journal는 자사에서 4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John Herchenroeder를 옴부즈맨으로 임명했다. 그는 신문에 대한 불평을 청취하고, 보도내용의 잘잘못을 밝히는 조사를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 또는 사과문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했다.

2. 미국 옴부즈맨 제도의 현황

미국은 현재 40여 개 신문사에서 옴부즈맨을 두고 있다. 미국에 1,400여 개의 신문사가 있는 것에 비하면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현재 옴부즈맨을 두고 있는 유력한 신문사는 뉴욕타임즈, 시카고 트리뷴, 워싱턴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이다.

많은 신문사들이 옴부즈맨을 두지 않는 이유는 신문사들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이다. 옴부즈맨을 고용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된다. 옴부즈맨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두어야 하고, 언론의 경력이 많은 이들을 옴부즈맨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비용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옴부즈맨이 동일한 일을 하

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맨은 뉴스나 칼럼 그리고 사진 등이 정확하고 공정한지 모니터링 하며, 뉴스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조사하고 응대한다. 대부분의 옴부즈맨은 한 주에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다. 칼럼에서는 기사의 잘못된 내용과 어떻게 뉴스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해 작성을 한다. 이 칼럼은 독자들이 저널리즘을 이해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옴부즈맨의 중요한 역할은 독자들과 기자들을 연결해주는 교역역이다. 독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달해줘 기자들이 이에 대한 심층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자들이 엄격한 취재 기준과 윤리 기준을 지키며 취재에 임하도록 도와준다.

옴부즈맨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잘못된 기사를 바로 잡는 것이다. 대부분의 옴부즈맨은 정정보도를 내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원보도문과 같은 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이후 신문

사들의 분위기는 많이 변화되었다. 옴부즈맨 제도 도입 이후 편집국 내의 분위기가 매우 긴장되어 있다. 편집국 내 긴장된 분위기는 기자들이 공정하고 진실한 기사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옴부즈맨의 의견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옴부즈맨과 기자 간에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은 논쟁을 하지 않는다. 옴부즈맨은 독자들을 위해 존재한다.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ONO(Organization of News Ombudsmen)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뉴스의 질, 정확성 및 균형성을 높이고, 독자들에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뉴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별적인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듦으로써 편집인의 시간을 줄여주고, 불평 제기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미국 언론윤리의 문제점

최근 20년 동안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많은 잡지들과 뉴미디어들이 생겨났지만, 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은 상업적인 성향이 더 강해졌다. 그럼으로써 언론의 윤리적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미국 언론의 몇 가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생활 침해이다. 일부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언론이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언론사의 소유구조의 변화다. 지난 25년 동안 미디어간 병합이 많이 이뤄졌다. NBC는 GE가 소유하고 있고, 디즈니는 ABC TV를 소유하고 있다. ABC는 디즈니 테마파크에 대해 우호적인 보도만을 하게 된다. 이렇듯 언론사의 ‘오너쉽’이 변화함으로써 언론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세 번째, 공공의 이익에 대한 정의 문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공공의 관심사를 보도한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테러리즘을 이유로 들어 일반 시민의 계좌와 이메일까지 검사하고, 전화 내용을 도청하는 등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다. 이를 뉴욕타임즈와 워

싱턴포스트지가 폭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며 대응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정부와 언론이 갈등을 빚고 있고 심지어 정부가 언론에 대해 협박하고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론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네 번째, 정보통신과 관련한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블로거 문제다. 블로거는 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널리스트다. 온라인을 통해 칼럼을 쓰면 기존 언론과 마찬가지로 수정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표절문제다. 언론사가 웹사이트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신속하게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경쟁적인 상황에서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걸러내야 하는 필터링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도의 정확성과 보도윤리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표절은 요즘 미국 저널리즘의 중요한 문제다. 기사를 다른 소스에서 가져와서 마치 자기 기사인 것처럼 작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문제로 취재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다. 몇 가지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 어느 기자가 취재원에게 1천 달러를 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취재원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순간 진실은 밝혀지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취재원은 돈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 문제는 새로운 환경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9.11 테러로 인해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적 안위라는 상충적 이해관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고 있다. 또한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언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란이 있고, 블로거의 출현은 일인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언론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 탓인지 연수 기간 동안 만난 언론학 및 법학 교수 그리고 변호사들은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언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을 소송이 아닌 조정절차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언론인들은 외부 기관에서 불만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오히려 움부즈맨을 통한 분쟁의 일괄 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다.

이번 해외실무연수는 미국의 명예훼손 소송 경향,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움부즈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연수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심도 있는 연구나 관찰, 실무에 대한 연수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한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연수가 이뤄지면 더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연수가 될 것이라 보인다. □

신문법과 방송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언론의 책임

고 창 실

제주중재부 중재위원,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강사

1. 들어가며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든가 혹은 정부 없는 신문이든가, 그중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하고 결단을 촉구한다면, 나는 일순의 지체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고 하여 언론자유를 중요성을 피력했다.

근대 민주주의 발달의 기초가 된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 프랑스의 인권선언 모두 고루,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언론자유를 선언했다. 민주주의의 시초는 신체와 언론자유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언론과 언론자유는 취재·보도·접근권의 범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막강한 권한을 구축, 제4부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권한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큰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하여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민주적인 여론 형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선도해야 할 책임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의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언론이 음란·퇴폐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문이나 방송이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엽기적인 범죄 사실이나 성폭력 범죄를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거나, 외설적 소설을 신문에 연재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를 자극할 우려도 있거나 청소년의 선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 신문의 연재소설만 하더라도 소설 속 두 주인공의 변태적 성행위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 물론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얼마든지 소설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것이 책으로 판매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또한 그것에 대해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란·퇴폐의 내용이 담긴 작품이 신문에 연재되는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영화도 마찬가지다. 선정성이 있는 영화 자체를 타하는 것이 아니다. 선정성이 있는 영화가 TV로 방영될 경우, 자칫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 등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작품이 지닌 표현의 자유와 함께 방송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은 건전한 가

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 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음란·퇴폐 또는 폭력성이 다분히 담긴 소설 또는 영화 등을 신문에 연재하거나 방송 등을 통해 상영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신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앞서 언론이 스스로의 의무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3. 방송이 표준말의 보급 등 공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TV를 하루도 보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공공장소마다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TV 시청은 우리의 일상생활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 등장하는 언어를 들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TV 드라마에 등장하는 20대 딸과 어머니의 대화를 화면을 보지 않고 듣기만 하면 모녀간의 대화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마치 친구끼리 대화하는 것으로 들린다. 근래 방영되는 TV 드라마의 대화 중에 20대 딸이 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개 어머니에게 반말을 한다. 그뿐만 아니다. 젊은 부부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남편을 '자기'라고 표현하더니만 근래는 '오빠'라고 표현한다. 이것도 화면을 보지 않고 음성만 들으면 부부 간의 대화가 아니라 젊은 남매 간의 대화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다. 오빠는 순위 오라버니인데 젊은 누이가 오라버니를 부둥켜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남편이 오빠일 수 있는가. 어느 순간에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 '아빠'에서 '자기'로, 또 '오빠'로 불리고 있다.

물론 당연히 해당 드라마는 작품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드라마가 영화관이 아닌 방송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 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는 방송법 제6조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이 당연하다. 그 드라마를 방영하는 TV가 공영방송이라면 더욱 그렇다. 공영방송이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며 언어순화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송법을 지키지 않고 표준말 보급을 방해하며 언어순화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나가며

신문이나 방송의 중대한 임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또한 보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이나 TV 영화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여과없이 정서적으로 미성숙 상태인 청소년 등에게 전달될 위험이 상존한다. 소설책이나 극장 영화에서 보여지고 전달되는 것과 가정에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것은 분명 다르다.

가정에 배달된 신문이나 방송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어서 '건전한 가정 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 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법의 규정을 신문이나 방송이 지켜야만 한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민족문화 창달에 역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한 여타의 법률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진찰로 성희롱」 제하의 기사에서
실명보도를 인정, 언론사 측 승소**

- 일본 도쿄고등법원 판결 -

니이가타시(新潟市)의 여성으로부터 「진찰 중에 セクハラ(sexual harassment의 준말·이하 ‘성희롱’으로 함)를 당했다」는 부당제소를 받았다고 보도한데 이어 제소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한 마이니찌(毎日)신문의 기사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고 사이다마(埼玉) 의과대학의 교수가 마이니찌 신문사 등에 합계 2,7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고심에서 도쿄 고법 제14민사부는 지난 8월 31일 「제소된 사실은 프라이버시로 보호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 마이니찌 측에 역전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교수 측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문제가 된 것은 『「진찰로 성희롱 행위」 사이다마 의과대학 교수 상대로 제소』라는 제목 아래 보도된 2000년 3월 7일자 조간기사로, 2005년 3월 14일 1심 도쿄 지법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여 마이니찌 측에 110만 엔의 지불을 명했었다.

그러나 도쿄 고법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적 직업에 있는 자의 직업상 행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사가 적시한 사실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원고의 이름은 행위의 주체를 특정하는 사안으로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교수 측은 9월 8일 상고했다.

(『신문협회보』, 2006년 9월 19일자) □

**미 연방지법, 취재원 증언을 명령
거부한 두 기자에게는 수감명령**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8월 15일 취재원의 비닉(秘匿)을 이유로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부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지의 기자 2명에 대해 증언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어 9월 21일에는 증언을 거부한데 대해 법정모욕죄를 적용, 수감명령을 내렸다. 수감명령은 가결정으로 내려져 고법에서 결정이 있기까지는 수감되지 않는다.

이를 계기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저널리스트의 취재원 비닉을 위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Shield law(수비권법(守秘權法)·기자의 취재원 비닉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취재원의 비닉에 대한 자세를 둘러싸고는 지방과 중앙 간에는 현격한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다.

증언 명령을 받은 것은, 랜스 윌리엄과 마크 파이널 와다 두 기자로, 메이저리그 약물 의혹을 보도한 일련의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스테로이드 사용에 관한 의회의 청문회, 약물테스트와 벌칙의 강화를 유도했다.

두 기자는 약물사용을 심리하는 대배심에서 정보원(源)을 밝히도록 검찰로부터 요청받고, 그 취소를 지법에 제소했으나 각하되었다. 크로니클 지는 이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 두 기자는 끝까지 취재원을 비닉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상급재판소에서 똑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두 기자는 법정모욕죄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대배심에서 증언을 거부한 자이언츠의 베리 본즈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는 28일에 재수감 되었다. 또한 지난해 CIA 공작원명 누설사건과 관련하여 증언을 거부한 뉴욕 타임즈 지의 주디스 밀러 전 기자가 수감된 사건도 있다.

취재원 비닉이라는 보도의 기본윤리를 지키다가 수감되는 사태가 계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크로니클 지, 콘트라코스터 타임즈 지 등 각 지는 저널리스트의 취재원 비닉권을 보장하는 연방 차원의 Shield law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사설과 기사를 계속 게재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 8월 21일 76명 의원 만장일치로, 연방의회에서의 Shield law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안자인 에반스 의원은 “프레스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초이며, 연방 차원에서 Shield law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위험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미국의 포인터 연구소에 의하면, 미국 전체 중 32개주와 워싱턴에서 Shield law 혹은 이와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자의 정보원 비닉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의 Shield law는 보도기관의 정보원 보호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연방의회에서의 Shield law 제정 움직임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초당파에 의해 새로운 Shield law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미 신문협회(NAA)를 위시하여 각 보도단체가 동법안의 지지를 표명했으며, 제정에 탄력을 불어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한 중대한 불안을 표명, 누설자의 조사와 엄중한 처분을 들고 나왔다. 한편 하원 본 회의는 지난 6월 29일 정부의 비밀정보활동 폭로를 비난하는 결의안

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러한 현 상황들이 의회에서의 Shield law 제정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6년 9월 5일자)



「취재원 비닉 위해 증언 거절할 수 있다」

- 일본 최고재판소와 도쿄 고등법원 판결 -

미국의 건강식품회사가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촉탁증인신문에서 요미우리(讀賣) 신문 기자가 취재원에 관한 증언을 거절한데 대한 당부(當否)를 가리는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지난 10월 17일 식품회사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증언거절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고법의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3일 동 법정은 NHK 기자에 대해서도 “취재원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기자의 증언거절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 요미우리신문 기자의 경우와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같은 날 도쿄 고법에서도 교도(共同) 통신 기자에 대해 증언 거절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취재원의 비닉이 인정되는 기준을 명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17일의 결정에서 “요미우리 신문 기자의 증언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도쿄 고법의 판단을 시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6월의 도쿄 고법 결정은 기자가 증언을 거부한 21개 질문항목 모두에 대해 거절을 인정했으며, 그 중에는 소속 조직·인원수 등 간접적으로 취재원의 정보를 묻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10월 3일의 NHK 기자에 대한 최고재판

소의 결정요지이다.

〈취재원 비밀·최고재판소 결정요지〉

『민사소송법은 공정한 민사재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누구나 증인으로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증언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197조 1항 3호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경우」,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의 비밀」이란 그 사항이 공개되면 당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이후 그 수행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해석된다.

어떤 비밀이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으로 바로 증언 거절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중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대해서만 증언 거절이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의 공표에 의해 발생할 불이익과 증언 거부에 의해 희생되는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성과의 비교형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관계자의 취재원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함부로 공개되면 보도관계자와 취재원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장차 계속되어야 할 자유롭고 원활한 취재활동이 방해되고 보도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이후 그 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원의 비밀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취재원의 비밀이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도의 내용, 성질, 그것이 갖는 사회

적인 의의·가치, 취재의 양태(樣態), 장차 동종의 취재활동이 방해를 받음으로서 발생할 불이익의 내용, 정도 등과 당해 민사사건의 내용, 성질, 그것이 갖는 사회적인 의의·가치, 증언을 필요로 하는 정도, 대체증거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도기관의 보도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국정에 관여하는 국민에게 중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상을 표명하는 자유와 함께, 사실 보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의 보장 하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보도기관의 보도가 공정한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도의 자유와 함께 보도를 위한 취재의 자유도 헌법 21조의 정신에 비추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재의 자유가 갖는 위에서와 같은 의의에 비추어볼 때 취재원의 비밀은 취재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취재수단과 방법이 일반의 형벌 법령에 저촉된다든가, 취재원이 된 자가 취재원의 비밀의 공개를 승낙하는 등의 사정이 없이, 더구나 당해 민사사건이 사회적 의의나 영향이 있는 중대한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취재원의 비밀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높고, 그것 때문에 증언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재원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해석

야 할 것이며, 증인은 원칙적으로 취재원과 관련 있는 증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신문협회보』, 2006년 10월 10일자, 10월 24일자) □

BBC,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위해 온라인 법률 수업 시행

BBC 저널리즘 대학은 기업의 모든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트레이닝의 일환으로 온라인 법률 수업을 시행한다.

‘온라인 법률’이란 트레이닝 과정은 미디어 법률을 중심으로 모든 BBC의 프로그램 제작자들과 프로듀서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상호작용 프로그램이다.

BBC 저널리즘 대학의 교장 빈 레이는 “우리는 BBC 내의 법률 트레이닝을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조사 결과 다른 어떤 형태의 트레이닝보다도 법률에 대한 트레이닝을 원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온라인 법률 트레이닝 코스의 핵심은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들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법률 트레이닝의 첫 단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며 내년부터는 두 번째 단계로 저작권과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BBC 5 Live의 니키 캠벨이 온라인 법률 트레이닝 과정을 지도하며 이 과정의 수강자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시나리오’를 통해 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BBC의 기자들은 첫 번째 온라인 코스를 6개월 이내에 끝낼 것으로 예상되며 총 3시간 정도 분량

의 코스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회사 컴퓨터를 통해 수업을 받게 된다.

(Press Gazette 2006년 9월 8일자) □

정보원 밝혀내기 위해 통화기록조사 인정, 취재원 보호에는 큰 타격

- 뉴욕 미연방고등법원 판결 -

미국의 뉴욕타임즈 지가 미 당국에 의한 이슬람계 단체의 수색정보를 사전에 입수, 수색 전에 보도한데 대해 뉴욕 미 연방 고법은 지난 8월 1일 1심 판결을 번복, 정보원을 밝혀내기 위해 정부가 동 신문의 두 기자의 통화기록을 조사해도 좋다는 판결을 언도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기자의 한 사람은 미 중앙정보국(CIA) 공작원 명 누설 사건에서 취재원을 지키기 위해 대배심 증언을 일시 거부하여 형무소에 수감된 주디스 밀러 전 기자로 밝혀졌다. 이번 고법의 판단은 정보원 보호를 전제로 하는 보도 기관에 새로운 타격이 되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밀러와 그의 동료기자는 2001년 미 당국이 이슬람계 자선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수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색 전에 단체 측에 전화 취재하여 이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피츠제럴드 특별검사는, 전화취재는 수색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수사에 나서 정보원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동 신문은 이를 거부, 통화기록이 정부의 요구에 의해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

(『신문협회보』, 2006년 8월 8일자, 9월 26일자) □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청이 설치한 풍력발전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해 예산낭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청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유○○

피신청인 : 중앙매일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0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중앙매일 : 『유성구청 갑천변 가로등 ‘무용지물’』 제
하의 기사 (2006년 9월 5일자 1면)

내 용 : 유성구청이 지난 5월, 갑천변에 설치한 풍
력발전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성구청은 야간에 갑천변에서 조깅 등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을 위해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력을 자

체 생산하는 가로등을 1본에 1천 3백만 원씩 총 1
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10본을 세웠다.

유성구에 앞서 중구가 중촌동 중앙고 뒤편 하상도
로변 공원에 세운 가로등 가격이 1주에 3백만 원~4
백만 원인데 비해 터무니 없이 고가인 유성구 풍력발
전 가로등은 그러나 풍력이 예상 기대치에 못미쳐 전
력생산을 못하고 프로펠러는 단지 가로등 장식품 역
할만 하고 있다.

당초 설계도라면 프로펠라에서 발생하는 예상전력
은 400W로 가로등 1본의 공급가는 일반 가로등 가격
에 버금가는 270만 원이지만 무용지물로 전락한 상
태이다.

가로등 설치업체 관계자는 “해안가와 산 정상에서
는 바람을 이용한 전기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갑
천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풍속이 약해 발전을 기
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먹구구식 용역과
설계 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로
담당공무원과 설치업체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의혹의 눈초리와 함께 꼬집었다. (중략)

유성구 담당공무원은 “풍력발전가로등을 설치 했
으나 시험결과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현재는 경관
가로등으로 변경해 설치했다”며 “사후조치 보다는
시설유지에 신경을 쓰는 형편”이라고 궁색하게 말

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2006년 9월 5일자 1면에 『유성구청 갑천변 가로등 ‘무용지물’』이라는 제목으로 ‘유성구 풍력발전가로등은 풍력이 예상기대치에 못미쳐 전력생산을 못하고 프로펠러는 단지 가로등 장식품역할만 하고 있다. 가로등 설치업체관계자는 “해안가와 산 정상에서는 바람을 이용한 전기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갑천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풍속이 약해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먹구구식 용역과 설계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로 담당공무원과 설치업체의 결탁이 아니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의혹의 눈초리와 함께 꼬집었다. 유성구 담당공무원은 “사후조치보다는 시설유지에 신경을 쓰는 형편”이라고 궁색하게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갑천변의 경관용 가로등의 블레이드는 발전용이 아닌 순수경관용으로 부착된 것이며 블레이드를 포함한 가로등 전체에 대한 설계는 전문업체의 용역설계에 의해 전기 및 건설공사 등은 정부표준품셈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등을 적용했으며, 관급자재는 조달청 입찰에 의하고 도급분은 제한경쟁전자입찰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 설치업체와 공무원간의 결탁이 전혀 없었고 예산의 낭비 또한 없었으며, 사후조치보다는 시설유지에 신경을 쓰는 형편이라고 말한 사실 또한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2006년 9월 25일자 1면에 『유성구청 갑천변 가로등 무용지물』 제하의 기사에서 유성구 풍력발전가로등은 풍력이 예상기대치에 못미쳐 전력생산을 못하고 프로펠러는 단지 가로등 장식품역할만 하고 있다는 내용과 가로등 설치업체 관계자의 ‘갑천의 기후조건을 고려할 때 풍속이 약해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먹구구식 용역과 설계자체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로 담당공무원과 설치업체의 결탁이 아니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멘트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갑천변 가로등의 블레이드는 발전용이 아닌 경관용으로 부착한 것이며, 블레이드를 포함한 가로등 전체에 대한 설계는 전문업체에 용역에 의해, 전기 및 건설공사 등은 정부표준품셈의 기준과 한국산업규격등을 적용했으며,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구입의뢰하고 도급분은 제한경쟁전자입찰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져 예산낭비나 설치업체와 공무원간의 결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매일 2006년 9월 29일자 2면 하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소제목(가로등 10분 가격...)과 같게 하고, 내용은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앙매일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9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교육인적자원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절반을 행정직으로 발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8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 신 일)

피신청인 : 세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5.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세계일보 : 『고구려 연구 손 놓았다』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6일자 1면)

내 용 : (전략) 학계는 지난달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하고 동북아시아의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출범했다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고구려연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흡수된 17명의 고구려연구재단 연구 인력 태반이 행정직 등으로 밀려난 게 이를 방증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측은 “정확한 인력 배치는 알지 못하지만 연구 인력중 전략기획실, 행정실, 교류홍보실에 각각 1~2명씩 배치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사 문제를 시인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9월 6일자 『고구려 연구 손 놓았다』 제하의 기사에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17명 중 절반 행정직 발령”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고구려 연구재단의 연구원 18명과 직원 9명을 전원 채용할 예정이고, 연구원을 행정직으로 발령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 18명중 14명은 연구실에, 4명은 전략기획실 및 교류홍보실에 배치한 것”이며, 이는 “연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동북공정 문제에 대하여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의 9월 6일자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중 절반 행정직 발령’이란 기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고구려연구재단의 연구인력을 승계할 예정이고 연구원 18명 중 4명을 전략기획실·교류홍보실에, 4명을 1·3연구실에 배치한 것은 동북공정 문제에 학술 연구와 함께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세계일보 2면 우측 하단에 보도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2호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10월 1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세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4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사행성오락 관련
상품권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89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이종걸
 피신청인 : 조선일보
 종재부 : 서울제5종재부
 접수일 : 2006. 9. 25.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여야증진에 후원금 뿌렸다』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22일자 A1면)

내용 :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원과 우상호 대변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사용된 경품용 상품권 업체 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선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4~2005년 고액 후원금 기부자 명단과, 문화관광부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받은 19개사 중 주요 주주 및 임원 명단이 공개된 일부 업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략)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작년 2월 같은 회사의 김OO 이사에게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조선일보사는 지난 2006년 8월 22일자 1면 『여야증진에 후원금 뿌렸다』라는 제목으로 이종걸 의원도 작년 2월 (주)한국문화진흥의 김OO 이사에게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바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기사로서, 사실은 후원인 김OO은 이종걸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2005년 2월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주)한국문화진흥의 이사가 되었으므로 후원금 낼 당시는 상품권업체인

(주)한국문화진흥의 이사가 아니었고, 이종걸 의원은 (주)한국문화진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저희 조선일보사는 허위기사로 인하여 이종걸 의원의 명예에 심대한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반성하며 동시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내 용 : 본지의 8월 22일자 ‘바다이야기 관련 상품권업체들 후원금’ 기사에서, 이종걸 의원이 2005년 2월 상품권업체인 (주)한국문화진흥이 김OO 이사로 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김OO씨가 (주)한국문화진흥 이사가 된 것은 금년 5월이므로 이 의원이 상품권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조선일보 2면 ‘바로잡습니다’ 코너의 맨 앞부분에 2006년 10월 2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18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기획예산처가 왜곡된 설문조사와 통계자료를 토대로 유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91

청 구 명 : 정정 · 반론청구

신 청 인 : 기획예산처 (장관 장 병 완)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9. 27.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एं터리 통계로 만든 ‘비전2030’』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8일자 A3면)

내 용 : 지난달 말 정부는 복지국가 청사진으로 ‘비전2030’을 발표했다.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2030년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소개했다. 왜 하필, 세대가 바뀌는 24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뒤인 2030년을 목표로 정했을까.

이런 궁금증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정부는 ‘비전2030’을 준비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적절한 국가비전 수립 기간’을 묻는 질문에 2030년을 지적한 응답자는 24.4%였고, 67.4%의 응답자는 2015년을 선택했다. 10명중 7명 꼴로 당장 9년 뒤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전 2030’을 발표했다.

‘비전 2030’을 만든 기획예산처 관련자에게 “왜 국민들이 원하는 2015년이 아니라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발표했느냐”고 물었더니, “정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정부의 판단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또 한가지, KDI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만약 귀하가 선진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느냐”고 질문하고, ①미국과 같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수준은 낮지만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 ②북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내

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 중에서 고르도록 했다. 그 결과 67.8%가 2번을 선택했다. 이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이 늘더라도 복지 혜택이 많아지는 국가를 선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한 선호도를 일반 국민의 일반적 선호도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렇게까지 통계를 왜곡하면서 국민들에게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까.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 반론보도문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18일자 A3면에 『एं터리 통계로 만든 비전 2030』 제목으로 비전 2030 수립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민들은 정작 2015년까지의 청사진을 원하였으나, 정부는 203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민이라는 특정상황을 전제로 한 선호도를 일반적인 선호도로 둔갑시켰으며, 유럽형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비전 2030 준비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하자 없는 통계자료이며, 비전 2030 보고서는 특정 경제모델을 홍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2015년까지만의 비전을 제시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2016년, 총인구가 줄어드는 2020년 이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없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2015년을 포함하는 2030년까지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며, 설문조사시 사용한 ‘이민을 간다면’이라는 가정은 상황설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기술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밝혀왔습니다
- 내 용 : 본지 9월 18일자 A3면 『엔터리 통계로 만든 비전 2030』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비전 2030'은 KDI 내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경제정보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만든 통계로 작성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경제섹션 2면에 2006년 10월 25일까지(토요일제외) 위 보도문을 증전 쌍방 반론보도해 온 양식에 따라 게재하되, 제목은 본문활자크기보다 한 급수 큰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0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아시아일보 : 『자연훼손사업? 자연보존사업?』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13일자 사회면)

내 용 :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경산연)가 국내 제일의 숲체험장인 잣 향기 푸른 교실 조성으로 지난해 대상 지역 계곡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계곡일부가 장마에 유실되는 등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경산연에 따르면 '잣 향기 푸른 교실'이 조성될 사업내용에 숲 관찰로 및 숲 체험학교 등 주변 인근계곡 폭이 너무 좁아 장마 시 범람의 위험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곡의 일부를 확장하는 토목공사를 했다.

그러나 관련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오탉수가 발생, 소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계곡 일부가 유실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산연이 전문 건설사업자가 아닌 가평군산림조합(조합장 이○○)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아시아일보는 2006년 9월 13일자 사회면 『자연훼손사업? 자연보존사업?』 제하의 기사에서 “‘잣 향기 푸른 교실’이 조성될 사업내용에 숲 관찰로 및 숲 체험학교 등 주변 인근계곡 폭이 너무 좁아 장마 시 범람의 위험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곡의 일부를 확장하는 토목공사를 했다. 관련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경산연 관계자는 “소하천의 경우 관련청의 점용허가를 몰라 못했으며, 전문 건설업자가 아닌 가평군 산림조합은

신청인 조합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2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가평군산림조합 (조합장 이○○)

피신청인 : 아시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2

로 사업자를 선정해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평군산림조합은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계곡 폭이 너무 좁아 장마 시 범람의 위험과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곡의 일부를 확장하는 토목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집중호우시 임야와 농경지에 피해가 극심한 황폐개천의 바닥과 기슭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하였으나, 본 사업의 사업지는 하천이 아닌 임야로 되어 있어 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본 사업은 산림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인 사방사업으로서 산림조합법과 사방사업법에 따라 가평군산림조합에서 실행하였기 때문에 '전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산림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마구잡이식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9월 13일자 사회면 『자연훼손사업? 자연보존사업?』 제하의 기사에서 “갯 향기푸른교실”과 관련하여 가평군산림조합은 사방사업을 시행할 자격을 갖춘 산림토목기술자를 보유한 전문기관이며, “갯 향기푸른교실”사업과 관련한 토목공사는 관련법에 의해 하천 또는 산지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집중호우시 피해가 심한 계천의 바닥과 기슭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고자 실시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아시아일보> 사회면에 2006년 10월 20일까지(토요일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의 소제목과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아시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0일자 19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연합회가 언론중재위에서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6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 (이사장 김○○)
2 김○○

피신청인 : 한국목재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1.

처리결과 : 합 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한국목재신문 : 『재활용업연합회, 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1일
자 사설면)

내 용 : 본보 7월 1일자에 '인천 제재업계, 폐기
물 처리 뜨거운 감자'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사)
자원재활용업연합회의 회장은 명예훼손과 사실이 아
닌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본사를 언론중재위원
회에 제소했다.

중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내용이 정정보도 대상은 아니나 연합회를 취재하지 않고 보도한 점을 들어 편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본사는 이 점을 인정하고 반론보도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 취하해 일단락했다.

자원재활용업연합회 측은 정당한 홍보활동이었다고 하지만 방문 받은 제재소에서는 위협적이었다고 말했으며, 본사의 취재확인을 통해서도 다분히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명예환경감시증을 가슴에 착용하고 들어간 사실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권이 있는 자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보이게 달고 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다”고 한강구역 환경청 담당자는 밝혔다. 이 연합회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 연합회가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본사의 취재가 모 단체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범지식과 언행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법을 지키라고 홍보하는 연합회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이권이 분명히 있는 이 단체는 홍보활동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견해다.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라면 다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 관련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8월 1일자 사설면에 『재활용업연합회, 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 제목으로 중재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본보 7월 1일자 ‘인천 제재업체, 폐기물 처리 뜨거운 감자’라는 기사내용이 정정보도대상은 아니다’, ‘재활용업연합회는 반론보도를 내주는 것으로 합의취하했다’, ‘연합회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 연합회가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권이 분명히 있는 이 단체는 홍보활동

에 좀 더 신중하게 활동해야 한다’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내용이 정정보도내용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으며 연합회가 반론보도문 보도에 합의한 적은 있으나 취하 대상이 되는 내용(민, 형사상 책임 포함)도 없을뿐더러 취하한 사실도 없으며 연합회가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는 이권단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7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재활용업연합회” 관련 정정보도
- 본 문 : 본지는 지난 8월 1일자 오피니언면 『재활용업연합회, 본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한국자원재활용업연합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청구한 기사는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어서 반론보도로 합의 취하되었고, 연합회 회장이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중재위원회에서 연합회가 신청한 조정대상 기사가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회장이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목재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사설란 하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활자와 같은 크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보도와 링크시킨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

청구와 목재신문 7월 1일자 1면 “인천 제재업체...” 제하의 기사 및 8월 1일자 사설 “재활용업연합회 언론중재위에 제소”와 관련된 형사상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국목재신문 : 『‘재활용업연합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16일자 2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해썹기준원 설립이 농가들의 비용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07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농림부 (장관 박 흥 수)

피신청인 : 농민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6. 10. 1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농민신문 : 『해썹기준원 설립 ‘산넘어 산’』 제하의 기사 (2006년 9월 27일자 8면)

내 용 : 농림부가 주도하고 있는 해썹(HACC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기준원 설립이 농가들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농림부는 축산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일 발

기인대회를 마친 다음 25일 총회 및 이사 선임을 마무리해 해썹기준원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연직 이사로 참여키로 한 축산단체장이 농가 부담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20일 발기인 서명을 미뤄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최근 기준원장 연봉의 과다 책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중략)

또 농림부가 해썹기준원 설립 때까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축산단체에 2,000만 원을 요구한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농민신문은 지난 9월 27일자 8면에 『해썹기준원 설립 ‘산넘어 산’』 제목으로 해썹기준원 설립에 대해 농가들의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밝혀왔습니다.

해썹기준원은 '04년 7월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수립시 해썹 적용 대상을 사육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 및 해썹 평가기준 등을 통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썹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공무원의 담당인력으로는 해썹지정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별도의 전담 조직을 통하여 수행키로 하고 “(가칭) 축산물해썹기준원”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동안 설명회, 준비인 모임, 발기인 모임 등을 주선하였고 축산단체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해썹 지정비용, 기준원장 연봉 등은 책정된 바 없습니다.

또한 해썹기준원 설립 추진을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모임 외에도 관계기관과 축산단체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단법인의 주체는 회원이며, 회원들이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하여 정관,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해썹 지정비용과 급여 등도 이런 절차를 걸쳐 확정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 사단법인 축산물해썹기준원은 창립되었으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정관 등 규정이 의결되었고 기준원장도 선출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든 사항의 결정은 회원들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해썹기준원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 및 연구검토 내용,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농림부의 입장을 취재 보도하기로 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농민신문> 2006년 10월 31일자 이전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 보도와 링크시킨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농민신문 : 『해썹기준원 안전성 향상 주도해야』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7일자 9면)

내 용 : 농림부가 18일 사단법인 '축산물 해썹기준원' 설립을 정식 허가하면서,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는 축산업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썹기준원은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 적용 대상을 사육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늘어나는 해썹 지정 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됐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올 6월 해썹기준원 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으며, 9월 28일 창립총회를 거쳐 이달 18일 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11월 초순께로 예상되는 농림부의 지정 고시 절차만 마무리되면, 축산물 해썹기준원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 해썹기준원은 주요 사업으로 해썹 적용작업장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해썹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위생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펼치고 기타 기준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해썹이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조직과 인원의 한계 등으로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에 축산물 해썹기준원 설립을 계기로 사육·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축산물의 안전성 향상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은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위생과 안전성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해썹기준원은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림부는 축산물 해썹기준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공급받는 포털사이트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는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자. 판결(2005가단18300)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김승곤 판사) 재판부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하 원고)이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와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씨비에스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노컷뉴스팀 소속 기사가 2005. 3. 8.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이 기자와 대화 도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현미 대변인’을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 기사는 곧바로 피고 씨비에스아이와 뉴스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피고 엔에이치엔의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피고들을 상대

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원고가 이명박 시장에 대하여 기사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 시장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엔에이치엔에게 전송하였고, 피고 엔에이치엔은 이를 그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엔에이치엔이 자신들은 “기사 작성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엔에이치엔으로서는 기

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피고 엔에이치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엔에이치엔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 엔에이치엔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단18300 손해배상(기)
 원 고 : 전 여 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 회관 81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두 아
 피 고 : 1.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빌딩
 대표이사 김 범 수
 2.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서울 양천구 목동 917-1
 대표이사 이 정 식, 정 남 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 명
 담당변호사 박 중 윤, 김 민 정
 변 론 종 결 : 2006. 8. 25.
 판 결 선 고 : 2006. 9. 8.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피고 엔에이치엔’이라고 한다)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이하 ‘피고 씨비에스아이’라고 한다)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 간의 기사 및 정보제공 체계

(1)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4. 9. 30. 피고 씨비에스아이와 사이에 네이버 뉴스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씨비에스아이로부터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작성한 기사를 제공받고 있었다.

(2)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노컷뉴스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컷뉴스팀의 기자가 씨비에스 노컷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사 내지 정보를 등록하면 노컷뉴스팀이 편집을 한 후 이를 씨비에스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씨비에스 서버에 저장된 기사와 정보는 다시 1분 간격을 두고 자동으로 피고 엔에이치엔이 운영하는 서버에 그대로 전송된다.

(3) 피고 엔에이치엔은 피고 씨비에스로부터 전송

받은 기사와 정보를 '네이버'에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되 기사제목만을 기사 내용에서 뽑아 링크를 걸어 이용자들이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와 정보의 내용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4) 피고 엔에이치엔은 2005. 1. 31. 피고 씨비에스아이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기사 수정 및 삭제 요청 시 반드시 피고 엔에이치엔의 네이버 뉴스팀 대표메일로 요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오보(誤報)의 작성 및 게재 경위

(1) 피고 씨비에스아이의 노컷뉴스팀 송○○ 기자는 2005. 3. 8.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이 기자와 대화 도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현미 대변인’을 ‘전여욱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하였다.

(2) 위 나.항에 따라 위 기사가 같은 날 18:50경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사진과 함께 자동 전송되었고, 피고 엔에이치엔은 같은 날 19:00경 분야별 주요뉴스 중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욱,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였다.

(3) 위 기사가 게재된 지 50여분이 지나 씨비에스의 청취자로부터 기사가 잘못 되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씨비에스 측에 왔고,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같은 날 19:51경 위 기사 중 ‘전여욱 대변인’ 부분을 ‘김현미 대변인’으로 수정하였으며, 네이버에 게재된 기사도 자동으로 수정되었다.

(4)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위 기사가 수정되었으면 나.(4)항에 따라 이메일로 수정요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엔에이치엔에 즉시 이메일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피고 엔에이치엔에 통보를 함에 따라, 제목은 같은 날 21:30경에 이르러서야 수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씨비에스아이는 원고가 이명박 시장에 대하여 기사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같은 당 소속의 이명박 시장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엔에이치엔에게 전송하였고, 피고 엔에이치엔은 이를 그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하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어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엔에이치엔은 위 기사작성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피고 씨비에스아이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 엔에이치엔으로서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피고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엔에이치엔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책임 범위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점, 네이버가 최대 포털사이트로서 이 사건 기사가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게재되어 그 파급효과가 큰 점,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말미암아 원고가 오해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 다만, 피고들이 고의로 이 사건 기사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잘못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작성 후 50여 분이 지나 곧바로 내용을 수정한 점, 기사 수정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 대한 오해가 풀려 위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승 곤

□

판결 2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일명 ‘안기부 X 파일’에 등장한 화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가 보인 보도행태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7. 자(2005가단59554)

사실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김도현 판사) 재판부는 조선일보(이하 원고)가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소속 기자(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들이 2005. 7. 29. 「뉴스플러스 앰니움 니」 프로그램 『권력과 언론, 그 검은 커백션』 제하

의 보도를 통해 “일명 ‘안기부 X 파일’ 내용을 보도하면서 1997년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 문제에 관해 원고가 보도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해 방송함으로써 원고가 마치 김대중 후보만을 집중 공략하는 기획 기사를 따로 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안기부 X 파일’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사실로 단정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악의적 태도를 가지고 원고에 관한 사항을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여론형성과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홍석현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편향적인 보도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므로, 그 대화내용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가단59554 손해배상(기)
 원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상 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피 고 : 1.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문 순

2. 윤 ○ ○

3. 서 ○ ○

피고 2, 3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주식회사 문화방송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전 태 진

변 론 종 결 : 2006. 8. 23.

판 결 선 고 : 2006. 9. 27.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1) 원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 함)은 ‘MBC’라는 매체명으로 전국 일원을 그 방송권역 및 가시청권으로 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뉴스플러스 암니옴니’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피고 윤○○, 서○○는 피고 회사 소속의 기자들로 2005. 7. 29. 뉴스플러스 암니옴니를 진행한 사람들이다.

(2) 뉴스플러스 암니옴니는 일주일에 1회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난 특정사건에 대한 신문, 방송 등 여러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비평을 하는 이른바 매체비평프로그램이다.

(3) 피고 회사는 2005. 7. 29. 22:55경부터 23:45경

까지 ‘권력과 언론, 그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소위 ‘안기부 X 파일’에서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언론과 재벌, 그리고 권력의 유착관계를 방영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관련된 방영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행매체인 조선일보, 주간조선, 월간조선 등을 통해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거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들은 그 보도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방송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김대중 후보만을 집중 공략하는 기획 기사를 따로 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근거로 삼은 X 파일의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그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고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고를 “스스로 권력화하는 무소불위의 매체”라는 등으로 모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방송하였다.

(3) 원고는 피고들의 이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로 말미암아 대외적 신용이 크게 실추되고 그 업무를 방해받는 등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건전한 매체비평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방송을 한 것이며, 이 사건 방송내용

과 같이 원고가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보도를 하고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부각하여 보도한 것은 사실이다.

(2) 설사 이 사건 방송내용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방송은 위법하지 않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방송의 경위와 그 내용

(1) 피고 회사 소속의 이○○ 기자가 확보한 안기부 도청 녹음테이프와 그 녹취록(소위 ‘X 파일’)의 내용이 2005. 6.경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던 홍석현과 삼성그룹 비서실장인 이학수 사이에 오고 간 각 대선 후보자들의 근황과 삼성그룹의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문제 등에 관한 대화들이다.

(2) 원고는 2005. 7. 22.과 7. 24. 조선일보의 사실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와 더불어 X 파일의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가, 중앙일보가 2005. 7. 25. 1면과 3면 기사를 통해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 없다’, ‘조선·동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역겨워’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원고)와 동아일보도 그 임원들의 대화내용이 도청되어 그 치부가 다 알려졌으니, 중앙일보에 초상이 났다고 좋아서 그러지 마라, 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전 안기부 도청팀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면서 X 파일의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국정원의 불법도청행위를 더 문제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2005. 7. 27.부터는 X 파일 사건의 초점을 중앙일보와 같이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맞추어 보도하였다.

(3) 이에 피고들은 원고와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이 X 파일 사건의 본질을 자본, 언론 그리고 권력 사이의 유착 내지 야합에 관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두지 않고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보고 2005. 7. 29. 이 사건 방송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음에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선후보자에 대한 삼성의 정치자금 전달 문제, 중앙일보의 당시 신한국당(뒤에 '한나라당'으로 당명 변경) 이회창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 보도 문제 등을 다루다가, 이어 X 파일 중 별지 2. 기재와 같이 홍석현과 이학수 사이에 오고 간 원고 관련 대화내용, 즉 '조선일보 방 씨 일가가 모여 차기대통령 문제를 논의한 끝에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막기로 결론을 내고 이를 위해 김대중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인 건강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함. 조선일보 기자들이 김대중 후보가 치료받는 병원에서 야간 잠복근무를 하고 있고, CT 촬영결과도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10월 21일경 주간조선이나 월간조선을 통해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터뜨릴 예정임'이라는 홍석현의 말을 근거로, 원고도 1997년 대선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권력 만들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홍석현의 대화내용대로 1997. 10. 20. 자 조선일보, 1997. 11. 20. 자 주간조선, 1997년 12월 호 월간조선 등을 통해 김대중 후보에 대한 건강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방송하였다.

② 그리고 계속하여 1997년 대선 당시 원고 및 중앙일보와 신한국당 사이의 우호적 관계, 원고와 중앙일보의 반 김대중 친 이회창 성향, 1992년과 2002년 대선에서의 원고와 중앙일보의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태도 등을 통해 원고와 중앙일보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당과 유착관

계를 맺고 그 정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나 공정보도의 원칙을 포기하였고, 스스로 권력화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하였다.

③ 이어 X 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일보가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X 파일 사건의 본질을 도청의 불법성으로 몰아가고 있고, 원고와 동아일보도 당초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던 입장에서 돌아서 중앙일보와 같이 X 파일 사건의 초점을 불법도청의 문제로 바꾸었다는 내용과 함께 피고 회사, SBS, 문화일보 등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X 파일 내용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다는 내용을 방송한 뒤, "거대재벌의 부도덕한 면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들. 재벌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가 바로 독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라는 피고 윤○○의 말을 끝으로 이 사건 방송을 마무리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 전에 위와 같은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의 대선관련 보도 내용과 그 성향

(1) 원고는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행매체인 조선일보를 통해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10여 회 걸쳐 거론하였는데, 주로 상대방인 한나라당 선거관계자의 발언이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등을 보도한 것이었고, 원고 이외의 대부분의 언론도 당시 각 당의 정치적 공방 속에서 나오는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1997. 10. 20. 자 '대선후보들 건강과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총재 등산, 이 총재 축구, 이 전(前) 지사는 춘천마라톤 참가신청'이라

는 소재목을 달아 김대중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를 보도하면서, 김대중 후보에 관해서만은 소재목 없이 그 기사 말미에 '산책과 맨손체조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고, 1997. 10. 25. 자 '대정부 질문 초점'이라는 기사에서는 다른 신문들이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김대중 후보의 건강, 비자금 수사 연기 문제와 함께 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신한국당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을 보도한 것과 달리 김대중 후보의 건강과 비자금 수사 연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2) 원고는 1997. 11. 20. 자 주간조선의 '경쟁후보가 보는 강점과 약점'이라는 기사를 통해 신한국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3당에서 선정한 선거기획 핵심인사 2인이 들고 있는 상대후보의 강점과 약점을 보도하였는데, 주로 이회창 후보에 대하여는 두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가, 김대중 후보에 대하여는 건강문제가, 이인제 후보에 대하여는 경선불복 문제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었다는 내용이었다.

(3) 원고는 1997년 12월호 월간조선의 '대선 3후보 최대약점 집중추적'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두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에 관해,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건강문제에 관하여 심층적인 취재를 하여 보도하였는데, 김대중 후보와 관련된 내용 중에는 '입수한 처방전에 따르면 김대중 후보가 당뇨치료제 두 가지(유글루콘과 글루고바이), 혈압강하제 한 가지(스프렌딜), 콜레스테롤 치료제 두 가지(리판틸과 메바코드), 통풍치료제 한 가지(자이로릭) 등 여섯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4) 한편, 원고와 중앙일보는 1997년 대선 당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신한국당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이회창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대선 상황을 이회창과 김대중의 양자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등 선거 상황을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보도하면서도, 그 상대방인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색깔론, 반DJP연대, 비자금 폭로 등으로 공격하고, 이인제 후보에 대해서는 대선 상황이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대결로 압축된 것처럼 편파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고, 근거 없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국민신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편파적으로 이회창 후보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당시 위와 같은 원고와 중앙일보의 편향보도로 인해 원고와 중앙일보가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내지 3, 5 내지 8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 단

가.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여부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

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은 X 파일 사건과 관련하여 그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우선시하는 피고들과 달리 원고와 중앙일보가 국정원의 불법도청행위를 더 문제시하며 진실규명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그러한 원고와 중앙일보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원고 및 중앙일보와 재벌 및 특정 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유착관계의 전형적인 사례로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행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방송의 경위와 내용, 그리고 원고와 중앙일보가 국민의 여론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내 유수의 언론사인 점,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방송에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지난 대선에서의 보도행태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X 파일 사건과 관련한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갑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와 중앙일보를 포함한 일부 언론

을 '추악한 커넥션의 당사자, 권력과 언론의 검은 커넥션, 독자를 완전히 우롱하는 신문, 스스로 권력화하는 무소불위의 매체, 국민의 알권리나 공정보도의 원칙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진 부도덕한 권언유착, 그 부정의 뿌리, 신문사들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자사의 이익, 혹은 재벌의 권력' 등으로, 원고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정권과 문민정권 창출 과정에서 대통령 메이커의 역할을 자임한 조선'으로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방송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원고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거나, 그것이 원고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 여부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의 보도내용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방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홍석현은 국민의 여론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굴지의 언론사인 중앙일보의 사장인 점, 그 대화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복용하고 있다는 약의 이름까지 보도한 1997년 12월호 월간조선의 내용과 홍석현의 대화내용이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 점, 원고와 중앙일보가 1997년 대선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근거한 이 사건 방송 중 원고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들

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

다.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 조각

결국,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관한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홍석현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편향적인 보도행

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대화내용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방송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허위의 내용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 사 김 도 현



일본 판결

공립중학교 교사인 원고의 행동에 대해 「수업에 의문을 갖는 학부모를 중상하는 프린트를 배포하고,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전학하게 됨으로써 교육위원회가 개입, 연수발령이 내려졌다」고 기술하고, 이를 기초로 논평을 가한 사설에 대해 피고의 항변이 긍정되어 명예훼손 성립이 부정된 사례

원 고 : 甲野花子

피 고 : 주식회사 산업경제신문사

도쿄지법 2005(7) 제1546호, 손해배상청구사건

2006. 5. 29 민사 제42부 판결, 청구기각·항소

2006년 2월 27일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금 240만 엔 및 그 중 금 200만 엔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30일부터, 40만 엔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9일부터, 각각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사실 및 이유

제2. 사실의 개요

제1. 청구

1. 사안의 요지

본 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피고가 발간하는 産經新聞(이하 「産經신문」으로 한다)의 2002년 1월 30일자 조간의 「주장」란(사설)에 「문제 교사 조속히 교단에서 추방하라」는 표제 아래 『『지상토론』(紙上討論)으로 칭하는 사회과의 수업에서 반일적(反日的)인 교육을 한 東京都足立區의 여자중학교 교사는 수업에 의문을 갖는 학생의 모친을 중상하는 프린트를 배포하여 그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해야 했던 일로 교육위원회가 개입, 연수발령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본 건 기사 자체에는 원고의 실명이 게재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이전부터 원고의 실명을 기재하여 중상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왔기 때문에, 産經신문의 독자라면 본 건 기사에서의 「東京都足立區의 여자중학교 교사」가 원고임이 용이하게 특정됨으로, 본 건 기사의 내용에 의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불법행위에 의거하여 240만 엔, 그 중 200만 엔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30일(불법행위일)부터, 그 중 변호사 비용 40만 엔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9일(소장송달 익일)부터 각각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한 사안이다.

2. 전제사실

증거를 내세운 사실 이외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 및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본 건 기사는 원고에 관한 것이라고 특정될 수 있는지, 또한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 있는지(청구원인).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특정(特定) 가능성에 대하여

피고는 産經신문에 원고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1998년 8월 19일부터 7회에 걸쳐 원고를 중상하는 보도를 했으며, 동년 11월 18일 이후에는 4회에 걸쳐 원고의 실명을 기재하여 중상하는 보도를 했으므로 원고임이 용이하게 판명된다.

② 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유무에 대하여

본 건 기사를 일반 독자가 읽어보면, 원고가 반일적인 교육 등을 하여 교단으로부터 추방해야만 할 문제 교사로 인식될 것이 당연하며, 본 건 기사의 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피고의 주장

① 원고의 특정 가능성에 대하여

본 건 기사에 있어서의 원고의 속성에 관한 기술은 「東京都足立區의 여자중학교사」라는 것뿐이며, 원고의 이름이나 연령, 초상, 학교명도 게재하지 않아 특정이 불가능하다.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실명기사도 있으나, 이 보도는 乙山春子(乙山夏子の 모친으로, 원고의 수업에 의문을 갖고, 원고와 본 건 학교 및 구 교육위에 항의했다)가 자신을 중상하는 프린트를 배포한 원고를 상대로 한 제소사건 판결이 있었던 1999년 12월경까지는 일단락된 상태이며, 그 후 본 건 기사가 게재된 것은 2002년 1월 30일로, 게재의 시기나 취급관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매일 많은 정보를 게재하는 일간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명보도기사를 읽은 독자가 본 건 기사를 읽었다 하더라도 원고를 특정할 수는 없다.

② 원고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 유무에 대하여

본 건 기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상하는 기사가 아니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지적하고 공교육이 위치해야 할 모습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문제행동이 있는 3명의 교사를 익명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설령 본 건 기사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성격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자신이 본 건 기사 게재 전후에 걸쳐 자신의 이름 및 도교육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을 자진해서 밝히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새삼스럽게 저하될 수는 없다.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1. 본 건 기사의 원고에 대한 특정 여부 또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 및 명예훼손 여부(청구 원인)에 대하여

(1) 원고에 대한 특정 여부에 대하여

① 어떤 기사의 의미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기사에 대한 일반 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② 증거에 의하면 본 건 기사 게재 전부터 피고는 1998년 8월 19일, 23일, 26일, 9월 2일, 9일, 11월 12일자 産經신문에 원고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고 (a) 東京都足立구립00중학교 사회과 담당 여교사가 수업에서 미군 기지를 비판한 내용에 대해, 미국 국적을 가진 학생의 모친이 교장과 구교육위에 반미적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자, 전기 교사는 이 모친을 비난하는 프린트를 배포했다는 것, (b) 이 프린트 배포로 전기 학생이 수업에 결석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어쩔 수 없이 전학까지 하게 된 사실을 보도했으며, 또 1998년 11월 18일, 20일, 1999년 6월 29일, 7월 10일 네 차례에 걸쳐 실명을 기재하여 전기와 같은 내용 외에, (c) 도교육위가 1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③ 이상에 의하면, 일반 일간신문인 産經신문 구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볼 때, 실명보도로부터 본 건 기사가 게재될 때까지 2년 6개월 이상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본 건 기사가 원고를 특정하고 있음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원고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하여

① 본 건 기사는 (a) 원고가 「수업에 의문을 갖는 모친을 중상하는 프린트를 배포,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게 됨으로서 교육위원회가 개입하여 연수를 명했다」는 부분(이하 「본 건 기사 부분 1」이라 한다), (b) 원고가 「『지상토론』이라는 수업에서 반일적인 교육을 실시했다」는 부분(이하 「본 건 기사 부분 2」라 한다) 및 (c) 「문제교사 조속히 교단에서 추방하라」는 표제 부분(이하 「본 건 기사 부분 3」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원고가 문제 있는 교사라는 점을 기술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본 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공정한 논평으로 위법성, 고의·과실이 부정된다는 피고 주장(항변)의 당부(當否)에 대하여

(1)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공익을 도모할 목적의 유무에 대하여

①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실은 기사 내용면에서도 명확하고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어 긍정된다.

②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본 건 기사가 문제 교사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학교 교육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인정되어 긍정된다.

(2) 본 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揭示)인지 의견논평인지에 대하여 (본 건 기사 부분 1~3을 각각 판단한다)

(a) 본 건 기사 부분 1은, 원고가 수업에 의문을 갖는 모친을 중상하는 프린트를 배포하여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하게 되었고 교육위가 개입, 원고가 연수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의 적시가 명백하다.

(b) 본 건 기사 부분 2는, 「반일적」이라는 문언(文言)이 평가적이라는 점에서 의견논평으로 인정된다.

(c) 본 건 기사 부분 3은, 본 건 기사 부분 1 및 2에 기재된 교사가 문제 교사이며, 그러한 문제 교사는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논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본 건 기사의 적시사실 혹은 의견논평의 기초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의견논평이 그 범위를 일탈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① 본 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의 경위에 대하여 인정한다(구체적인 경위내용 생략).

(a) 본 건 프린트 배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b) 본 건 프린트의 배포

(c) 본 건 프린트 배포 후 본 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의 경위

② 이하에서는, 이상의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본 건 기사 부분 1~3의 적시사실 혹은 의견논평의 기초사실이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의견논평이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 본 건 기사 부분 1에 대하여

(1) 본 건 기사 부분 1의 가운데 「[원고가] 수업에 의문을 갖는 모친을 중상하는 프린트를 배포」 부분에

대하여

① 전기 인정사실과 같이, 본 건 프린트에 기재된, 원고의 수업에 항의한 「모친」에 대해서는 「『오끼나와(沖繩) 사람은 불쌍하지만 미군은 오끼나와 사람 이상으로 귀중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다』는 사상의 소유자」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기술은 본 건 프린트에서의 「모친」이 강한 친미 감정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夏子が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夏子 및 春子の 성이 「乙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본 건 프린트에서의 「모친」이 春子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은 본 건 프린트의 독자들에게는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는 본 건 프린트를 받아 본 학급의 여학생 2명이 수업 후에 담임교사에게 본 건 프린트를 보이면서 夏子が 불쌍하다고 말한 점, 夏子が 위 학급의 친구로부터 본 건 프린트를 받아보고, 그 사본을 집으로 가져갔다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② 그리고 원고는 전기 인정사실과 같이 본 건 프린트에서 「チクリ」, 「セコイ」 등의 비속어를 포함한 야유적인 표현을 써서 春子에 대해, 오끼나와 사람은 불쌍하지만 미군은 오끼나와 사람 이상으로 귀중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다는 편협한(セコイ) 사상의 소유자이며, 또한 구교육위에 밀고(チクリ) 전화나 밀고 팩스를 송신하는 등 교사의 교육 내용에 개입하려는 「천박한 처신」을 한,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자였다는 취지의 기술을 했을 뿐 아니라 본 건 프린트의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모친의 존재를 여기에 명기하는 것은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라는 절호의 『교재』를, 이 사람이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역시 春子の 존재나 그 행동을 야유하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상과 같은 기술은 春子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비방·중상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이상에 의하면 본 건 기사 부분 1 가운데 전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인정된다.

(2) 본 건 기사 부분 1 가운데 본 건 프린트의 배포에 의해 夏子가 어쩔 수 없이 전학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전기 인정사실과 같이 夏子는, 본 건 프린트에 의해 모친인 春子가 중상(中傷)당함으로서 원고에 대한 분노와 공포를 품게 되어, 원고의 얼굴을 보는 것도 싫어졌고, 1997년 2학기 이후 원고의 사회과 수업도 결석하게끔 되었다.

그 후 동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등교도 하지 않게 되었고, 1998년 4월 3일에는 본 건 학교에서 전학을 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경위를 볼 때 본 건 기사 부분 1 가운데 본 건 프린트의 배포에 의해 夏子가 어쩔 수 없이 전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진실임이 인정된다.

한편 이 점에 대해 원고는, 夏子가 전학한 이유는 클럽활동 등을 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교내생활에서 고립되었기 때문이며, 본 건 프린트의 배포가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령 친구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원고의 수업을 보이콧한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夏子가 원고의 수업을 보이콧한 것은 夏子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春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주장에 따른 원고의 공술(조서 10~11쪽) 및 진술(甲九)이 존재한다.

그러나 위의 증거는 특단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전기 인정의 기초가 된 증거에 비추어 채용할 수 없다. 또 夏子가 본 건 프린트의 배포된 수업에서 「미국과 일본은 피차 일반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제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기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여 (특히 일본정부는), 어떻게 하면 상호간에 평화스럽게

지낼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쓴 사실 자체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夏子가 위의 수업에 있어서 그와 같은 비교적 냉정한 의견을 쓴 것과, 夏子가 원고에 대해 전기와 같은 감정을 품게 되어, 그 결과 그 수업을 결석하게끔 되었다는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사실은 전기의 판단을 좌우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본 건 기사 부분 1 가운데 본 건 프린트 배포에 의해 학생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하게 됨으로써 교육위원회가 개입, 원고가 연수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전기 인정사실과 같이 도(都) 교육위는 원고에 대해, 1998년 11월 17일 및 1999년 7월 28일에 각각 급여의 10분의 1을 1개월간 감봉하는 징계처분을 했는데, 전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유에 본 건 프린트의 배포에 의한 신용실추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후자의 징계처분도 원고가 1999년 3월 상순에 春子로부터의 전기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한 자기의 주장을 기재한 문서 3통을 본 건 학교의 전체 보호자 앞으로 우송할 때 본 건 학교의 PTA 회원 명부를 이용했고, 또 위 문서 가운데 1통에 대해서는 본 건 학교의 인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등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각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직(職)의 신용을 훼손함과 함께 직 전체의 불명예가 되는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33조에 위반한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기 인정사실과 같이 도교육위는, 후자의 처분 얼마 후인 1999년 8월 27일 원고에 대해 ㉠ 학습지도법에 관한 것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관한 것 ㉢ 기타 도교육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내용에 관한 것 등을 연수내용으로 동년 9월 1일부터 7개월간 도립교육연구소에서 연수하도록 명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경위에서 보면, 본 건 프린트 배포에 의해 夏子가 어쩔 수 없이 전학을 한 문제를 가지고 교육위원회가 개입하여 원고에게 연수를 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기 인정과 같은 본 건의 사실경과 및 이에 관한 丙川의 취재경위에서 본다면, 피고가 위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이상과 같은 내용에 의하면, 본 건 기사 부분 1에 대해서는,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 본 건 기사 부분 2에 대하여

(1) 전기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상 토론 수업에서 선택한 제재(題材)에는, 그 당부(當否)는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면 「일본군의 침략」, 「전쟁책임」, 「종군위안부」 등 일본의 과거 역사 가운데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을 강조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또 전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상 토론에서의 교육방법은 공립중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고와 동일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상찬(賞讚)하는 한편 자신의 사고와 다른 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또한 자신의 사고가 일본국 헌법에 충실한 것이며 자신의 사고에 따르지 않는 사고는 일본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일방적이면서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양태(樣態)였음이 인정된다.

더욱이 전기 인정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원고는 ㉔ 본 건 프린트를 작성함에 있어, 春子가 학급의 긴급 연락망을 이용하여 원고의 수업방법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자신의 추측에 대해 아무런 사실관계의 조

사를 하지 않은 채, 통상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학생의 모친인 春子를 중상하는 기술(記述)을 포함한 프린트를 수업에서 배포하는 따위의 행위를 했으며, 또 ㉕ 최초에 본 건 프린트를 배포한 날의 다음날인 1997년 7월 17일 아침 丁田교장으로부터 금후 배포물은 사전에 관리직의 허가를 받은 다음 배포하도록 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같은 날 다시 夏子의 학급을 포함한 2개 학급에 본 건 프린트를 배포,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학생들에게 밑줄을 치게끔 했으며 ㉖ 이러한 행위를 한 결과 전기와 같이 夏子의 수업 결석, 나아가서는 등교도 하지 않다가 전학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본 건 기사 부분 2는 이상과 같은 원고의 교육방법이나 일련의 행동에 대해, 고의로 일본 역사의 부담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교육을 했으며, 또한 이를 비판하는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가 하면 수업에 의문을 제기한 학생의 모친에 대해서도 이를 중상하는 등 전기와 같은 자신의 교육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강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에서 「반일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논평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표현은, 전기와 같은 원고의 교육방법이나 일련의 행동에 대한 논평으로서 표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반 일간신문의 사실의 표현으로서 정확성과 객관성이 약간 결여된 인상을 주고는 있으나, 전기와 같은 논평의 기초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이에 대해 논평의 영역을 일탈(逸脫)하고 있다고까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본 건 기사 부분 3에 대하여

(1) 본 건 기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예를 들면서 그러한 교사는 교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논평을 한 것으로, 원고에 관한 기술은, 그러한 일례로 예시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2) 그리고 이상의 인정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와 같이 독단적이고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양태의 교육방법을 공립중학교에서 실시했으며, 또한 학생인 夏子の 모친 春子を 중상하는 내용의 본 건 프린트를 수업에서 배포하여 夏子の 전학 원인을 만들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감봉처분과 연수명령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3) 그렇다면, 「문제교사 조속히 교단에서 추방하라」

는 본 건 기사 부분 3(본 건 기사의 표제)은 역시 전기와 같은 의견논평의 기초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이에 대해 의견논평의 영역을 일탈했다고까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 의하면 본 건 기사 부분 3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4. 결론

이상에 의하면 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 까지도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 처 : 『판례타임즈』 1213호 pp. 189-201.

번 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독일 판결

신문보도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문제가 된 보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손해발생이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그 정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해당조문 : 민법 제823조; 형법 제201a조;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칼스루에 고등법원(프라이부르크 민사재판부) 2006년 4월 7일자 판결

- 14 U 134/05

판결요지

1. 커튼이 없고 조명이 환한 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를 창문 너머에서 몰래 사진 촬영한 행위로 형법 제201a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2. A 변호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경제범죄전담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이 행해졌던 한 중소도시에서 지방의회 원내교섭단체 의장직을 오랫동안 역임한 상당히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사진은 동의 없이 게재될 수 있다.

3. 신문보도로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문제가 된 보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손해발생이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그 정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4. 다른 측면에서 신문보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상가능성에 대해 보충적이며, 불가피한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

사실관계

원고(A)는 X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피고 1은 X사에서 판매되는 일간지 “X-er Tageblatt”를 출판하고 있고, 피고 2는 동 일간지의 편집장이다. 2004년 11월 6일과 7일자 “X-er Tageblatt”에는 “사행성 게임 영역에 대한 중대한 일격”이라는 제목과 함께 “만하임의 경제범죄전담검찰의 영장신청으로 2004년 11월 4일 밤과 5일까지 원고가 그 당시 동료변호사 B와 공동으로 경영한 법률사무소를 수색했다”라는 내용의 피고 2가 작성한 기사가 실렸다. 신문기사는 창문너머 외부로부터 압수수색을 하는 범죄수사관과 원고를 촬영한 문제의 사진과 같이 실려 있었다. 당시 만하임 검찰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구류처분을 받았고, 사건 진행 과정에 원고와 결별한 변호사 B의 몇몇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었다. 압수수색이 원고(A)를 겨냥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문이 없었다. 나중에 원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중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별도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원고는 비열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지탄의 대상이 된 신문기사로 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일심 재판부에서 원고는 적어도 25,000유로의 배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이유를 제시하였다 :

문제가 된 신문기사와 사진보도로 원고가 사행성 게임 영역에서 발생한 음모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상을 독자들이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격권 침해는 심각하지 않으며, 피고와 관련된 책임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정도로 크지 않다. 이와 함께 야기된 인격권 침해의 결과는 “X-er Tageblatt”에 원고의 인터뷰 기사를 포괄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반론보도문과 금지청구권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의 불가피한 필요성은 본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즉각적인 항소와 함께 일심 재판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번에는 적어도 10,000유로가 적정하다고 원고는 주장하였다.

판결이유

... II.

사건에서 상소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방법원이 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1. 일반적으로 판결과 문헌에는 의심할 것도 없이 피고가 신문기사와 같은 출판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출판사와 편집장에 대해서는(Wenzel/Burkhardt,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5. Aufl. 2003, Rdn. 14. 141) 기본법 제1항과 제2조와 결부된 민법 제8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희생자의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판결과 문헌에서 견해가 일치되는 것처럼 그러한 청구는 책임자가 중대한 침해의 책임과

관련되어 있고, 그 침해가 다른 방식으로는 보상될 수 없는 중대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예를 들어 BGHZ 128 S. 1 ff.[12] = AfP 1995 S. 411; Löffler/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5. Aufl. 2005, Rdn. 44. 43 ff. 등 참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문제가 된 보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손해발생이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그 정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Löffler/Ricker, aa.O., Rdn. 43,44 참조).

2. 지방법원은 이러한 전제가 다음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적절하게 판단했다.

a)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2005년 6월 17일자 판결(14 U 16/05, AfP 2006 S. 72)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기사의 문맥 그리고 그 표현의 종류와 방법과 함께 잘 정리된 사진으로 말미암아 선입견 없는 독자들은 “사행성 게임 영역”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대상이 된 자가 변호사 B라든가 “A와 B의 합동법률사무소”가 아닌 원고(A)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 때문에 명백하게 해명하는 암시가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신문 보도 기사는 거짓된 사실주장과 같이 다루어질 수 있다. 검찰의 수사절차가 원고를 겨냥하고 있다는 식의 거짓주장의 전파로 원고에 대한 공중의 평가가 저하되어 결국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상당하다.

b) 그러나 이러한 침해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장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aa)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중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평가를 위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상황의 총체에 대해 재판부의 견해로는 반대다.

(1)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4가지 표현들은 재판부가 2005년 6월 17일자 판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짓된 사실보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신문기사는 원고의 비밀·내적·사생활 영역과 같은 특별한 법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의 사회적 영역도 침해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고의 정치활동은 그가 법률사무소를 변호사 B와 공동으로 오랫동안 운영해온 사실만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고발된 신문기사와 배치되는 사진의 게재는 판단컨대 위법하지 않다. 원고가 “그의 가정집”이나 “옛보는 행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는 공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변호사 B와 공동으로 경영한 커튼 없고 조명이 환한 법률사무소 안에 있는 모습이 창문너머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형법 제201a조에 의거한 범죄행위(사진촬영에 의한 고도의 사적 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했던 이웃집 옥외계단에서의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법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는 자가 이웃집의 땅에 몰래 들어간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이웃의 주거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원고의 법적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지방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원고가 X 지방의회 원내교섭단체 의장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경제범죄전담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은 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를 역임한 상당히 유명한 인물(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이기 때문에 그의 사진은 동의 없이 게재될 수 있다.

(3) “사행성 게임 영역”과 관련한 수사절차가 원고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암시는 2005년 6월 17일자 판결에서 재판부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다. 결과적으로 거짓된 주장이 신문의 보도기사로 취급된 것과 같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피고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호간에 아무런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진술서를 보면 검찰의 일련의 수사절차가 원고를 겨냥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그 때문에 피고에게는 원고를 겨냥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킨 보도기사가 잘못된 점, 그리고 고의과실의 혐의 및 경우에 따라서 계획적인 고의가 있지만 중대한 책임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bb) 인격권 침해가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에 필요한 중요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심각한 정신적 손해와 고소된 보도기사로 발생한 손해발생에 대한 실증적 논증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생활이나 직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도 적용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고는 그 사이에 X 지방의회 원내교섭단체 의장직을 사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명확하게 밝힌 것처럼 그의 퇴진은 문제된 보도기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와 관련된 재정문제에 대해 시장과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다. 2006년 3월 30일 항고심의 구두변론에 제출된 원고의 서면답변은 사진 게재와 결부된 불쾌감에 대해 일반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지만, 인격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는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불쾌감이 원고 자신이 아닌 동료 변호사에 대해 수사가 실시되었다는 암시가 빠져있는 보도기사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원고가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생경험에 따르면 이미 그의 법률사무소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켜 범죄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의 동료변호사가 체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명한 지방정치인이자 존경받는 변호사인 원고에게는 치명적이 되었다는 점은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cc) 또한 그밖에도 손해배상지급에 대한 불가피한 필요성이 없다. 이 사건에서 제기된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흠결을 제거함으로써 인격권 보호에 기여해야 하고, 그 밖의 보상가능성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사용된다(예컨대 Wenzel/Burkhardt, aa.O., Rdn. 14,120, 그리고 Prinz/Peters, aa.O., Rdn. 758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는 암시가 빠져 있어서 원고가 어느 정도 유죄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 반론기사의 게재에도 불구하고 장래에도 게재가 확실하게 금지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표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반론기사의 내용이 편집과정에서 꼬리부분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출판자가 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표를 한 것만으로 가치절하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2005년 크리스마스 판에 실린 반론기사에 포함된 문장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 절차도 없었다”는 거짓이었기 때문에 편집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논평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예방조치의 계획(Präventionsgedanke)은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BGHZ 128 S. 1 ff. [15] = AfP 1995 S. 224; Prinz/Peters, aa.O., Rdn. 767 참조). 여기서는 원고의 인격이 카롤린(Carolin von Monako) 사례 I과 II(BGHZ 128 S. 1 ff. = AfP 1995 S. 224와 BGH, AfP 1996 S. 137 = NJW 1996 S. 984 f. 참조)의 경우와 달리 상업언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고도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부터 비롯되는 제어효과(Hemmeffekt)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신문 기사를 흥미롭게 만들어 판매부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신문보도를 위한 적절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를 가리키는 사진인쇄물과 정치적·직업적 기능을 그의 이름과 함께 언급한 사실이 신문판매부수의 뚜렷하고 지속적인 증가와 광고매체로서 “X-er Tageblatt”의 매력을 달성했다고 실증적으로 설명되지도 명백하지도 않다. □

출 처 : AfP 36. Jahrgang Heft 3 - 2006 SS. 262-264

번 역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영국사례

**신문사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은
사적 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공의 관심사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영국 PCC는 브롬리에 거주하는 존 포스터가 『배신의 최후결과』라는 제목으로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지난 2006년 5월 6일자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슬픔에 잠겨있는 이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등 PCC 윤리강령 제1조(정확성)와 제5조(슬픔과 충격에 부정적인 개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편집장에게 보낸 통신문들을 근거로 보도됐다고 윤리강령 제3조(사생활 침해)와 제14조(비공개 자료 사용)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적 기사는 불만신청인의 아내가 불만신청인의 정부(情婦)를 칼로 찌른 사건에 대해 불만신청인과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의 편집장 사이에 오고 간 e-메일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 e-메일 안에는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정부

(情婦)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보도할 것인가 등에 관해 의논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제의 기사는 이 e-메일들에 대해 “아내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더욱 깊은 배신행위를 암시한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이 편집장과 연락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처음 연락을 주고받던 시기의 전화통화 및 통신문의 여러 부분에서 확실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기사 내에 자신의 의견이 빠졌기 때문에 독자들이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행동은 아내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었고 편집장과 주고받은 e-메일 또한 PCC로 전달한 확인 서류에 나타난 대로 아내와 가족 그리고 자신의 정부(情婦) 등이 모두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사건 이후 며칠간 아내와 자신의 전(前) 애인의 사진 여러 장’을 그들 몰래 ‘은밀

하게’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로 보냈다는 이야기도 옳지 않고 두 여인 모두 불만신청인이 먼저 아내의 사진을 보내고 몇 주 후에 전 애인의 사진을 보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만신청인은 자신이 계속해서 “두 여자 모두를 만나고 있었다”라는 것과 병원에 있는 정부(情婦)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에 연락을 취했다는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와 연락이 되기 시작하면서 불만신청인은 언론의 요청에 따라 다른 정보들을 제공했지만 취재범위를 조 작하려 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의 편집장은 통신문을 비밀로 유지해야겠다는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의 자세와 행동을 폭로하는 것이 대중들의 관심사를 따르는 일이고 통신문은 불만신청인의 “심각한 잘못”에 대한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편집장이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던 단 한 가지 사항은 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돈에 대한 문제였다고 말하고 그 이후의 e-메일들은 편집장이 정보와 e-메일을 비밀로 남기기로 약속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

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편집장은 재판 중에 나타난 내용들, 특히 불만신청인이 정부(情婦)와 수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여자 두 명을 가지고 놀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불만신청인이 보내왔던 e-메일들에서 다른 사실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편집장은 불만신청인이 여전히 아내와 정부(情婦) 모두에게 연락을 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기색이 e-메일에 확연히 나타났고 아내와 전 애인의 처지에 대한 농담까지 하면서 자신은 결백한 사람인 듯이 포장된 정보를 신문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편집장은 보도된 기사는 e-메일의 정확한 내용들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편집장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불만신청인이 부탁하지도 않은 e-메일 계속 보냈다고 말했다.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는 이 기간 동안 만큼은 불만신청인과 전 애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불만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처했다. 편집장은 윤리강령 제5조는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만신청인이 언급한 기사는 재판도 이미 끝나고 사건이 발생한지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은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몇몇의 사실적인 내용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만신청인은 편집장이

전화통화에서 “이 대화는 발설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불만신청인은 이를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엄밀한 약속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만신청인은 자신이 보낸 e-메일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비밀로 해주십시오’라는 문장을 썼고 이에 대해 편집장의 답장은 ‘걱정 마십시오’라고 시작됐다고 말했다. 불만신청인은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보도한 자신과 아내, 전 애인 사이에 있던 일을 반박했다.

이러한 양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PCC는 먼저 윤리강령 제4조에 대한 불만신청부터 살펴보았다. 첫 대화 이후의 통신문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불만신청인과 편집장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다. 불만신청인은 그들의 의논 내용이 e-메일 내용에도 적혀있듯이 계속해서 비밀로 남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PCC는 이 두 명의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판단할 수 없고 단지 현재 주어진 증거물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e-메일을 통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려 한 것은 분명하다고 봤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그것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모든 연락내용에 없다는 것이다. 분명 불만신청인은 비밀엄수를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는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았

고 이 부분은 윤리강령 제14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PCC는 판단했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기사의 중심에 있었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사를 조작하려는 꾀새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PCC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불만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고 윤리강령 제14조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디지털 통신을 비롯한 통신문’을 포함한 불만신청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지 못한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했다는 불만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PCC는 윤리강령 제3조는 두 사람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허락 없이 보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언론사에 직접 보낸 통신내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PCC는 불만신청인과 편집장의 관계는 사적 관계로 볼 수 없고 설령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자료가 더 많은 사람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이 정보들이 불만신청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아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던 재판의 배경에 대한 것이었고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었다고 PCC는 판단했다. 이에 PCC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캠브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PCC는 윤리강령 제1조에 대한 불만을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불만 대부분은 기사가 그의 코멘트를 인용할 때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PCC는 언론사는 사건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낼 권리가 있고 e-메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PCC는 편집장이 주장한대로 e-메일의 내용이 불만신청인의 아내에 대한 “배신”이라고 본 것은 기사의 관점일 뿐이라고 보았다. PCC는 캠프리지 이브닝 뉴스사의 기사 내용이 전체적

으로 봤을 때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정정 보도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윤리강령 제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PCC는 윤리강령 제5조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5조는 보통 사망 사건이나 충격적인 사건의 발생 직후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번 경우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재판이 끝났고 사건이 발생했는지도 몇 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보도된 것이므로 캠프리지 이브닝 뉴스사가 제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사정정을 위한 의회의 요청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라는 내용의 e-메일과 함께 “의회의 10년 지역 계획 - 해명 문서”라는 제목의 반장짜리 진술서를 첨부했다.

답장 e-메일에서 마운틴 썬 지의 편집장은 신문사 관계자들과 논의한 결과 사실의 내용을 바꿀 수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편집장은 자신과 사실 작성자의 e-메일을 첨부시키고 이에 나타난 이유에 따라 불만신청단체의 답변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첨부물에서 사실 작성자는 자신이 공개한 수치 정보가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작성자는 자신이 작성한 것은 뉴스가 아닌 사실이고 신문사의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조작’을 하려는 불만신청단체가 뻔뻔하다고 e-메일을 통해 밝혔다. 또한 사실 작성자는 “결국 불만신청단체도 자신들의 선전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고 의회의 요청이 일반적인 ‘정정보도’ 정책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 작성자의 주장에 대해 편집장 역시 불만신청단체에 보낸 e-메일에서 “사실 작성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일간지의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행사하는 것은 장관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불만신청단체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편집장과 사실 작성자의 e-메일을 본 후 신문사와 직접 논

뉴질랜드 사례

사실란에는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실에 대한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퀸스타운 레이크 지방회의(이하 불만신청단체)가 『지금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2006년 5월 11일자 마운틴 썬 지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불만신청단체는 이 기사가 정확성(윤리강령 제1원칙)과 제2원칙(신속한 정정보도)을 위반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사실)는 마운틴 썬 지의 ‘SCENESPEAK’란에 프랭크 마빈의 이름으로 게재되었다. 이 사실은 불만신청단체의 지역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랭크 마빈은 이 신문사의 전 발행자였다. 문제의 사실은 지방세, 부채와 소모 자본의 총액에 대한 것과 지방세 납부자들이 불만신청단체의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사실 끝에는 독자들이 불만신청단체에 의견을 알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사실에는 “올해의 지방세와 10년 후의 지방세를 비교하면 무려 204%가 차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실이 공개됐을 때, 불만신청단체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마운틴 썬 지의 편집장에게 전화로 불만을 얘기한 후, “이것은 기

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것은 '정보 조작'이 아닌 정확한 사실을 사회에 알리는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신청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번 불만신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사실의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불만신청단체와 마운틴 썬 지의 대화 과정이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첫 번째 부분에 대해 SCENESPEAK 사실이 마운틴 썬 지의 독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과격한 스타일로 전달되었다고 보았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 사실이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분위기를 반영해 작성된, 전형적인 의회 예산안과 세금 인상에 관한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이 시점에서 만약 편집장이 불만신청단체가 총괄적인 정정 보도를 원한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문장 수정을 원한 것인지를 확실히 파악했거나 불만신청단체가 잘못된 숫자에 대한 수정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면 손쉽게 정정보도가 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에 불만이 접수되고 난 후 마운틴 썬 지는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2006년 6월 29일자 마운틴 썬 지 SCENESPEAK란 끝에 작은 정정보도가 게재됐다. 이는 문제 기사가 보도된 지 7주 만이고 신문평의회가 조사를 착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단체의 불만 신청을 인정하면서 "사설란에는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지만 사실에 대한 정보는 정확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정정보도에 대한 신문사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았다.

불만신청단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며 불만신청단체로 보낸 신문사의 경멸적인 e-메일에 대해 불만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사실의 문제와 불만신청의 중점을 비교한 후 세금인상률의 계산에 대한 착오(제1원칙)와 정정보도를 신속히 하지 않은 것(제2원칙)에 대한 불만을 인정했다. □

호주사례

독자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제기된 불만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마렉 스위다가 폴란드 태생 유대인 데이비드 펄의 부고 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불만신청인은 지난 2006년 5월 26일자 더 에이지, 멜버른 지에 보도된 부고 기사의 내용 중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폴란드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고 반(反)폴란드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불만신청인은 편집장에게 기사의 철회와 그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해명을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불만신청인이 지적한 사항은 전쟁 전에 폴란드에서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다는 것과 폴란드 군대 내에서 반(反)유대인 사상을 제도화하고 있었다는 것 등이다. 또한 부고 기사에는 숨진

데이비드 펄이 폴란드 군대에 자원입대했고 그가 폴란드의 숲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게릴라 활동을 했으며 그동안 폴란드 가족에게 그의 어린 딸을 맡겼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사 측은 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불만신청인의 편지에 답하는 것 역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이 부고가 "한 사람의 인생과 경험에 관한 견해를 담은 것이다. 이 견해가 불만신청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신문평의회 규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호주 신문평의회 역시 신문사 측의 견해에 동의하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오보’ NHN·CBSi 전여옥 의원에 배상”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승곤 판사는 8일 잘못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NHN(주)과 (주)CBS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 해당 기사가 주요 뉴스란에 게재돼 파급효과가 크고 이로 인해 원고가 오해

로 인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점 등을 감안, 허위 기사로 피해를 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기사를 잘못 작성해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기사 작성 뒤 50여 분이 지나 바로 내용을 수정한 데다 이후 원고에 대한 오해가 풀려 기사로 인해 훼손된 원고의 명예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를 500만 원으

로 제한했다.

전 의원은 대변인 시절인 작년 3월 (주)CBSi의 노컷뉴스팀 기자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에게 불만을 표시한 부분을 기사로 작성하면서 김 대변인 대신 전 의원이름으로 잘못 작성하고 이를 NHN(주)에 송고, 네이버에 그대로 게재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두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06년 9월 8일

KBS 의료사고 보도 ‘초상권 침해’ 패소 소송 진행 중 사건 의사 얼굴·병원 그대로 방영 “위법성 조각 안 돼”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가 도리어 슈퍼 박테리아(MRSA)에 감염된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한 KBS 보도에 대해 “의사의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광태 판사는 KBS가 지난해 7월 7일 <뉴스타임>에 보도한 ‘속수무책 슈퍼 박테리아 비상’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모 의원 신경외과 원장 전 모 씨가 KBS와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전 씨 측의 반대에도 초상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30일 판결했다.

KBS는 지난해 보도를 하면서 전 씨의 상반신 사진 및 목소리, 병원의 외관과 간판을 내보냈다. KBS는 당시 오전 8시 방송과 함께 오후 8시 <뉴스타

임>에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전 씨의 얼굴도 내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KBS 취재 당시 이미 환자와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며 잘못이 밝혀지면 배상할테니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요청했고, 당시 오전 <뉴스타임>에서 방영된 뒤에도 항의했지만 KBS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내보냈다.

김 판사는 “KBS가 보도한 내용은 병원에서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목소리 등이 방영되고 피해환자가 특정됨으로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돼 원고 전 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김 판사는 올해 환자와 전 씨의 소송사건에서 ‘전

씨’가 40%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불량한 위생상태 때문에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것이라는 KBS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다만 KBS가 보도할 당시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그럼에도 전씨의 얼굴과 상반신마저 그대로 내보낸 것은 이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초상권을 침해한 만큼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KBS는 항소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히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2006년 11월 30일

“포털, 언론처럼 오보 책임 져라”

‘우리는 기사 유통업자일 뿐이다!’, 매일 8,00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을 뉴스창에 퍼 올리는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포털에 실은 기사가 오보, 명예훼손 시비를 일으키면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며 포털에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기사 저작권이 없고, 언론사와 전제 계약을 맺을 때도 관련 규정을 넣지 않았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언론중재위원회 간부가 최근 이런 포털 쪽의 ‘항변’을 법리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포털도 다른 언론처럼 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등에 전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 법무상담팀장인 양재규 변호사는 23 ~ 25일 전북 대둔산에서 열리는 중재위 정기세미나 발제문 ‘포털뉴스의 피해구제 방안을 둘러싼 쟁점

과 과제’를 통해 이런 견해와 함께 언론중재법의 중재·조정 대상에 포털을 포함시키고,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 기사삭제, 게시중지 청구까지 중재위 조정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정정보도는 원 기사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새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언론과의 계약상 정정보도 책임이 없다는 항변도 해당 계약과 무관한 3자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무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상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운영주체가 전통 언론사와 달라도 다루는 기사가 언론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적시 여부이지 보도의

형태가 아니다”라며 “기사의 최종 매개체가 된 포털에게 정정보도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 청구 절차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기사생산자인 언론사, 매개자인 포털 등을 정정보도 청구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인 박영태 미디어다음 콘텐츠 팀장은 “포털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대안에 공감하지만, 상품 유통적 기능이 강한 포털을 다른 언론과 똑같은 성격으로 책임 부담을 지우는 데는 동의하기 어려우며 인터넷상에서 정정보도 형식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겨레 2006년 11월 23일

임종인 의원 ‘돌발영상’ 소송 패소

국회에서 ‘막말’을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뉴스전문채널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의원이 YTN과 디지털 YTN, 담당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 의원은 YTN이 6월 20일 국회에서 자신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도부를 향해 막말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튿날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하자 “동의 없이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2천 만 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8월 제기했다.

임 의원은 “YTN은 인터넷 홈페이지 ‘돌발영상’ 코너에 게시한 동영상상 삭제하라”며 영상물계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7월 중순 “언론은 국민의 관심에 부응할 소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6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사적 대화 ‘돌발영상’ 삭제하라”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김경중)는 17일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 ‘돌발영상’에 게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와이티엔과 디지털와이티엔(주) 상대로 낸 영상물계재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이 대화가 담긴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돌발영상’ 난에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동영상 가운데 임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는 부분을 삭제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의원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모습을 촬영한 것만으로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와이티엔은 올 6월 임 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을 촬영해 방영하고 인터넷에 올렸다.

한겨레 2006년 11월 18일

위원회소식

위원회, 포기실 마을과 1사(社) 1촌(村) 맺어

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포기실 마을과 농촌사랑 1사(社) 1촌(村)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은 농협사랑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교류 활동을 증진하고, 농촌사랑운동을 실천코자 맺게 됐다. 위원회와 자매결연 맺은 포기실 마을은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친환경 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청주에서 중복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충북 청주 리호관광호텔에서 “언론중재제도와 중재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종호(청주대 사회과학대 명예교수) 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어수용(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충북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8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중재위원 인트라넷 구축

위원회는 중재위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위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재위원 인트라넷을 구축, 지난 11월 6일 개통했다. 중재위원 인트라넷은 조정·중재심리와 관련한 자료실, 위원회 행사 게시판, 자유 게시판 등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2006년도 국정감사 수감

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국회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과 함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조준희 위원장의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에서 국회의원들은 국가기관의 조정신청 증가의 이유를 묻고,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시행 후 1년 동안 큰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을 평가하고 포털이나 인터넷 매체에 의한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주제 정기세미나 개최

위원회 정기 세미나가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3일부터 2박 3일간 전북 원주 대둔산 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언론중재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의 성과 및 과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점을 찾고자 마련된 이번 정기세미나에는 한위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양재규 법무상담팀장이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과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창룡(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중재위원의 사회로 중재위원과 언론인, 포털 관계자 등 60여 명의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럽 언론피해구제 기관 시찰

조준희 위원장은 9박 10일간의 유럽 언론유관기관 시찰을 마치고, 지난 11월 16일 귀국했다. 위원장은 스위스의 노이에 쾰러허 자이팅, 오스트리아 커뮤니케이션청, 이탈리아 라 레푸블리카 등을 방문하여 현지 언론피해구제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의 언론중재제도와 위원회를 홍보했다.

사무처, 충북 동요마을에서 체련행사 가져

사무처는 지난 11월 10일 충북 음성 동요마을에서 추계 체련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체련행사는 1사(社) 1촌(村)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 이천의 포기실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석한 뜻 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사무처 직원과 포기실 마을주민들은 전통 생활박물관을 견학하고 족구시합, 떡메치기와 조롱박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나누었다.

김정기(서울 제2중재부), 박석태(경기중재부) 위원 위촉

문화관광부 장관은 김정기(서울 제2중재부,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과 박석태(경기중재부, 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두 위원은 지난 10월에 사퇴한 이상현(서울 제2중재부), 우제찬(경기중재부) 위원의 후임이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오는 2008년 9월 1일과 2008년 8월 31일까지다.


- 강남준(2006).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의 바람직한 심의 시스템 모색: 자율심의는 적절한 대안인가?. 2006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 10. 14.
- 강남준(2006). 방송통신융합 하의 바람직한 심의시스템 모색.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최 '방송통신융합 하의 심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논문. 2006. 8. 17.
- 강혜란(2006). 방송통신융합 하의 통합적 내용 규제기구 모색.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최 '방송통신융합 하의 심의 어떻게 할 것인가 II' 토론회 발제논문. 2006. 11. 2.
- 김규희(2006, 9월). '창작자 우선' 법 취지 살려 저작자 저작물 보호해야: 직무저작물 저작권 규정 새로 만들자.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9호, 140-143.
- 김동률(2006, 가을). 인격은 뒷전, '가차 저널리즘'이 황행하는 시대. 언론중재, 통권 제100호, 140-147.
- 김명중(2006).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수용자 주권.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주최 '방송법 7년: 시청자 주권의 현실화 진단' 세미나 발제논문. 2006. 7. 25.
- 김서중(2006, 상반기). 신문법 현재 결정, 의미와 과제: 신문법 현재 결정 의미와 해석_입법 취지 인정, 신문시장 현실 이해 부족.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7호, 48-57.
- 김윤정(2006, 가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논의: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통권 제100호, 19-43.
- 김종천(2006, 상반기). 신문법 현재 결정, 의미와 과제: 언론피해구제법 현재 결정 분석_정정보도청구요건은 합헌, 정정보도 심리절차는 위헌.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7호, 58-69.
- 김준역(2006, 가을). 신문법 현재 결정과 후폭풍. 관훈저널, 통권 제100호, 127-133.
- 김진웅(2006, 여름). 방송 공익론의 법적 접근: 방송법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4-2, 96-117.
- 글로드 장 베르트랑(2006). 다매체 시대 미디어 윤리의 실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영란(2006). 시청자의 관점에서 본 통합방송법 7년 평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주최 '방송법 7년: 시청자 주권의 현실화 진단' 세미나 발제논문. 2006. 7. 25.
- 류한호(2006). 신문법 개정 방향. 문화관광부 주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토론회 발제논문. 2006. 8. 17.
- 류한호(2006, 상반기). 신문법 현재 결정, 의미와 과제: 신문 지원 기구 통합_신설 기구들 정착 후 통합 방향 찾아야. 열린미디어열린사회, 통권 제17호, 78-87.
- 박재선(2006, 9월). 혐의를 범죄 사실로 오인되게 보도하면 위법: 단정적 제목 사용과 경찰 비공식 정보 이용. 신문과 방송, 통권 제429호, 72-75.
- 박재선(2006, 10월). 법을 알고 기사쓰기 7: 불법 녹음 테이프 공개의 위법성 문제.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0호, 138-143.
- 박재선(2006, 11월). 법을 알고 기사쓰기 8: 영부인 학력 비하 발언 보도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 책임.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1호, 76-79.
- 박형상(2006, 가을). 「언론중재」 100호 특집에 부쳐: 소통의 공간으로 우뚝 서는 「언론중재」. 언론중재, 통권 제100호, 123-125.
- 방석호(2006, 가을). 신문법 위헌판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관훈저널, 통권 제100호, 134-140.
- 배성용(2006, 상반기). 신문법 현재 결정, 의미와 과제: 신문유통원 사업과 정착 과제_공동배달센터

- 구축 추가에 집중 지원 필요. 열린미디어열린 사회, 통권 제17호, 70-77.
- 석원혁(2006). 방송통신융합 논의와 방송서비스의 규제 체계.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개혁시민연대, PD 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주최 '방송통신융합 추진위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발제논문. 2006. 8. 21.
- 선봉희(2006, 가을). 러시아 저널리스트의 법적 위상과 보호. 언론중재, 통권 제100호, 126-133.
- 안종목(2006). 디지털 콘텐츠의 규제 패러다임. 2006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6. 10. 14.
- 양재규(2006).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문화관광부 주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토론회 발제논문. 2006. 8. 17.
- 양재규(2006, 가을). 언론중재법 관련 현재결정(2005헌마165 등)에 대한 소고: 언론의 위축효과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통권 제100호, 4-18.
- 유재웅(2006, 가을). 「언론중재」 100호 특집에 부쳐: 「언론중재」, 이제 국제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 언론중재, 통권 제100호, 115-117.
- 윤 경(2006, 가을). 「언론중재」 100호 특집에 부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간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언론중재」로 자리매김 하기를. 언론중재, 통권 제100호, 113-114.
- 이규호(2006).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정책 일원화 방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 세미나 발제논문. 2006. 8. 24.
- 이대회(2006).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저작권 법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 세미나 발제논문. 2006. 8. 24.
- 이승선(2006, 여름). 언론소송에 나타난 보도의 개별적 연관성과 당사자 적격. 한국언론정보학보 34, 161-195.
- 이시훈(2006, 11월). 공공성 훼손, 일부 지상파만의 이익은 안 돼: 민영 미디어랩 입법 논의와 바람직한 방안.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1호, 138-141.
- 이재진(2006, 가을). 「언론중재」 100호 특집에 부쳐: 언론법제 연구의 강화를. 언론중재, 통권 제100호, 119-121.
- 장행훈(2006, 가을). 신문법 왜 제정됐는가. 관훈저널, 통권 제100호, 141-149.
- 정대필(2006, 10월). 포털 뉴스 서비스 개편과 자율규제 강화.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0호, 114-117.
- 정동우(2006, 가을). 「언론중재」 100호 특집에 부쳐: 언론 현장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회지 되길. 언론중재, 통권 제100호, 117-119.
- 정동훈(2006, 6월).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연구윤리 문제: 연구윤리위원회의 필요성과 그 방안. 한국언론학보 50-3, 451-475.
- 조동시(2006, 12월).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 시범 심의. 신문위.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2호, 156-159.
- 조동시(2006, 12월). 에이즈 보도·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2호, 160-163.
- 최충웅(2006, 가을). '초상권 손해배상청구 조정' 단상(斷想). 언론중재, 통권 제100호, 148-149.
- 한동원(2006, 가을). 「언론중재」 100호 특집에 부쳐: 「언론중재」는 국내 유일의 「언론법제」 종합전문지. 언론중재, 통권 제100호, 121-123. □

OnLine 중재상담실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자격

지난 10월 3일, 모 신문사에서 추석특집 영화를 소개하면서 "(전략) 안토니오 반데라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지만 TV 방영분에선 성우가 더빙을 다시 하니 그 재미는 접어두시길.(후략)"이라는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더빙을 다시 하니 재미를 접어두라"는 이 문장은 성우라는 직업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제가 성우지망생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경우 제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제가 할 수 없다면 한국성우협회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구해야 하나? 또 기사 속의 짧은 한 줄이지만 이 내용이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우선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보도에 언급이 되었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때문에 귀하가 성우 지망생이라는 이유로 위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를 하는 것은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한편, 위 기사가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의견, 평가성이 짙은 기사이고 전체 성우들의 명예

를 훼손시켰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성우협회 측에서의 정정보도 청구 또한 불가능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정보도청구는 짧은 한 줄에 포함된 내용이라든가 본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히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글을 동의 없이 인용했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수강신청에 관련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OO내일'이라는 잡지에 저희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했던 글의 일부(닉네임, 실명 포함)가 인용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기사에 제 글이 인용되어 불쾌한 마음에 문의를 한 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닉네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게시판에 쓴 내용이기 때문에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과 같아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동의 없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이 인용되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게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정, 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우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글이라면 학교 홈페이지의 글이더라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라면 언론사가 면책될 수도 있으므로 본 사안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00)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상담 및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의 무허가 촬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저는 창녕에서 수출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오늘 중으로 선적할 물품들이 있어 컨테이너 작업을 하던 중 한 지역신문에서 기자와 고철업자가 찾아와서는 저와 담당자가 없는 사이에 사진을 무더기로 찍어 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재에 나섰지만 기자와 고철업자의 횡포가 심해서 저희 직원들도 말리다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오늘 선적해야 할 물품이 출발하지 못하고 지연됐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촬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기자가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 때문에 생긴 오늘의 손해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동의 없이 촬영을 한 신문사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요.

 우선 이 사안에서 단순히 무허가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나 언론사에게 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대신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 역시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있었느냐 등 주변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촬영한 자료가 추후에 보도되어 명예훼손 당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 명의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무엇보다 취재분이 보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조정신청을 원하신다면 조정신청서 양식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히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 게재**

언제 찍힌 지도 모르고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제 뒷모습이 잡지에 실렸습니다. 상반신부터 신발까지 뒷모습만 올려놓은 사진인데 그 내용이 불쾌했습니다. 스트리트 패션이라는 주제로 잡지사 측에서 임의로 옷을 잘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놓고 제 옷차림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통해 사진이 게재된 것을 알고 잡지사에 연락을 했더니 "정면 얼굴이 사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척 불친절하게 저의 항의에 대해 대응을 했습니다.

해당 잡지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뒷모습이 찍혔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귀하를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라 볼 수 있으며 귀하는 저희 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피신청인은 해당 기자가 아닌 언론사가 될 것이며 조정신청을 원하신다면 조정신청서 양식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주십시오.

보다 자세히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상담팀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세요. □

언론조정 및 중재 신청과 처리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업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언론(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영

언론중재위원회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상담센터는 언론피해와 관련된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객 방문시 상근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며,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하루 24시간 실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언론사, 대학, 기업,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언론피해 구제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 권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보도를 심의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언론사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선거기사 심의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위원회 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6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80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80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조정 및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6개, 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춘천·청주·전주·창원·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6개 곳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 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 구역

• 조정 및 중재관할권은 조정 및 중재대상이 되는 언론사(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

넷 신문 등)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조정과 중재

청구의 종류

▶ 정정보도청구

-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이 언론사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그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

법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언론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무죄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도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와는 상관없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추후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사에 자신의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문제의 보도가 있

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및 처리 절차

▶ 조 정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과 언론사 사이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객관적, 법률적 입장에서 개입, 당사자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신청은 피해자 또는 언론사가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처리결과로는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등이 있습니다.

▶ 조정신청 방법

- 서면에 의한 신청

-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 또

는 손해배상액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문제가 된 보도 본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구술에 의한 조정신청

• 신청인은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담당 직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 조정 대상 표현물의 내용, 보도일 및 인지일,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 원하는 보도문, 손해배상액, 작성일 등을 진술하여 담당직원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조서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 신청인은 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

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부장은 신청인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즉시 이를 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표현물과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정 신청인, 대상 매체, 기간 등

- 조정 신청인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 대상 매체

•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한 경우에는 언론사와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정처리절차

•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조정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취지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재부는 조정기일에 양쪽의 진술을 듣고 합의가 되도록 적극 조정합니다.

•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조정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신

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 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때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조정처리결과

•합 의 : 피해자와 언론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나가게 되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결정

에 대해 당사자가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의신청은 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언론사를 피고로 합니다.

•조정불성립 결정 :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 절차

▶ 중 제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국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재신청 방법

- 중재합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중재신청인은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유와 원하는 보도문 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언론중재위원회 소정 양식).

•문제가 된 보도본문(방송의 경우 녹음, 녹화물과 녹취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인, 대상 매체, 기간 등

- 중재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이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재대상매체

•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방송·정기간행물(신문, 잡지)·뉴스통신·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재신청기간

•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는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재신청 처리절차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중재부는 중재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 신청인은 중재신청시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중재합의(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언론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예 : 합의서)을 첨부해야 합니다.

•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서를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 중재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할 때, 중재대리허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면, 위임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 중재신청인은 중재절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을 결정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건의 이해관계자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절차는 중국결정 또는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여 중재부가 종료결정을 한 경우 종료됩니다.

•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의 비협조로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중재부가 판단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주장 및 입증에 태만히 하여 중재절

차의 계속적 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리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쌍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 중재처리 결과

•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중재부가 중재결정을 내리면 언론사는 결정된 내용대로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언론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합의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 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 심의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

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합니다.

- 개인적 법익으로는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금지, 형사사건 피의자 및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신고자 등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성폭력피해자 보호 등이 있습니다.
- 사회적 법익으로는 범죄사건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설명, 성과 관련된 선정적 묘사, 자살

보도에 대한 상세묘사, 마약에 대한 상세보도 금지 등이 있습니다.

- 국가적 법익으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보도, 국가기밀누설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시정권고 신청 가능

- ▶ 자체심의 이외에 피해자뿐

만 아니라 해당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언론 보도가 시정권고심의기준에서 정한 법익을 침해하였고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안전은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 시정권고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며 강제력은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2005. 7. 28

제1조 (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한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중재위원회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보상을 받는다.

제5조 (제척·기피신청의 방법 등)

- ① 법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당해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

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부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조정·중재절차 등의 중지)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정처리기간 및 직권조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보도물의 공개) ①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하여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언론사는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는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당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용여부의 통지방법) 언

론사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전자우편 또는 국내 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문의 내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외에 정정보도문의 회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발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접수일은 중재위원회의 컴퓨터 등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③중재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제14조 (중재의 개시)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부터 개시된다.

제15조 (중재신청의 취하) ①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

론보도의 프로그램명·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정기간행물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정권고의 이유

제17조 (시정권고소위원회)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시정권고의 신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구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정권고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시정권고요구대상인 언론사명, 보도일자, 보도내용 및 시정권고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의 신청을 구술로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서류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의 신청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①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은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재심 청구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재심청구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과태료 부과)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

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정권고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 대표 02)397-3114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